

최 종
연구보고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3. 1

연 구 기 관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해 양 수 산 부

제 출 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1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박	규 석
연 구 원	: 이	광 남
연 구 원	: 박	무 성
연 구 원	: 김	민 영
연 구 원	: 정	영 태
연 구 원	: 서	병 귀
연 구 원	: 이	훈 종

【 요약 문 】

I. 연구제목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I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FAO 제24차 수산위원회에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됨에 따라, 각 국가들은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후 적어도 3년 이내(2004년 2월 이내)에 국제행동계획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별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행동계획 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회피,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 IUU어업에 대한 국제행동계획의 채택을 계기로 국내어업질서확립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범위는 IUU어업 방지 국제행동계획 개요, 각국/수산기구 IUU관련 동향 분석,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분석, 이행상황 분석, 국제행동계획의 우리나라 세부실천(안) 제시
- 연구방법은 국내외 법령집 및 논문, 보고서,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국가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최신 자료 활용. 특히,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IUU어업방지 정부정책과 농특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책자료 등을 활용

Ⅲ.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요

제1절 IUU어업의 개념

- 불법(Illegal) : 지역수산기구내의 회원국이 협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
- 비보고(Unreported) : 협약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것
- 비규제(Unregulated) : 동 국제행동계획의 협약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지칭하는 것

제2절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채택배경 및 의의

1. 채택배경

- 1996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는 CCAMLR 수역에서 이빨고기(Tooth Fish)의 어획쿼타가 13,000톤이었으나 100,000톤이상이 불법어획되었다고 보고 ⇒ 지나친 자원남획 우려
- 1999.02 :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IUU어업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어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개발 필요성 제기
- 1999.03 : FAO 각료회의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
- 2001.2.26~3.2 :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동 국제행동계획이 채택

2. 국제행동계획 채택의 의의

- 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문서로서의 역할
-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강화조치가 예상되며, 따라서 동 행동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 정부간의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됨
-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
- 불법어업 대한 어업인들의 새로운 의식전환의 동기를 부여

제3절 국제행동계획의 자발/강제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 동 IUU어업방지 국제행동은 국제규범의 분류상 자발적 성격의 규범이지만 각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입법표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강행규범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음

IV. 각국/수산기구 IUU관련 동향 분석

제1절 각국의 IUU어업방지 관련 추진 동향

- 국가행동계획 수립여부
 - 수립완료 : 태국(※국제행동계획의 부분적 완료)
 - 수립중 : 미국, 호주, EU, 뉴질랜드, 칠레, 스페인

- 수립 불필요 : 일본
- 수립 검토중 또는 미정 : 중국, 대만, 가봉
- 수립 불능 : 나이지리아

제2절 지역수산기구 IUU 관련 보존관리조치 동향

- 우리나라가 가입 및 추진중인 지역수산기구
 - 참치관련 :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보존보존협약(LOTFC),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 설립 추진중),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참여 검토중)
 - 해역관리 :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설립추진중)
 - 특수어종 : 국제포경위원회(IWC),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북태평양 소화성 어족 위원회(NPAFC, 가입추진중)
⇒ IUU어업방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 시행중이며 향후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V.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분석

제1절 원양어업

1. 원양어업에서의 IUU어업 개념

- 불법(Illegal)어업
 -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의 유형은 연안국 EEZ내에서의 연

안국 관련법규 위반, 지역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 위반, 공해상에서 국제적으로 위반된 사항 위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비보고(Unreported) 어업

- 연안국 EEZ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활동 및 조업실적을 해당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 하는 사례가 일어 협상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음. 그렇다고 비보고 어업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님
- 지역수산기구가 요구하는 조업 및 어획실적의 기일내 미제출은 물론 자료의 부정확 및 실제조업과의 차이도 비보고에 해당됨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비규제(Unregulated)어업

- 현재까지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의 경우나 또는 지역수산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조업시 유의해야함

3. 원양어업의 IUU어업 사례

- 1996년부터 최근 2002년6월까지의 원양어업관련 IUU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연간 약 1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기간중 1997년의 경우는 겨우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의 경우는 30여건에 달함
- 한편 동 기간동안의 총 IUU어업 발생건수는 총 93건으로 이중 비보고어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어업에 해당

제2절 연근해어업

1. 연근해어업에 있어서의 IUU어업 개념

- 불법어업이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및 선박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을 위시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업자원보호법,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을 말함
- 연근해상에서는 IUU어업의 대부분은 불법어업(비보고 포함)이고, 비규제는 해당없음(원양어업에 해당)

2. 연근해어업 불법어업의 동향

- 연근해 불법어업이 단속건수는 연간 3~4천건을 유지하고 있음
 - ※ 1995(3,959건) → 1998(3,157건) → 2001(3,451건)
- 중국어선의 한국측 수역의 침범빈도가 급증
 - ※ 1995(45건) → 1998(39건) → 2001(174건)

VI.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상황 분석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제16조~제19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선박(제20조), 제재조치(제21조), 비협력국(제22조), 경제적 유인(제23조), MCS운영 및 기획(제24조제6항), MCS 업계의 이해 및 참여(제24조제6항),

지역수산기구(제78조~제82조) 등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제11조(지역수산기구 가입), VMS이행(제24조 제3항), 옹저버 프로그램(제24조제4항), MCS D/B 구축(제24조제9항), 자국 어선 IUU어업 중사 및 지원 회피(제34조~제36조),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 기능 상호보장(제40조), 어선의 기록(제42조), 어업허가장 소지의무(제45조~제46조), 어업허가장 발급 조건(제47조), IUU어선 재공급/해상전재 제한(제48조~제49조), 어획전재/정보(제50조), 항구국의 조치(제53조~제63조), 시장관련 조치(제66조~제74조) 등은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Ⅶ.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안)

제1절 계획수립의 목적

- 국가는 IPOA의 채택한 후 3년이내에(2004년 2월 이전) IPOA의 목표를 더 성취하기 위해 국별 행동계획들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각 국가들은 이 기간 내에 국제행동계획의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가 되도록 함
-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조업활동 위축 방지, 국제행동계획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회피 가능,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더 나아가,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추세를 계기로 하여 국내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제2절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안)

1. 모든 국가의 책임

가. 국제제도 적용

- 유엔공해어족협정(95) 및 FAO 이행협정(93) 가입 장려

1)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가입 추진

- 가입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12조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에 가입토록 되어 있음

- 가입의 필요성

- 향후 동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비준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는 2001년 11월, 제56차 유엔총회시 동 협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WCPFC)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동 협정 가입에 대한 압력 강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 추진 일정

-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WCPFC)의 개선추진과 연계 및 일본, 중국 등 여타 조업국은 현재 비준불가 입장이므로 이들 조업국과도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편의국적금지협정 가입 추진

○ 가입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12조

- 편의국적금지협정(FOC)에 가입토록 되어 있음

○ 가입의 필요성

- 우리의 원양어업이 안정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함. 특히 발효요건인 25번째 국가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어업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국제신인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 동 협정은 23개국이 수락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로 2개국이 수락하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2002.12월 기준)

○ 추진 일정

- 2003년 상반기 중으로 가입 추진

□ 수산통계자료 지역수산기구 제공시 일관성 유지

○ 이행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12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주요국제기구 비준/수락 및 가입 현황은 가입 13, 가입추진 3, 미가입 5 등임
- 우리나라는 직접 FAO에 해구별/어종별/어획량을, 지역수산기구에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동 자료들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추진 일정

-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홍보 : 2003년
- 운반선 및 조업선의 협조 실태 파악 : 2004년
-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지원 법제도 검토 : 2005년
-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지원제도 시행 : 2005년
- 종 분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침서 제작/배부 : 2003년
- 자료수집 방법개선을 위한 읍저버기구의 운영 : 2010년 이후

나. 국가의 법규 적용

□ 어구실명제 도입을 통한 불법어구 제거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1항

- 국가는 어업허가제도를 포함하여 자국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행정관청이 명하는 경우에 어구 등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표지에 대하여 손괴·변조 등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연안개발안강망·근해자망·구획어업 등 일부업종에 사용되는 망어구만 어구표지를 하도록 허가의 제한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어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으므로 불법어업 행위의 사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및 별표 9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기초조사 및 표지판 모델·부착방법 등 연구개발 : 2003년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 : 2004년
- 어업별 시험부착 및 본격추진 : 2004년 이후

□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 확산으로 불법어업 예방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1항

- 국가는 어업허가제도를 포함하여 자국 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지역별, 어종별,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유도하여 어장환경 개선, 불법어업 예방, 어획강도 감축, 수산자원 조성 등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없음
- 수산업법에 자율관리어업 관련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근거 규정 수산업법에 포함 : 2004년 이후 추진
- 자율관리 현행 79개소 → 201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

□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제3항, 제47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CCAMLR 수역, 참치관련 공해조업선, 러시아 수역 조업선 등에서만 VMS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2001.12월 기준 507척중 294척만 장착), 전원양어선으로 확대 추진 필요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및 제27조제5호
-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제6조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원양어업 >

- 업계 의견 수렴 : 2004년
-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제5호,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제6조 등 확대 추진 근거 규정 마련 : 2005년

< 연근해어업>

-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및 관련법에 근거규정 마련 : 2004년
- 근해어업중 어획강도가 높고 조업구역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하는 방안 모색 : 2004년 ~ 2010년
⇒ (1단계) 대형선망·대형트롤·대형기저 → (2단계) 중형기저·동해트롤·기선권현망 → (3단계) 근해자망·근해통발 등 전 근해업종
- 연안어업은 근해어업의 부착효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 도입 : 2010년 이후

□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표준에 따른 옵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4항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국제기준의 읍저버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불법어업 감시, 자원관리를 위해 TAC 소진상태 및 어획상황의 파악·보고, 수산자원의 평가와 어획특성 파악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 등에서 필요함
- 따라서 과학읍저버 인력확보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읍저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음

○ 추진 일정

-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수렴 : 2008년
- 원양 및 연근해 읍저버 제도화 추진 계획 수립 및 법제화 : 2009년
- 원양 및 연근해 읍저버 제도 본격 추진 : 2010년

□ IUU어업방지를 위한 기금조성 운영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6항

- 국가는 MCS 운영계획 수립실시 및 기금조성을 포함하여 자국 어업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어업자들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1996년부터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어업질서확립자금」임
- 1996~199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863척에 대해 280억원의 자금이 배정
- 그러나 사업시행 주체의 2원화, 지원규모의 미약, 시중자금보다 금리(5%)가 높음, 1인당 지원액 상향 조정 필요, 사후 관리감독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주체의 일원화, 지원규모 확대, 사후관리 철저 등의 대책강구가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추진 일정 및 대책

- 생계형 소형기선저인망 전업 추진(2002~2006)
- 매년 150여척을 대상으로 용자 지원
- 지원조건 개선 추진
 - 적당 용자한도를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용자 상환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연장
- 전업자 사후관리 강화
 - 전업어가 관리담당공무원 지정으로 불법어업 복귀 방지

□ 불법어업자들에 대한 D/B 구축 등 관리 강화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제9항, 제36조, 제42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국내 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의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문제, 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 책임있는 어업질서 실현, 합법적인 어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자 관리 및 정부의 각종 제재조치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불법어업자 D/B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 : 2004년
- 수협관계자, 어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2005년
- 불법어업자 D/B 구축 법제화 : 2006년
- 불법어업자 공개여부 검토 등 : 2007년 이후

다. 국가간의 협력

□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8조, 제50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충분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임으로서 국제적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 양자간 협력의 경우 관련 당사국간 상호 협의하여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을 강화하면 될 것이고,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은 지

역 수산기구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의 규정을 지키면 됨으로 국내제도로의 도입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향후 양국간 상호합의하에 IUU어업방지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근거 및 일부 조문 보완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7조 :
-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8조(보고서의 용도)
: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정비내용 : 향후 양국간 IUU어업방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8조의 수정이 필요함
-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MCS 국제네트워크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기국의 책임

가. 어선의 등록

□ IUU 전력(前歷) 어선 자국적 부여 회피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36조

-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의 국적 부여 회피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선법 제13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용선어선의 IUU어업종사 금지 보장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37조, 제38조, 제39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용선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산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어업의 경우에 관리 및 단속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상 애로가 있으며, 불법어업의 경우는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불법조업의 방치로 인한 국제적 비난 가능성 및 국제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있어 도입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99.2.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어선법 개정으로 용선제도 폐지('99.5.24)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정비내용 : 이미 용선에 관한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별도의 정비는 필요 없음. 즉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는 국적취득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해주고 있음

- 추진일정 : 기존의 용선어선들의 용선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용선어선이 없어짐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통합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0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이 통합된다면, 통합된 어선 관련 업무의 추진을 통하여 어선의 관리 강화 및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선등록 관련 : 어선법 제13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 어선허가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3조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중장기적인 검토과제

나. 어선의 기록

어선의 기록 유지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2조 및 제43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보완 필요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선법시행규칙 제23조(어선의 등록 사항)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업계여론 수렴 : 2004년도
- 어선법시행규칙 등에 '선박사진 추가 기록유지' 내용 추가 개정 : 2005년도
- 시행 : 2006년도

□ IUU어업방지를 위한 어업허가장 소지 문제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5조 및 46조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제52조제1항10호 및 수산자원보호령제25조(면허/허가등에 관한 증서 휴대 의무,96.12.31법령공포일)가 1999.04.15 해양수산부 '98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근거 및 규정이 폐지됨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고려, 관련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이후 검토 : 중장기 과제

□ 국제적 기준의 어선 표시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7조제8항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국제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각 국제수산기구의 어선표시 사항은 현 시점에서 이행의무는 없으나 앞으로 동 사항 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어선표시는 어선수리시 해야 하므로 어선수리 시기 등 감안 필요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 어선표지 설치 명령
-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표지의 설치)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어선 표지규격 및 형태와 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2003년 3.1 이전까지 모든 원양어선이 국제적 기준 어선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야 함
- 따라서 적어도 2003년 3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들이 국제기준의 어선표시가 완료될 것임

□ IUU어선 재공급/전재에 대한 제한 문제

○ 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8조~제50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re-supply)/전재 제한을 통하여 원활한 어로작업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므로 동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 제47조(어획물 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 수산자원보호령제27조 제3항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IUU 어선에 대한 인프라(국내외 포함)가 구축된 이후 도입 검토 : 중장기 과제

3. 연안국의 조치

□ IUU 어선의 EEZ수역 입어 금지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51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우리나라 EEZ수역 입어금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자원관리 및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즉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어선 조업보호 및 합리적인 자원관리 추진 가능
- 그러나 동 사안은 양국간(한일, 한중)에 어업협정에 기초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IUU어업의 근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도입은 필요치 않음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및 근거 마련 필요 없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한·일, 한·중간 상호 협의하에 IUU어선 근절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 가능

4. 항구국의 조치

□ IUU어업방지를 위한 항구국의 조치

○ 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53조 ~ 63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항구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원양어선들의 조업국 입장에서 외국의 항구국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제도로의 도입이 불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국내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음

○ 정비내용 및 행정적 조치

- 국내제도로의 도입이 필요치 않음으로 정비 내용도 없음
- 주요 연안국들의 항구국 조치 현황 파악 및 업계통보 : 향후 지속적

5. 시장관련 조치

□ IUU어선에 의한 수출/입 금지 조치

○ 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66조 및 69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한 IUU 어선의 어획물 수입 유통 금지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제2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제25조(수입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등

○ 정비내용 및 추진일정

- 수입국 및 지역수산물기구의 관련동향 자료 수집 및 업계통보 : 수시
- IUU어획물 시장관련조치 : 장기적 과제

◆ 제 목 차 례 ◆

【요약문】	1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
1. 연구범위	2
2. 연구방법	3
제2장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요	5
제1절 IUU어업의 개념	5
1. 불법(Illegal)어업	6
2. 미보고(Unreported)어업	8
3. 비규제(Unregulated)어업	9
제2절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채택배경 및 의의	13
1. 채택배경	13
2. 국제행동계획 채택 의의	15
제3절 국제행동계획의 자발/강제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17
제3장 각국/수산기구 IUU관련 동향 분석	21
제1절 각국의 IUU어업방지 관련 추진 동향	21
제2절 지역수산기구 IUU 관련 보존관리조치 동향	28
1. 참치관련 지역수산기구	29
2. 해역관리 지역수산기구	42
3. 특수어종 지역수산기구	46

제4장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분석	51
제1절 원양어업	51
1. 원양어업의 실태	51
2. 원양어업에서의 IUU어업 개념	55
3. 원양어업의 IUU어업 사례	58
제2절 연근해어업	62
1. 연근해어업의 실태	62
2. 연근해어업에 있어서의 IUU어업 개념	65
3. 연근해에서의 IUU어업 사례	66
제5장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상황 분석	71
제1절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내용 분석	71
1. 내용 체계	71
2. 내용 분석	72
제2절 국제행동계획 이행상황 분석	110
1. 모든 국가의 책임	112
가. 국제제도 적용	112
나. 국가의 법규 적용	127
다. 국가간 협력	163
2. 기국의 책임	167
가. 어선의 등록	167
나. 어선의 기록	178
다. 어업허가	180
3. 연안국의 조치	190
4. 항구국의 조치	191
5. 시장관련 조치	193
6. 지역수산물관리기구	194

제6장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안)	195
제1절 계획수립의 목적	195
제2절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안)	197
1. 모든 국가의 책임	200
가. 국제제도 적용	200
나. 국가의 법규 적용	203
다. 국가간의 협력	212
2. 기국의 책임	214
가. 어선의 등록	214
나. 어선의 기록	217
3. 연안국의 조치	223
4. 항구국의 조치	224
5. 시장관련 조치	227
제7장 결 론	229
【참 고 문 헌】	231
[부록 1] IUU어업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결과	235
[부록 2]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240
[부록 3] 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IUU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	288

◆ 표 차 례 ◆

<표 2-1> 국제행동계획의 불법(Illegal)어업 정의8

<표 2-2> 국제행동계획의 미보고(Unreported)어업 정의9

<표 2-3> 국제행동계획의 비규제(Unregulated)어업 정의12

<표 2-4> IUU(국제행동계획 채택 약사(略史)15

<표 2-5> 수산관련 국제규범들 중 강제/자발적 규범 분류18

<표 3-1> 각국의 IUU어업방지를 위한 동향27

<표 3-2> 우리나라 지역수산기구 가입 현황29

<표 3-3> 참치관련 업종별 어선척수 및 어획량29

<표 3-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현황31

<표 3-5>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현황33

<표 3-6>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현황34

<표 3-7>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위원회(WCPFC) 현황37

<표 3-8>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위원회(WCPFC) 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40

<표 3-9>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현황41

<표 3-10>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현황43

<표 3-11> 한국관련 남빙양 어업 계획43

<표 3-12> 북대서양 수산위원회(NAFO) 현황45

<표 3-13>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현황45

<표 3-14> 국제포경위원회(IWC) 현황47

<표 3-15>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현황48

<표 3-16>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의 주요 내용49

<표 3-17> 북태평양소화성어족위원회(NPAFC) 현황50

<표 4-1> 원양어업의 추이52

<표 4-2> 어업별 조업동향53

<표 4-3>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원양어업관련 IUU어업에 대한 조치내역58

<표 4-4> IUU어업 분류에 따른 러시아수역에서의 IUU어업 실태59

〈표 4-5〉 각 연도별 러시아수역에서의 IUU어업 실태	60
〈표 4-6〉 연근해어업의 어업종류(유형)	62
〈표 4-7〉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주요어종 등	62
〈표 4-8〉 연근해 어선세력 및 생산량	63
〈표 4-9〉 유형별 IUU어업 사례	67
〈표 4-10〉 인접국 어선의 우리나라 수역 침범조업 동향	68
〈표 4-11〉 불법어업의 해역별 동향	69
〈표 4-12〉 불법어업의 단속 현황	70
〈표 4-13〉 한국측 수역을 침범 조업한 외국어선 나포상황	70
〈표 5-1〉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내용 체계	71
〈표 5-2〉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용어의 정의	73
〈표 5-3〉 IUU어업방지를 위한 목표 및 원칙	75
〈표 5-4〉 모든 국가들의 국제제도 적용 문제	78
〈표 5-5〉 국가의 법규	81
〈표 5-6〉 국가행동계획	82
〈표 5-7〉 국가간 협약	84
〈표 5-8〉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공개성 및 기술적 능력/자원	85
〈표 5-9〉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어선의 등록	87
〈표 5-10〉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어선의 기록	89
〈표 5-11〉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어업허가	93
〈표 5-12〉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연안국 조치	95
〈표 5-13〉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항구국 조치	98
〈표 5-14〉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시장관련 조치	101
〈표 5-15〉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역할	106
〈표 5-16〉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108
〈표 5-17〉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FAO의 역할	109
〈표 5-18〉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중 각국/기구가 취해야할 주요내용	110
〈표 5-19〉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핵심내용 분석	111

〈표 5-20〉	현행 TAC 관련 자원관리 제도	113
〈표 5-21〉	한국의 TAC 관리제도 주요내용	114
〈표 5-22〉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비준국 현황	115
〈표 5-23〉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의 주요 집행 수단	116
〈표 5-24〉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책	117
〈표 5-25〉	편의국적금지협정 수락현황	118
〈표 5-26〉	편의국적금지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책	119
〈표 5-27〉	개별가입 국제수산기구 세부 현황	120
〈표 5-28〉	관련 국제수산제도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	122
〈표 5-29〉	우리나라의 어획량/어획노력량 자료수집 방법	123
〈표 5-30〉	지역 국제수산기구 제출 자료의 문제점	124
〈표 5-31〉	지역 국제수산기구 제출 자료의 개선방안	126
〈표 5-32〉	국제제도 적용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	127
〈표 5-33〉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자 처벌 내용	130
〈표 5-34〉	불법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중지	132
〈표 5-35〉	불법어선에 대한 영어자금의 용자제한	133
〈표 5-36〉	불법어선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의 용자제한	134
〈표 5-37〉	우리나라의 어업제도 세부 내용	135
〈표 5-38〉	불법어업예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방안	137
〈표 5-39〉	VMS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138
〈표 5-40〉	선박위치의 모니터링 방식	139
〈표 5-41〉	VMS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	140
〈표 5-42〉	우리나라의 선박감시체제 운영상황	140
〈표 5-43〉	VMS 설치 원양어선 현황	141
〈표 5-44〉	VMS 구축 관련 근거 법령	141
〈표 5-45〉	연근해어선의 모니터링 제도도입 추진	143
〈표 5-46〉	주요 국제기구의 옵저버관련 규정	144
〈표 5-47〉	우리나라 연근해 옵저버 기수별 현황	145

〈표 5-48〉 읍저버 유형별 임무	145
〈표 5-49〉 TAC제도 활성화를 위한 읍저버 연차별 투자계획	146
〈표 5-50〉 우리나라 읍저버 운영 실태	146
〈표 5-51〉 우리나라의 직/간접 관할수역	147
〈표 5-52〉 정부의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및 홍보 실적	148
〈표 5-53〉 우리나라의 MCS 관련 정부종합 주요추진실적	148
〈표 5-54〉 우리나라의 MCS 기관별 주요업무	150
〈표 5-55〉 어업지도선 톤급별 현황	152
〈표 5-56〉 해양경찰청의 함정 및 항공기 보유현황	153
〈표 5-57〉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실적	155
〈표 5-58〉 수협중앙회의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157
〈표 5-59〉 국가의 법규 적용관련 이행상황 평가	162
〈표 5-60〉 우리나라의 어선등록 법령 현황	168
〈표 5-61〉 우리나라의 용선의 유형 및 내용	171
〈표 5-62〉 우리나라의 업종별 용선현황	172
〈표 5-63〉 선박 국적 관련 국제협약 동향	173
〈표 5-64〉 편의국적(FOC) 용선어선의 문제점	174
〈표 5-65〉 우리나라의 용선제도 개선	175
〈표 5-66〉 우리나라의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 발급 기능	176
〈표 5-67〉 어선의 등록 관련 이행상황 평가	177
〈표 5-68〉 우리나라의 어선등록사항 및 어업허가장의 기재사항	179
〈표 5-69〉 우리나라 어선들의 어업허가장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181
〈표 5-70〉 어선표시에 대한 국제적 동향	182
〈표 5-71〉 FAO 표준 어선표시 내용	183
〈표 5-72〉 우리나라 원양어선 어선 표시 실태 및 근거법령	183
〈표 5-73〉 FAO 표준 어선표시 추진계획	184
〈표 5-74〉 우리나라의 전채관련 법령 현황	186
〈표 5-75〉 우리나라의 어획보고 관련 법령	188

〈표 5-76〉 어업허가 관련 이행상황 평가	190
〈표 6-1〉 FAO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이행/점검	196
〈표 6-2〉 IPOA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이행 상황 분석 및 평가	198

◆ 그림차례 ◆

[그림 4-1] 원양어업 어선세력 및 생산량 추이	52
[그림 4-2] 연근해어업의 어선세력 및 생산 추이	63
[그림 5-1]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VMS체계도	139
[그림 5-2] 우리나라의 VCS	151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9년 2월에 개최된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IUU어업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어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어 1999년 3월에 개최된 FAO 각료회의에서는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그 이후 FAO 제24차 수산위원회는 2001년 3월 2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동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및 공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업선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EEZ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근해어업까지 포괄적으로 국제 사회적 차원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규제·근절하기 위한 협력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성립된 것이다.

동 국제행동계획은 그 자체가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은 아니지만, 하나의 법률적 문건으로서 각국은 이 국제행동계획에 따라 IUU어업과 관련한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이행방안을 마련한 후 그에 따라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요 수산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국제행동계획의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각 국가들은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후 적어도 3년 이내(2004년 2월 이내)에 국제행동계획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별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양어선에 의한 공해상 및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연안국 EEZ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연근해 수역에서의 우리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그리고 우리나라 EEZ수역에서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가 완벽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하에 국제행동계획 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 회피,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강화, IUU어업에 대한 국제행동계획의 채택을 계기로 국내어업질서확립 전기 마련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크게 제2장에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각국/수산기구 IUU관련 동향 분석을 하였고, 제4장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분석 및 제5장에서는 동 국제행동계획의 우리나라 이행상황 분석,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국제행동계획의 우리나라 세부실천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요에서는 IUU어업의 개념,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채택배경 및 의의, 국제행동계획의 자발/강제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국/수산기구 IUU 관련 동향분석에서는 각국의 IUU 관련 입법 동향과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가입 추진중인 지역수산기구를 중심으로 IUU관련 보존 조치를 참치관련, 해역관리, 특수어종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내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의 IUU어업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즉 국내어업을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으로 구분하여,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본 후 각각의 IUU어업의 실태 및 위반사항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이행상황 분석에서는 먼저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

획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이후, 국제행동계획의 내용중 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의 각 조문별 해설을 하였다. 또한 이를 기초로 기존의 우리나라 법령에 이미 정비된 사항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분석된 결과를 근거로 국제행동계획의 우리나라 세부실천(안)을 마련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한 후, 이를 토대로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에 대한 세부실천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은 IUU관련 국내외 법령집 및 논문, 보고서 등의 조사·분석, 기존의 IUU관련 국내외 관계 법령 및 규정집, 문헌을 수집 분석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 외교통상부, 한국원양어업협회 등 국가기관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배경 및 의의, 각국의 IUU관련 입법동향, 지역수산기구 IUU관련 보존관리조치 동향,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연근해어업/원양어업)를 분석하였다.

둘째, IUU 국제행동계획의 국내 법령 정비계획 등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국내관련 법규 및 국제기구 규정 분석, IUU관련 국외 입법동향 파악, IUU 관련 국내 법령 정비방안, IUU관련 국내 세부실천계획 수립(원양/연근해)을 하였다. 특히 국제행동계획의 내용을 각 조문별로 해설을 하였고, 기존의 우리나라 법령에 이미 정비된 사항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기초로 세부실천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안의 세부내용은 정비근거,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정비내용,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추정일정 순으로 제시하였다.

제2장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요

이탈리아 로마의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제24차 수산위원회(2001. 2 26 - 3. 2) 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이 105개국의 합의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국제행동계획은 총 9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어업질서를 형성하게 될 주요한 문서(국제적으로 약속한 협약)로서 우리나라의 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어로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국제행동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IUU어업의 정의, 동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배경 및 경과와 이러한 국제행동계획이 가지는 국제/국내적 의미, 동 국제행동계획의 자발/강제 규정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제1절 IUU어업의 개념

IUU어업이란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만들어진 단어로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의 약자이다. 다시 말하면, 「불법(Illegal)」은 지역수산기구 내의 회원국이 협약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비보고(Unreported)」는 협약에서 정한 보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규제(Unregulated)」는 동 국제행동계획의 협약에 의하여 규제를 받지 않는 비회원국의 어업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러한 IUU어업이 자원의 보존관리조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 3월 로마에서 개최된 FAO 각료회의에서는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성안하도록 합의하였으며, 이어 호주정부에서 행동계획의 예비초안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회의(2000.5.14~19)를 시드니에서 개최한 바 있다.

호주 시드니 회의에서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협약수역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관할수역과 공해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수역에 걸쳐 IUU어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을 채택되었다. 동 국제행동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IUU어업을 정의하고 있다.

1. 불법(Illegal)어업

불법어업(Illegal Fishing)이라 함은 첫째,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의 관할 수역내(EEZ)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조업하거나 법규를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둘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협약수역내에서 회원국의 어선이 협약이 정한 보존조치 또는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것을 의미하고 셋째, 비회원국이 지역수산물관리기구로부터 부과받은 의무 또는 국가적,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을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법어업에 관한 첫번째 규정은 어선어업이 자국 수역 또는 타국 수역에서 행해지는 불법어업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무허가 및 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어업을 하는 것도 국제행동계획의 규제 대상이 되며(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의 수역에서 행하는 무허가/연안국의 법규 위반(원양어업의 불법어업)도 마찬가지로 행동계획의 규제대상이 된다. 반대로 중국 및 일본어선(외국어선)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국내법규를 위반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것도 동 국제행동계획의 규제대상이 된다.

따라서 불법어업에 대한 첫번째의 정의는 전 세계의 모든 어선들이 자국이든 타국이든 관할 수역내에서 조업허가를 받지않고 조업하거나 관할수역 국가의 법규를 위반할 경우 모두 규제대상이 되어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번째의 불법어업에 대한 정의는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어선이 지역수산기구의 관련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행하는 조업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등의 대상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동 기구들의 보존협약 보존조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¹⁾

세번째 불법어업 정의는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지역수산기구의 특정 보존조치를 스스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 이 국가의 어선이 이러한 보존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불법어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특정한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동 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그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에 자발적으로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그 기구가 취하는 보존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경우에 동 기구의 보존조치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불법어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비회원국이 부과받은 의무라 함은 비회원국이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경우(예, ICCAT는 비회원국이 자원보존조치에 협력할 것이라고 동의하는 경우, 협력국으로서의 지위부여) 비회원국의 어선들은 그 보존조치를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면 불법어업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의 국가적, 국제적 의무라 함은 유엔해양법협약,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편의국적선(FOC) 금지 협정 등에서 규정된 조업활동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비회원국이 스스로 이행하겠다고 떠맡은(undertaking) 사항도 법적으로 의무화(義務化)된다는 점이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국가의 자발적이고 일방적인 의무부담이 법적인 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노르웨이와 덴마크간 동부 그린란드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가 내린 판결²⁾ 및 호주·뉴질랜드와 프랑스간의

1) 우리나라가 가입한 주요 지역수산기구는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 등이 있음

2) Eastern Greenland Case(1933),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Series,

핵심협사건에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³⁾가 내린 판결에 나타난 바 있다.⁴⁾

<표 2-1> 국제행동계획의 불법(Illegal)어업 정의

위반사항	주요내용	관련규정
연안국 법규 위반	-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1
국제법관련 규정 위반	-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행하지만 그 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그 국가를 구속하는 보존관리조치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2
국제적 의무 위반	- 국가 법률을 위반한 어업활동 또는 지역수산관리 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약속한 의무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1.2

2. 비보고(Unreported)어업

비보고어업(Unreported Fishing)이라 함은 첫째,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당해국가의 법규를 위반하여 조업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 보고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연안국 어선이든 조업국 어선이든 해당 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업인(조업자)이 스스로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누락 보고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째,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내에서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특히 어장별, 어종별 어획량 통계는 어업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가 되는데, 이러한 보고상의 오류는 자원관리

A/B No.53.

3) 1974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port, para.253.

4) 김선표등,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2001.12, p.18, KMI.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비보고어업이란 조업하면서 관련 국가/지역수산기구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비보고/허위보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보고 어업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규정의 위반이 따르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불법어업을 매우 세분화한 특수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동 국제행동계획이 불법어업과 비보고어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어업은 비보고어업을 제외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 국제행동계획의 비보고(Unreported)어업 정의

위반사항	주요내용	관련규정
관련국에 비보고/잘못 보고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1
수산기구에 비보고/잘못 보고	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2.2

3. 비규제(Unregulated)어업

비규제어업(Unregulated Fishing)은 다음의 어업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수역에서 무국적어선 또는 비회원국들의 협약이 정한 자원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어업활동 둘째,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 또는 어족에 대하여는 국제법에서 정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둘째,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라 함은 저개발국의 EEZ 수역으로 적절한 규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어족이라 함은 주로 공해수역의 고도회유성어족 및 경계왕래어족이외의 어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

러한 자원도 국제법하에서 책임있게 보존관리 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비규제어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제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어선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없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또는 미개발국의 어업이 비규제 어업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국제행동계획에서 전세계의 어업을 대상으로 IUU어업의 정의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그런 의미에서 이 행동계획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비규제어업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비규제어업은 불법어업과 같은 차원에서 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이 대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원양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특정한 지역수산기구에 회원국이 아닐 경우, 동 기구의 협약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동 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우리 어민들이 지키도록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어업자가 그러한 보존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이는 불법어업(정의 제3.1.3조에 의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우리어선들이 위반한다면 그러한 어업활동은 비규제 어업(정의 제3.3.1에 의거)에 해당되어 IUU 국제행동계획상의 규제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선은 어느 경우나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여 조업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역수산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규제어업은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 또는 무국적선에 의하여 지역수산기구의 관리 수역 및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규제어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불법어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비규제어업의 첫번째 정의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그 지역수산기구의 조치를 따를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두번째 정의에서는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에서의 조업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조업이 모두 비규제어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비규제어업이 된다. 동 정의에서는 비록 어떤 수역에 지역수산기구가 없거나 구체적인 자원관리 조치가 없더라도 각 국가들은 동 수역에서 자원을 보호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해생물자원의 보호와 관련된 유엔해양법협약 제117조에서 제119조의 의무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공해생물자원 보존의무에 관한 조항은 비록 구체적인 조업 규제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공해생물자원의 최대지속적생산량(MSY) 실현을 목표로 공해 어족자원 보존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는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공해 수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며, 자원 보존 의무의 위반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제관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비보고어업에 관한 두번째 정의에 비추어 보면, 어떤 어선이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나름대로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관습법상의 일반적인 공해어업자원 보존 의무를 다할 경우에는 국제행동계획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비규제어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비규제 어업의 첫번째 정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요한 것은 비회원국 중에서 협력국과 비협력국의 구별이다. 국제행동계획은 비회원국 중에서 협력국과 비협력국을 구별하여 어떤 나라가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일지라도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 노력에 협력하는

5) 제117조 : 모든 국가는 자국 국민에 대하여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다른 국가와 협력할 의무가 있음

제118조 : '모든 국가는 공해 수역에서 생물자원을 보존 및 관리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아가 필요한 경우 당해 국가는 지역하부적 또는 지역적인 수산기구를 설립하는 데 상호 협력하여야 함

제119조 : 공해 생물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어 각국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대 지속적 생산량'(MSY)을 실현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어획되는 어종의 자원량을 유지 또는 회복하도록 관계국이 이용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근거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협력국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국제행동계획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행동계획 제22조에서는 국제행동계획의 타도대상이 협력국이 아닌 비협력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6) 국제행동계획 제79조는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이라 할지라도 지역수산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비회원국도 「국가들은 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또는 그러한 보존관리 조치에 부합하는(consistent)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따라서 지역수산기구의 협력국은 지역수산기구의 보존조치를 스스로 적용할 것에 합의하거나 또는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는 국가이다. 여기에서 협력국이 스스로 부담한 의무를 어기고 조업하는 경우에는 불법어업의 세번째 유형(3.1.3)에 해당되며,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이 스스로 부담한 의무가 없어도 동 비회원국의 어선이 지역수산기구의 조치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어업을 할 경우에는 비규제어업의 첫번째 정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3> 국제행동계획의 비규제(Unregulated)어업 정의

위반사항	주요 내용	관련규정
무국적어선/ 해당기구조 치불일치/위 반	지역수산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조업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3.1
공해상 국제법 불일치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또는 어족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해지는 어업활동	IUU 국제행동계획 3.3.2

- 6) 국제행동계획 제22조 : IUU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수산기구 비협력국의 활동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일치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함
- 7) 국제행동계획 제79조 : IUU어업방지를 위한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가 실시하는 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인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음

제2절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채택배경 및 의의

1. 채택배경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의 문제는 1997년 10월에 개최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의제로 다루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며, 그 이후 지역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1996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수역에서 이빨고기(Tooth Fish)의 어획쿼타가 13,000톤이었으나 100,000톤 이상이 불법어획 되었다고 보고하고 지나친 자원남획을 우려하였다.

1999년 2월에 개최된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이러한 IUU어업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어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 1999년 3월에 개최된 FAO 각료회의에서는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호주정부는 예비초안을 만들기로 하고 2000년 5월 호주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 “IUU어업방지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을 마련하였다.⁸⁾

동 초안은 2000년 10월에 로마에서 제1차 IUU어업방지 기술협의회에서 각국 정부대표간의 협의를 거쳐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나, 한국 일본 등 주요 조업국 및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일부 국가들이 항구국 조치와 시장관련조치에 반발하여 문안합의를 이루지 못했다.⁹⁾

이어서 제2차 IUU어업방지기술회의가 2001년 2월 로마에서 개최되어 추

8) 호주정부와 FAO의 주도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Expert Consultation)를 개최하였는데, 동 회의에 세계 각국 및 국제수산기구 전문가 57명이 참석하였음

9) 72개 회원국, 옵저버 1개국, UN 및 UN 전문기구 대표, 10개 정부간 기구 및 9개 비정부간 기구 등 총180여명이 참석하여 기술협의회(Technical Consultation) 개최

가적인 협의를 갖고 절충하였으나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던 차에, 2001. 2. 26부터 로마에서 개최된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회원국간의 공식·비공식 추가절충을 거쳐 2001. 3. 2자로 국제행동계획 문안에 합의 및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IUU어업 개념의 등장은 IUU어업으로 인하여 전 지구적으로 자원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있으며, 어족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불법(illegal)어업뿐 아니라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보고, 비규제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타도(combat)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후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과 관련하여 WS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구정상회의, 일명 지구정상회의, 2002년 9월에는 IUU 및 고잉어획(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제거와 관련하여 이를 이행하자는 주장이 채택된바 있으며, WTO/DDA 제4차 규범회의(2002.10.16-10.18)에서도 미국, 칠레,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들은 WSSD이행계획 중 IUU어업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WTO협정 연계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며, 호주는 WTO규범으로 공해상 IUU어업규제를 규제하는 방안에 대하여 차기회의(02.11)에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논의도 있었다.

<표 2-4> IUU국제행동계획 채택 역사(略史)

시 기	주 요 내 용	비 고
199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는 CCAMLR 수역에서 이빨고기(Tooth Fish)의 어획쿼타가 13,000톤이었으나 100,000톤이상이 불법어획되었다고 보고 ⇒ 지나친 자원남획 우려	CCAMLR
1997.10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상임위원회의 의제에서 IUU어업이란 용어 처음으로 등장	CCAMLR
1999.02	제23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는 IUU어업이 어업자원을 고갈시켜 어업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 개발 필요성 제기	FAO
1999.03	FAO 각료회의의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만들 것을 선언	FAO
2000.05	호주정부와 FAO의 주도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채택을 위한 전문가 회의(Expert Consultation)를 개최	호주/시드니
2000.10	기술협의회(Technical Consultation) 개최, IUU어업 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 검토	이탈리아/로마
2001.02	IUU어업 대처 국제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제2차 기술협의회가 개최	이탈리아/로마
2001.2.26 ~3.2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동 국제행동계획이 채택	이탈리아/로마

2. 국제행동계획 채택 의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채택의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금번에 채택된 행동계획은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제도정비를 위한 중요한 문서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서들의 연원을 살펴보면,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하여, 1992년 5월 멕시코의 칸쿤(Cancun)에서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sponsible Fishing)회의에서 채택된 칸쿤선언¹⁰⁾ 그리고 칸쿤회의로 부터 한 달 뒤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

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일명 “지구정상회의”)에서 채택된 Agenda 21¹¹⁾을 들 수 있다.

또한 칸쿤 선언과 Agenda 21의 요청에 따라, FAO는 1992년 9월 공해어업에 관한 기술회의(Technical Consultation on High Seas Fishing)를 개최하여 두개의 문서, 즉, 하나는 1993년도에 채택된 “공해조업선박의 국제적 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약칭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1993년 FAO 이행협정)’”과 1995년도에 채택된 책임수산업행동규범(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을 채택하였다.

한편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에서는 공해어업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유엔총회는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회의」를 개최, 1995년 8월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을 채택하였다.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은 책임수산업행동규범 이행의 일환으로서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한 4번째의 국제행동계획¹²⁾이며, 이 국제행동계획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1993년 FAO 편의국적금지협정, 1995년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1995년 FAO 책임수산업행동규범에 이어 국제어업질서를 규율하게 될 중요한 문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동 국제행동계획은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강화조치를 요구하며, 따라서 동 행동계획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 정부간의 적절한 대응책이 요청된다. 즉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들은 주로 외국 EEZ 및 공해수역에서 조업하고 있으며, 각국 및 지역수산관리기구는 동 국제행동

-
- 10) 동회의에서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국제행동규범(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on Responsible Fishing)을 작성하도록 요청함.
 - 11) Agenda 21중 제17장은 바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제17장 중 Programme Area C는 공해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존문제(Sustainable Use and Conservation of Marin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를 다루고 있음
 - 12) 1999년 2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제23차 FAO 수산위원회는 3개의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음. 즉 어획능력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상어보존을 위한 국제행동계획임

계획에 따라 자체행동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업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어업이외에 비규제어업이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비규제어업도 불법어업과 마찬가지로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어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재점검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 국제행동계획은 단지 공해수역에서의 IUU어업만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며, 연안국의 EEZ내에서의 IUU어업도 근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행동계획의 채택을 계기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이 내용을 잘 숙지하여 국내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연근해 어업의 불법어업문제, 어획통계보고상의 문제점, 새롭게 규제가 필요한 사항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새로운 의식전환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 동안 연안국들의 자국의 법령에 의해서 IUU어업을 규제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어업인들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 및 이에 따른 어업인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절 국제행동계획의 자발/강제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국제규범은 강제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유엔해양법협약을 우선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편의치적금지협정,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 및 그 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한·일, 한·중, 한·러어업협정 등 양자간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강제규범은 아니나 사실상 각국의 입법표준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성격의 규범으로서는 책임있는

수산업행동규범 및 그 이행을 위한 국제행동계획들, 대규모 유자망어업에 관한 유엔총회결의 등의 각종 어업관련 결의를 들 수 있다.

동 IUU어업방지 국제행동은 국제규범의 분류상 그 성격에 있어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각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입법표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강제규범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표 2-5> 수산관련 국제규범들 중 강제/자발적 규범 분류

구 분	수산관련 국제규범 종류
강제(강행) 규범	- 유엔해양법협약(1982) - 편의치적금지협정(1993)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1995)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협약 및 그 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 한·일·중어업협정 등 양자간 협정들
자발적 규범	-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1995) -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 상어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 어획능력의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1999)

국제행동계획은 자발적이다(제4조)라는 표현은 "자발적(voluntary)"이라는 것이 어느 국가가 이 국제행동을 지키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동규범 제2조 d항¹³⁾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행동계획이 다른 강제 또는 자발적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이를 내부적으로 도입할 경우 강제성을 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수산규범의 맥락에서 이러한 자발적인 문건의 채택은 동 행동계획이 처음은 아니다. 1995년에 채택된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도 자발적인 문건으로 채택되었다.¹⁴⁾ 또

13) 책임있는 수산업행동규범 제2조 d항에서는 “국제적 협정과 구속력이 있거나 자율적인 기타 법적 협정 등의 마련 및 이행에 적절하게 사용될 기준 제공”을 제시하고 있음을 명시

14)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 1.1 참조. 동 행동규범의 국문 번역본은 해양수

한 FAO 수산위원회는 과거에도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바 있는데 1999년도에 채택된 세 개의 국제행동계획, 즉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우발적 포획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상어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 그리고 “어획능력의 관리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이 그것이다.¹⁵⁾ 따라서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이제 FAO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4번째의 국제행동계획이 된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자발적이라고 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거나 임의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동 국제행동계획은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 규범의 가이드 라인이라는 차원에서 작성된 법률 문건(a legal instrument)이다.¹⁶⁾ 한편 내용면에서도 동 국제행동계획은 유엔해양법협약, 유엔공해어업협정, FAO의 이행협정(Compliance Agreement: 편의치적 금지협정)을 보완·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국제행동계획은 그 자체로서는 법이 아니나 IUU어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현재 국제사회에서 “형성중인 법규(*lege ferenda*)”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EU 등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 선진 연안국들이 동 국제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자국의 수산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자국 연안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에게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단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주요 선진 연안국가들이 참여

산부, 「책임있는 수산업규범 및 기술지침」 1998년 발간 참조

15) FAO 발간,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Reducing Incidental Catch of Seabirds in Longline Fisherie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Management of Fishing Capacity*, 1999. ISBN 92-5-10432-9 참조

16)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4조의 후단은 “이 국제행동계획이 행동규범 제2조 d항에 규정된 대로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행동규범의 제2조 (d)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이 행동규범은) 적절한 경우, 국제협정 및 구속적 또는 자발적 법률 문건의 작성과 이행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제공”

17) 연성법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하여는, Martin Dixon, *Textbook on International Law*(제4판), Blackstone Press Limited(2001), p.49 참조

하는 지역수산기구에서도 동 국제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지역수산기구의 수산 규범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수산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어선에까지 새로운 규범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⁸⁾ 그렇게 되면 동 국제행동계획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연성법(軟性法)의 위치를 벗어나 실정법(實定法)의 지위로 올라설 것이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공해상 어업 또는 기타 특정 해역에서 행하여지는 어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모든 수산업에서 일어나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포괄하며, 이러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국가간 협력을 통하여 예방, 방지, 근절하도록 하고 있다.¹⁹⁾

18) 예컨대,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제79조에서 지역수산기구 비회원국의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19) 김선표·이형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KMI, 2001.12

제3장 각국/수산기구 IUU관련 동향 분석

제1절 각국의 IUU어업방지 관련 추진 동향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후, 각국에 대하여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각국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²⁰⁾

일본은 동 행동계획과 관련하여 별도의 입법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기존의 참치 관련법 등 IUU에 관한 관계법이 있으므로 기존법을 수용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행동계획의 내용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을 계기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FOC 및 IUU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책임있는 참치어업추진기구(OPRT) 주최하에 IUU어획물에 대한 불매지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통상성은 2002.7.24부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의 권고결의에 따라 참치편의 치적국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참치수입상사에 통고한 바 있다.

또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등을 통하여 편의치적선 근절을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 100여척의 편의치적된 대형 참치연승어선이 규제를 빠져나가는 형태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 있는 어선을 관리하는 Negative List에 의한 관리보다는 정규로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만을 등록하는 Positive List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참치 어업계는 자국의 원양참치 어업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세계 참치 자원보호」라는 이름 아래 먼저 자국의 참치어선 1백32척을 감축(선체 해체) 한데 이어, 공해 및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어선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자국의 원양참치 연승어선 1백32척을 1~2년 사이(98~99)에 감축하는

20)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에서는 우리나라 계획수립에 참고코자 해외공관을 통하여 주요국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상황을 파악하였음. 파악기간 : 2002. 9월 - 11월, - 조사대상 : 일본, 미국, 호주 등 26개국, - 응신 : 12개국(일본, 중국, 대만, 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EU, 스페인, 칠레, 가봉, 나이지리아)

데에는 무려 2백86억엔이란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음은 물론, 대량 감척에 따른 부작용(해직 선원 등 실업자 발생, 조선소 및 어구 제작소 등 관련 산업의 위축 등)으로 많은 시련까지 겪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참치어선 감척이 자국의 참치어업 보호보다는 오히려 IUU어업을 하는 대만계 편의치적 어선만 더욱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업계 일각에서의 비난이 일자, 일본 정부와 일견연(日鯉連)에서는 편의치적어선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의 편의치적 어선 약 2백40척 중 88%인 2백10척은 실제 선주가 대만인인 것으로 나타나, 대만측과 약 30차례의 협상을 거쳐 편의치적어선 근절을 위한 「일·대 행동계획」을 도출한 바 있다.²¹⁾

미국의 경우는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내행동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초안이 마련되면 늦어도 2003. 2월까지의 공청회를 거쳐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UN과 FAO를 중심으로 IUU어업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UNFSA의 이행을 위한 신탁기금의 조성 및 북태평양에서의 IUU어업방지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랑스는 동 행동계획의 취지를 적극 지지하고, 동 행동계획의 주요내용이 이미 입법화되어 있으나, “가능한 구속적 조치들”이 여타국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차원에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스페인인 동 행동계획에 의거, 국내 “불법어로방지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산협회, 수산물가공업 등 관련산업종사자, 비정부기구, 관련중앙부처, 지자체 등 수산업 관계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내행동계획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조치 가운데 하나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또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2002. 11. 25 - 26간 스페인 산티아고에서 개최되는 IUU어업방지 국제회의에서 이를 배포한 바 있다.

EU는 국제협력분야로서 ① 1993 FAO 이행협정 및 1995 유엔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의 조속한 발효 지원 ② 어업활동 감시·통제·검색(MCS) 국제네

21) 한국원양협회, 원양어업 제900호, P.36-37, 2001.10.15

트위크 참여 검토 ③ 국제수산기구에서의 활동강화 등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특히 미국, 칠레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국제네트워크의 구축은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MCS 국제네트워크²²⁾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IUU어업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망으로서 선박에 관한 주요 정보가 인터넷에 등재되며, 이에 참여하는 어선의 활동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는 현재 EU 행동계획안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회람중이며 그 주요 내용은 첫째, 공동체 차원의 조치(기국이 자국 어민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함, 국제어업협정을 위반하여 어획된 수산물의 교역을 금지하고 IUU 어획물을 불법화하는 조치 채택, IUU어업에 대한 일반인, 소비자, 업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둘째, 지역수산관리기구 차원의 조치(비규제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 추진, IUU어업활동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확립, 고가의 어류를 어획하는 어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IUU 어선을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한 행동계획 채택 추진, 지역수산관리기구가 IUU 어획량을 확인하고 계량화하기 위하여 불법 어획량과 어획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자료 수집 절차를 개발, FAO에서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어획증명서안 개발) 셋째, 국제적 차원의 조치(FAO에 EU 선단에 관한 정보 제공, 미국과 칠레가 주도하고 있는 MCS 네트워크에 참가, 기국과 그 기국의 선박사이에 실질적인 연계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개발할 국제회의 개최, 어선에 의한 항구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항구국의 권리 및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개발할 국제회의 개최) 넷째, 개발도상국과의 동반자 관계형성(개도국의 MCS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이다.

호주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발을 주도한 나라로 이미 기존의 법제에 행동계획의 많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즉, Risk-based 어업감시 및 이행 체제를 개발하여 육상과 상공에서의 검색, 항구에서의 어획량 하역 감시, VMS와 같은 기술적 장치와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검사 등을 하고 있으며, 1996. 12월에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을 도

22) <http://www.imcsnet.org>

입하였다. 따라서 어업자는 FAO의 지침에 맞게 선박에 표시, 읍저버 승선 촉진, 어획량 및 노력량에 대한 일지 유지, VMS를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호주는 2004. 6. 23이전에 IUU어업방지 국가 행동계획을 개발할 계획이며, 외국어선에 초점을 맞추어 IUU어업에 관한 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외국어선에 의한 IUU어업현황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남빙양의 Heard Island 및 McDonald Islands 근처의 영해에서 이빨고기를 목표로 하는 조업과 동인도네시아로부터 주로 상어를 포획하는 소규모 어업자에 의한 빈번한 위반조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법어업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남빙양에서 조업하는 불법어업자는 잘 조직되어 있어 정부는 불법어선의 소유자에게 최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개발하는데 있어 정부는 집행 및 검색에 관하여 동조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불법어업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외교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IUU어업방지 및 인도네시아 능력배양 지원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어업 감시, 검색 및 집행활동을 개선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태평양 도서국이 그들의 어업자원을 잘 관리하도록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마련을 추진중이다.

또한 호주는 향후 IUU어업방지 관련 국제회의에서의 대처방향으로는 많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주도하는 회원으로서 향후 어업자원의 보존관리 협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UN과 FAO 수산위원회를 통하여 적극 IUU어업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정책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 어업관리당국은 입항어선에 대하여 허가장을 줄 수 있으며, IUU어선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국제법에 따를 것으로 파악되었다.

뉴질랜드는 현재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진행중이며, IPOA에서 제시한 내용으로 2004. 2월까지의 국가 행동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IPOA에 규정된 대부분의 내용은 Fisheries Act 1996(자국어선 및 뉴질랜드인/회사에 의해 용선계약된 외국선박에 의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법), Fisheries Regulation

2001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EEZ에서 조업 허가된 외국선박에 의한 IUU어업 방지를 위한 법령) 등을 통하여 시행중이다.

외국 선박에 의한 IUU어업동향으로는 뉴질랜드인/회사에 의해 용선 계약된 외국선박에 의한 공해상의 IUU어업 및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EEZ내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외국선박의 IUU어업은 거의 없으며, 아울러 뉴질랜드 EEZ 내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선박에 의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는 첫째, EEZ내 조업허가를 받은 외국선박(EEZ내 진입시 신고의무 : 진입 24시간전에 선박명, 기국, 현재 보유어종 및 어획량 등에 대해 신고, 뉴질랜드 항구에서 강제검사 : EEZ 진입직후 및 조업후 공해로 진입하고자 할 때 실시, 조업일지 유지의무 : 조업방식과 지역, 어획물의 종류, 양, 상태 등, 기타 선박등록국 국기의 계양 의무 등) 둘째, EEZ내 조업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선박(선박나포, 억류, 선장 및 선원에 대해 벌금, 어획물 몰수 등의 제재가 가능하나, 인신형은 부과하지 않음) 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서 IUU어업방지 논의와 관련한 대응으로는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RL) 등에서 IUU어업방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현재 국가 행동계획의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대만은 IUU어업방지 국가행동계획수립을 검토한 바 없으며, 다만 어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외국어선의 EEZ내 조업을 허가하지 않고 있으며, 외국어선이 허가 없이 대만 경제수역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선박, 설비 및 어획물을 몰수하고 있다.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등에서 일본과 협력하여 IUU어업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만건조 제3국 등록 대형 다랑어류포획어선을 대만국적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한편, 대서양참치위원회 및 인도양참치보존협약(IOTC)에 부합하는 어획물 원산지증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태국은 IUU어업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는 어업허가장 발급과 MCS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이 국제행동계획을 일부 수용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한 EEZ내 일부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Royal Thai Navy Guard에 의해 체포된
적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FAO, IOTC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
획이다.

칠레는 2003년까지 포괄적인 IUU어업방지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고, 해군이 정기적으로 EEZ 및 영해를 순시하고 있다. 중국, 스페인, 일본 등
의 어선이 주재국 EEZ에 접한 공해상에서 가끔 조업중이나 IUU어업행위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조업한 수산물의 환적 또는 수산물 수입을 위해 입항하
는 외국선박에 대해 입항통제를 비롯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된 어종만 입
항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가봉은 현재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이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어선들에 의한 IUU어업에 대해서는 IUU어업을 규제할만한 첨단장비 및
행정력이 미미하여 중부 아프리카(적도기니, 콩고, 쌍토메프린시페, 카메룬
등)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의 한시적인 조치
로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입
어허가 금지, 어획물에 대한 수입 및 유통금지를 고려하고 있다.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는 국제연대 또는 지역연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 상호
간 정보교환 및 중부아프리카 공동 해양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
이다.

나이지리아는 현재 국가행동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를 다룰
기관도 없으나, 트롤협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IUU어업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불법어업의 단속은 선박의 운항상 문제로 단지
연안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외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연방 수산부에서는 "The Sea Fisheries Decree of 1992"에 따라
상업적 어업자에 대한 허가장 발급, 어선과 운반선에 대한 허가, 외국과의 양
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승인장 발급 등의 업무를 행

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기구에서 IUU어업문제에 대처할 정책이 없으므로 FAO의 기술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피지는 2000. 5월 쿠데타 이후 해외원조 등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0. 3. 15현재 위기관리내각이 구성되는 등 국내외 여건이 불리해 주재국 영해를 경비하는 소규모 해군 경비정이 어업활동을 감시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IUU어업을 규제를 강화할 만한 장비나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98. 6월 불법어업 혐의로 참치잡이어선 자스민9호가 키리바시 당국에 의해 억류되는 사건을 계기로 휘지, 통가, 쿡아일랜드 등 IUU어업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었으나, 개별국가에 의한 입법화보다는 남태평양지역 도서국가간 공동 해양정책 수립을 통하여 우선 검토될 것이다. 어업감시 장비 및 시설이 낙후한 남태평양 도서국가 대신 인근 호주 및 뉴질랜드 경비행기가 남태평양 지역 협력 차원에서 이들 인접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EEZ를 검색, 조업선박 확인 및 감시활동을 대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국이 처한 현실에 따라 입법 동향은 다르지만 적어도 IUU어업을 방지하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표 3-1> 각국의 IUU어업방지를 위한 동향

구 분	세 부 내 용
국가행동계획 수립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립완료 : 태국(※국제행동계획의 부분적 완료) - 수립중 : 미국, 호주, EU, 뉴질랜드, 칠레, 스페인 - 수립 불필요 : 일본 - 수립 검토중 또는 미정 : 중국, 대만, 가봉 - 수립 불능 : 나이지리아
외국어선에 의한 EEZ내 IUU어업 현황 및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가봉, 나이지리아의 EEZ내에서 불법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호주는 IUU어업자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기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 EU는 국제어업협정을 위반하여 어획된 수산물의 교역을 금지하고 IUU 어획물을 불법화하는 조치 채택계획
국제기구의 논의에 대처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비규제 어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추진 - EU는 FOC 선박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국과 그 기국의 선박간의 실질적인 연계의 존재를 결정하기 위한 국제협정 개발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추진 - 스페인은 2002. 11. 25 - 26간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제2절 지역수산기구 IUU 관련 보존관리조치 동향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 자원의 보존 및 관리문제는 전세계의 주요 어장에서 연안국과 조업국간의 분쟁을 발생시켜 왔으며, 이러한 분쟁들은 결과적으로 연안국의 관할권 확장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설정 등으로 이미 대폭 줄어들어 얼마 남지 않은 공해에서는 기존의 공해의 자유마져 연안국가들에 의하여 제약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양어업도 이들 공해수역에서의 자원관리 조치에 부딪치게 되었다.

IUU어업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조업국이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것을 비규제어업이라고 보고 있고, 모든 조업국이 자국의 어선이 활동하는 지역의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적어도 지역수산기구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참치관련 지역수산기구 둘째, 해역관리 지역수산기구 셋째, 특수어종 지역수산기구 등이다.

참치관련 지역수산기구로는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보존보존협약(LOTC),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 설립추진중),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참여 검토중) 등이며, 해역관리 지역수산기구로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설립추진중) 등이 있다. 다음으로 특수어종 지역수산기구로는 국제포경위원회(IWC),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북태평양소화성어족위원회(NPAFC, 가입추진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지역 수산기구들과 이들 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업자원 보존 조치를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표 3-2> 우리나라 지역수산기구 가입 현황

구 분	기 구 명	가입년도	비고
참치관련 지역수산기구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1970.08	
	인도양참치보존협약(IOTC)	1996.03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	2001.10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	-	설립 추진중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참여 검토중
해역관리 지역수산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04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1993.12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	설립 추진중
특수어종 지역수산기구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12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1995.12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	가입추진중

1. 참치관련 지역수산기구

200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507척으로 이중에서 43%인 220척(연승 193척, 선망 27척)이 참치어획을 위한 조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양 생산량 739천톤의 32%인 239천톤을 차지하고 있다.

어업종류별로 살펴보면 참치 연승어업의 경우, 횡감용 참치(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새치류)이며, 선망어업은 주로 통조림등 가공용 참치(날개다랑어, 새치류)이다.

<표 3-3> 참치관련 업종별 어선척수 및 어획량

구 분	척 수	생 산 량			
		1998	1999	2000	2001
합 계	220척	267,286톤	190,794톤	228,412톤	240,598톤(100%)
선 망	27척	67,467톤	142,091톤	170,025톤	178,072톤(74%)
연 승	193척	200,905톤	48,703톤	58,387톤	62,526톤(26%)

주) 2001년 12월 기준

참치관련 국제지역수산기구는 참치어종이 일정한 해역에 서식하지 않고 장 거리를 회유하는 원양회유성어종(遠洋回遊性魚種)임을 감안하여,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안된 위원회로, 일국의 관할해역을 넘어서 회유하는 고도회유성어종에 대한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참다랑어(Bluefin tuna), 황다랑어(Yellowfin tuna), 가다랑어(Skipjack tuna), 고래류(Cetaceans)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고도회유성어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참여중인 참치관련 국제수산기구는 대서양참치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이며,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는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동 협약의 정식명칭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이며, 설립은 1996년 3월, 우리나라 가입 (70.08), 회원국은 한국, 스페인, 미국, 일본 등 31개국, 관할수역은 대서양 및 인접수역이다.

동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참치 및 참치류의 어군조사, MSY를 가능케하는 수준으로 어군을 유지시키기 위한 권고사항, 참치 자원평가, TAC/국별 쿼타 결정, 보존관리조치 채택 등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서양 다랑어어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과학적 조사결과에 대한 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표 3-4>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설립/본부	- 1969년 3월/스페인 마드리드	
가입여부	- 1970년 8월 가입	
회 원 국	- 스페인, 미국, 일본 등 31개국	
관할수역	- 대서양 및 인접수역	
주요활동	- 참치 자원평가, TAC/국별 쿼타 결정, 보존관리조치 채택	

동 위원회의 규제사항은 첫째, 어종별 체중규제(황다랑어 및 눈다랑어 3.2kg 미만, 참다랑어 6.4kg 이하 어획금지) 둘째, ICCAT 항구 감시제도 실시(참치 전채, 양륙시 및 어선 정박시 항구에서 체약국의 관계당국에 의한 규제사항 준수여부 감시) 셋째, 멕시코만 산란수역 보호 넷째, 서부대서양 수역에서 참다랑어 어획 금지 다섯째, 1993년부터 참다랑어 통계서류제도 실시 여섯째, 지중해에서의 대형연승어선의 어획금지기간 설정 등이다.

동 위원회의 IUU어업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제17차 연례회의에서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제출 철저 및 과학자료와 별도의 행정 통계자료 제출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IUU어업퇴치 노력관련 일본이 수입통계자료를 근거로 IUU 선박 리스트(List) 회람 및 리스트 등재국에 대한 추궁 및 의의제기 등(우리나라 관련 선박 2척 명단 삭제 및 어획량 확인 조치)을 한 바 있다.

또한 완성된 쿼타배정 기준에 의하면 조업국에는 전통적 조업실적과 보존관리조치 의무이행사항을, 연안국에게는 해당자원예의 경제·사회적 의존도를 적용토록 결정되어 다음 회의부터 확실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필요한 쿼타유지를 위해서는 소량이라도 어획실적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통계자료 제출 등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완수도 중요하다.

ICCAT는 선도적인 지역수산관리기구로서 관할어종 뿐만 아니라 생태계 접근 지향적인 해양생물(바다새, 상어, 바다거북 등) 관리 체계로 나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 필요하다.

특히 ICCAT회의는 분야별/어종별로 세분화된 소위원회 위주로 회의가 진행되는 바, 회의도중에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자문 및 의견이 수시로 필요하다. 대부분의 회원국 대표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여 회의를 주도해 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에 맞서 우리의 입장 및 이익대변 뿐만 아니라 IUU어업 규제에 대한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분석하는 전문가 양성과 동 내용들을 관련업계에 알려주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나.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동 협약의 정식명칭은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이며, 설립은 1996년 3월, 설립과 동시에 우리나라 가입(96.3.27), 회원국은 한국, 일본, EC, 영국, 중국, 호주, 인도 등 19개국, 주요활동은 인도양 수역 참치자원의 최적이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참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16개 어종을 관리대상, 관할 수역은 인도양과 인접수역인 남극수렴선 북쪽으로 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최적이용을 보장하고 그러한 어족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자원의 지속적 개발의 장려를 위한 회원국간의 협력의 목적 하에 어족자원의 상태 및 추세 조사, 동 어족의 보존관리 및 어업과 관련한 과학정보, 어획량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수집·분석, 동 어족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의 장려·권고 및 조정,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전수·연수 및 증진 등을 포함하는 기타 활동에 대한 장려·권고 및 조정을 한다. 또한 과학적인 증거에 의거하여, 이 협정이 관리하는 어족을 보존하고 수역내에서 동 어족의 최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존 및 관리조치를 채택하고 동 어족에 대한 어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표 3-5>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설립/본부	- 1996년 3월/세미셀	
가입여부	- 1996.3.27(설립과 동시에 가입)	
회 원 국	- 인도, 영국 등 19개국	
관할수역	- 인도양	
주요활동	- 인도양수역 참치자원의 최적이용 도모 (참치 자원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채택)	

동 위원회의 IUU어업관련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제6차 연례회의에서는 IOTC 결의안 이행에 대한 체약국 및 협력국의 보고와 관련하여 일본은 99/02(FOC 어업활동 방지 행동요청)에 의거, '99년부터 자국수출 FOC 조업선 List 제출, FOC 어선과 거래중단 권장중임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은 00/02(연승어선 어획물의 포식관계 조사)에 따라 선장들에게 포식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요청중이므로 우리도 자발적 정보제공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감시제도 마련 임시회의(2001.3월 일본 야이즈)결과 보고에서는 의장의 동 제도 이행에 대한 기본 원칙에 합의한 결과를 보고하고 통제감시위원회 설립 및 EC가 회기중 다른 당사국과 협의하여 그 위임사항개발을 주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일본은 단계적 접근 강조, 비체약국에 초점을 맞춘 통제감시위원회 설립지지, 해상검색의 기국 통제를 주장했고, EC는 기국 통제 원칙에 기초 요소별 우선권 선정, VMS 사용권장 필요, 해상검색 및 항구통제 반대, 현 결의안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호주는 단계적 접근과 유엔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과의 일관성을 주장하고, 프랑스는 VMS, 오퍼저버 프로그램 및 항구검색 등의 조치를 이미 이행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에서는 IUU어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선장들에게 자발적인 어업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동 수역에 출어하는 원양어업자들에게 충분한 동향설명 및 홍보 등을 통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은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1993년 채택한 후 1994년 5월 20일자로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관할수역은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수역, 주요활동은 남방참다랑어 자원평가, 보존조치 채택, TAC 및 국별 쿼타 설정 등이다.

동 위원회 회원국의 2001년 TAC는 12,890톤으로 한국 1,140톤, 일본 6,065톤, 호주 5,265톤, 뉴질랜드 420톤 순이다. 특히 남방참다랑어는 다른 횡감용 참치보다 3~10배 비싼 최고가 어종으로 우리나라는 '91년부터 조업을 시작, 어획량의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원량 감소에 따른 채산성 문제로 일부 어선이 중서부태평양 수역으로 이동조업하면서 '98년에 1562톤(19척, 360억원)을 정점으로 2000년에 987톤(13척, 292억원), 2001년에 735톤(9척, 208억원)으로 어획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남방참다랑어 조업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 '96년부터 동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여 우리 어선이 충분히 조업가능한 어획쿼타 1,140톤을 확보한 후 지난 2001. 10월 가입하였으나, 최근 어획쿼타를 소진하지 못해 자국 어획쿼타를 모두 소진한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우리 어획쿼타의 삭감 요구가 예상된다.

<표 3-6>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설립/본부	- 1994. 5월, 사무국 : 호주 캔برا	
가입여부	- 2001. 10.17	
회 원 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4개국	
관할수역	-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수역	
주요활동	- 남방참다랑어 자원평가, 보존조치 채택, TAC 및 국별 쿼타 설정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국 대표들로 동 위원회(재정행정상임위원회, 과학위원회, 이행위원회, WG-ERS)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게 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는 구속력을 가진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자문기구인 Scientific Committee는 SBT자원량의 평가 및 분석을 하고 남방참다랑어 자원량의 보존, 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해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동 위원회의 동향을 살펴보면, 과학연구프로그램(SRP: 어획보고체계 확립, CPUE 표준화 및 분석, 읍저버 프로그램, tagging program 등)을 통한 CCSBT 과학연구는 현재 자원량 추정 및 TAC 산출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동시에 장기적인 자원관리 방안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SBT(Southern Bluefin Tuna)의 교역경로 투명화 및 조업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된 무역정보제도(TIS)를 통하여 SBT를 타국으로 수출할 때 어획증명서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CCSBT 회원국은 TIS 비협력국에 대한 제재와 비회원국 협조 및 정확한 어획정보 확보방안으로 Action Plan을 채택하여 TIS 미시행국가(회원·비회원)로부터의 SBT 수입거부 및 자원관리조치 협력 요청행동계획(Action Plan)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CCSBT에 있어서의 한국의 분담금 부담에 있어서는 TAC 결정의 기초인 SBT 자원량 추정을 위하여 SRP(과학조사사업)를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됨에 따라 회원국의 분담금이 약 21% 증가되었으며, 향후 몇 년간 분담금의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SBT 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대만은 가입 압력과 더불어 1,140톤의 가입쿼타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회원국은 자국 쿼타를 이미 소진하였거나(호주, 뉴지), 거의 소진(일본 12월초 조업완료)할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어획부진으로 인하여 쿼타가 미소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별 쿼타배정은 '과거 어획실적'을 중요한 할당요인으로 여기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쿼타 미소진으로 인하여 뉴질랜드 업계의 쿼타 증가 요구, 대만의 가입쿼타 불만, 가입쿼타를 협상한 일본의 한국쿼타 삭감 요구 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간 업계에 대해 행하여 온 조업실적 독려를

지속적으 함과 아울러 향후 회의에서 우리 어획쿼타의 미소진은 일부 어선의 어장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소진 가능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현행 우리 어획쿼타 삭감논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차후 어획쿼타량 소진여부 감독 등을 위한 읍저버 승선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논의될 예정인 바, 정부에서는 우리 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승선비율 최소화(10% 이하) 및 우리나라 읍저버가 승선하도록 적극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업계에 의하면 약 500척의 편의치적선이 남방참다랑어 산란장인 인도네시아 부근에서 치어를 남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자원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업계의 입장을 감안하여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하여 이들 편의치적선을 퇴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방안 논의를 통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위원회(WCPFC)

1994년부터(제1차 회의: 1994.12.1-5, 솔로몬 군도) 국제적으로 중서부 태평양 고도회유성어족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협약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동 협약의 설립을 위한 다자간 고위급회의(MHLC)에 참여하여 왔다. 이 협약은 2000년 9월 5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제7차회의에서 총 25개국 참가한 가운데 19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협약 채택에 반대하였다. 현재 참여국 25개국 중 한국, 일본, 중국, 프랑스, 키리바시, 영국 등 6개국이 협약문에 미서명한 상태이다.

<표 3-7>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위원회(WCPFC)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nvention	
설립/본부	- 설립중	
가입여부	- 가입예정	
참 여 국	-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등 25개국(어업실체: 대만)	
관할수역	- 중서부태평양	
주요활동	- 중서부태평양의 참치자원 보존 및 합리적 이용	

※ 협약 발효 : 북위 20도 이북 3개국과 북위 20도 이남 7개 국가 비준 또는 3년내 미비준시 13번째 국가 비준서 기탁 후 6개월 후 발효

동 협약의 지리적인 적용 대상은 중서부태평양 수역인데, 협약 초안에는 남부 및 동부 한계만 설정되어 있다. 협약의 적용어족은 적용 수역내 모든 고도회유성어족 및 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in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Ocean)가 결정하는 어족에 적용되나, 다만 꽁치류(sauries)는 제외된다.

중서부태평양 수역은 우리 참치어선 223척(생산량 23만톤, 5.1억불) 중 91%인 202척이 조업하여 연간 22만톤(4.9억불) 생산하고 있는 최대어장이다. 동 협약은 공해상에서 제3국에 의한 조업어선의 승선검색 가능 등 조업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협약을 주도한 남태평양도서국들은 조속한 협약체제 운용을 바라는 반면, 한국 / 일본/중국 등 조업국들은 협약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협약 서명시 협약개선추진의 명분 약화 등 실익이 없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협약에 서명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향후 본 협약의 개선사항에 따라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²³⁾

위원회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 “예방적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을 취한다. 이 협약에 따른 보존 관리조치는 협약 수역내 연안국의 관할 수역내에도 적용된다. 협약 수역내 연안국 관할수역의 보존관리조치와 공해에서의 보존관리 조치는 협약 수역내 고도회유성어족의 전체적인 관리를

23) 동 협약 규정상 우리나라는 서명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함

위해서 상호 양립되어야(compatible)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회원국들(당사국들)은 양립되는 조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양립성 보존관리 조치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족의 생태적 특징, 연안국에 의해 취해진 관할수역내의 조치내용, 공해에서 연안국과 조업국간에 취해진 보존 조치의 내용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안국은 자국관할 수역내의 보존관리 조치가 위원회에 의해 취해진 조치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협약수역내의 연안국 관할수역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협약수역내 전체의 총허용어획량(TAC)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어종별 어획량, 조업구역, 어구 등에 대한 규제를 택할 수 있다.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어족의 상태, 참여국의 이해관계, 조업패턴, 조업 관행, 어획중 국내 소비에 사용되는 부분, 전통적 조업, 어족의 보존을 위한 기여도, 보존 조치 이행의 기록 등이다. 총허용어획량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컨센서스로 결정한다.

이 협정과 위원회의 보존관리 조치에 대한 집행은 기국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각국은 타국 선적의 어선이 이 협약에 따른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기국과 관련국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하다면 위원회에도 이 사실을 통보한다. 기국이 아닌 다른 국가(A국)가 B국 어선이 위반조업을 하였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B국에 대해 처벌요청을 하면 B국은 충분한 조사(investigation)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하고 관련 결과를 A국 및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어느 국가(A국)의 어선이 어느 연안국(B국)의 관할수역내에서 무허가 조업(unauthorized fishing)을 하였을 경우에는 A국은 동선박에 대해 B국의 법령에 따른 규제조치(sanction)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이 협약은 협약 수역내 공해에서 기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의한 승선 및 검색(boarding and inspection)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이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승선 및 검색의 절차에 합의하지 못하면 유엔공해어업협정 제21조 및 제22조상의 승선, 검색 절차에 따른다. 넷째, 이 협약은 항구국이 자국의 항구에 자발적으로 들어와 있는 어선에 대해서 서류,

어구, 어획량을 조사할 수 있다. 다섯째, 이 협약은 위원회 사무국에 의해 운용되는 지역 읍저버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된다. 읍저버란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어선에 승선하여 감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당사국들은 이 협약의 비당사국 어선이 이 협약 수역에서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보존관리 조치를 저해하는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법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을 가진 비당사국들에게 보존조치의 이행에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협력에 응하는 비당사국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본 협약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표 3-8>과 같다.

<표 3-8>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위원회(WCPFC) 협약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요항목	한국의 입장(내용)
UNFSA 원용 및 적용문제	- UNFSA 제17조는 UNFSA 회원국은 WCPFC 회원국이 아니라도 WCPFC의 보존조치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고 있음 - WCPFC 협의의 여러 곳에서 UNFSA를 원용하거나 준용하고 있으므로 UNFSA 비회원국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책 구상
협약수역 및 관리대상 어종	- 한국은 원칙적으로 고도회유성어족의 회유범위를 협약 수역으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음 - 일본은 북위 20도 이북수역에 대한 독립과 WCPFC의 관리대상 어종에서 남방참다랑어 제외를 요구
예방적 접근	- 자원고갈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방법이나, 과학적 근거에 의하지 않은 지나친 자원보전적 입장은 거부함
의사결정	- 한국은 회원국의 입장을 존중할 수 있는 의사결정 방법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제도의 악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더불어 거부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공해에서의 승선검색	- 공해에서의 제3국에 의한 무차별 승선검색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생각함 - 현재 WCPFC협약은 발효 후 2년 이내에 승선검색에 관한 내용이 타협에 이르지 못하면 UNFSA 제22조, 제23조를 원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WCPFC 협약 협상 분위기에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됨
공해에서의 읍저버제도	- 읍저버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논의될 것이나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횡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수 아시아 조업국에게는 불리할 수 있음
VMS	- VMS 정보는 기국의 관할하에 협력차원에서 지역수산기구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용문제가 야기됨
분쟁해결절차	- 분쟁 당사국 중 한 회원국의 국제재판소 제소에 따라 다른 회원국도 강제적으로 법정 투쟁을 해야 하는 현재의 절차에 대해 WCPFC 고유의 분쟁해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봄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한편 본 협약에 가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일본의 협약개선 노력에 동조하면서 일본과는 별도로 협약에 대한 한국 고유의 문제점 파악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차후 준비회의 전에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미국과의 지속적 협의 추진 및 연안국과의 양자간 어업협력 조성함에 동시에 정부와 협회, 업계

의 최종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IUU어업방지와 관련해서는 중서부태평양 수역의 수산기구 설립을 위한 제3차 준비회의(02.11.18-22,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이 제안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의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IUU어업 근절과 조업능력 감축에 관한 결의문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참가국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마.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동부태평양을 관할수역으로 하는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는 미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12개국이 참치자원의 관리 및 돌고래 관리를 위하여 1950년 3월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조업중인 참치연승어선과 향후 조업 가능성이 있는 선망어선의 안정적 조업을 위해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다.

<표 3-9>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	
설립/본부	- '50.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호야	
가입여부	- 가입검토 중	
회 원 국	- 미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파나마, 코스타리카 등 12개국	
관할수역	- 동부태평양	
주요활동	- 동부태평양수역의 참치자원관리 및 돌고래 관리기능 병행 ※ 선망어업의 어획능력 제한(2005년까지 어창능력 135천톤) 등 주로 선망선을 대상으로 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동 위원회의 관할수역에서의 우리나라 조업현황을 살펴보면, 참치연승어선에 의해 황다랑어(2천톤 이상)와 눈다랑어(500톤 미만)를 어획하고 있으며 현재 동 기구는 연승어선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향후에도 지속적 조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망선의 경우 현재 중서부태평양에서 100%조업중

이나 최근 동 수역의 조업경쟁 심화로 동부태평양으로의 이동 조업 가능성이 있다

동 위원회의 주요 규제내용은 선망어업의 어획능력제한(2005년까지 어창능력 135천톤) 등 주로 선망선을 대상으로 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 및 2001년 총회에서 조업선등록 제도 실시 및 비협력국에 대한 지역 등록 불가를 결의한 바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동 수역에서 조업에 있어 동 기구에 대한 협력 없이는 현재 조업중인 우리 참치연승선과 향후 조업가능성이 있는 선망선의 안정적인 조업에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구 가입관련 사전 정보과약을 위해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관련 회의에 적극 참석함과 동시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통해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는 등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해역관리 지역수산기구

가.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1980년 5월 칠레, 알제틴 등 24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남극해를 관할수역으로 하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의가 발족되었다. 동 위원회는 SCAF, SCOI, WG-CM, WG_EMM, WG-FSA 등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주요 활동으로는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게 남극해양생물의 어획 및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조치를 채택함과 아울러 각종 과학적 조사활동을 지원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배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99년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보존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0>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설립/본부	- '80. 5월 호주 호바트	
가입여부	- 가입('85. 4.28)	
회 원 국	- 칠레, 알젠틴 등 24개국	
관할수역	- 남극해	
주요활동	-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게 남극해양생물의 어획 및 조사실시, 보존조치의 채택, 각종과학조사활동 지원, 자료수집 및 배포	

동 수역에서의 어업현황을 보면, 호주, 칠레, 프랑스, 인니, 뉴질랜드, 폴란드, 한국, 러시아, 남아공, 스페인, 우그라인, 우루과이, 미국 등의 조업국이 48.3해역의 오징어시험조업, 88.1해역의 이빨고기 연승시험조업, 58.4.2해역의 빙어 트롤시험조업, 48.3해역의 이빨고기 연승 및 통발어업, 58.5.2해역의 이빨고기 트롤어업, 48.3해역의 빙어 트롤어업, 58.5.2해역의 이빨고기 트롤어업, 48해역의 크릴 트롤어업, 기타: 58.6과 58.5.1해역의 프랑스 EEZ에서의 이빨고기 어업 및 58.6과 58.7의 남아공 EEZ에서의 이빨고기 어업 등을 행하고 있다. 특히 주요 어종인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와 빙어의 경우, 2000/2001년의 총 어획량은 각각 9,995톤과 2,368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5년 4월 28일 가입한 이후, 본 수역에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일명 메로)를 어획하는 저연승 2척이 조업 중이며, 2001년 현재 어획고는 758톤을 생산하였다.

<표 3-11> 한국관련 남빙양 어업 계획

어종별어기	2000/2001	2001/2002
크 리	5,718톤(48해구 전체쿼타 400만톤)	예상량 8,000톤
이빨고기	787톤/2척(48.3해구 전체쿼타 4,500톤)	조업허가 신청 계획(48.3해구 전체쿼타 5,820톤)
빙 어	조업허가 못 받음	조업허가 받음(48.3해구 전체쿼타 5,557톤 중 100톤 쿼타)

협약수역내에서의 IUU어업과 관련하여, IUU어업 방지를 위한 어획증명제도 개선, 공해에서의 이빨고기 조업선 VMS설치 및 운용 규정, 남극해양생물의 우발적 사망 평가 및 방지 등의 각종 보존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활동과 관련 국내의 대응책으로는 워크샵 등 각종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입장이 채택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관련업계의 회의참석 유도 및 긴밀한 협조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조업국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사안별 공동대응방안 또한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²⁴⁾

나.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1949년에 설립된 북서대서양수산기구(ICNAF)는, 1978년 10월 24일 캐나다를 비롯한 8개 국가가 북서대서양 다국간 수산 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NAFO로 대체되었고, 이 NAFO협약이 1979. 1. 1 발효함으로써 정식으로 NAFO가 발족하게 되었다.

동 기구의 설립목적은 협약수역내 수산자원의 최적이용,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이다. 산하조직으로서는 이사회, 과학이사회, 어업위원회, 재정행정상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다. 동 기구의 운영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NAFO수역은 현재 모라토리움 실시 등으로 총허용어획량('98년 TAC 196,000

24)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2002.10)는 28일 한국과 러시아, 우루과이, 세이셸공화국 등 4개국이 회귀종인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를 불법으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음. 그린피스는 이날 호주 호바트의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총회장 밖에서 이들 4개국 어선들이 2000년 5월부터 CCAMLR 협정 보호구역인 호주와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역에서 2억2200만달러 상당의 이빨고기 2만톤을 불법어획했다며 시위를 벌였음. 린다 앵스 그린피스 대변인은 이 자료가 지난주 비공개로 열린 CCAMLR 회의에 제출됐다고 밝혔고 이들 4개국은 이빨고기의 불법 어획을 숨겨왔다고 말했음. 한국과 러시아, 우루과이는 남극해에 서식하는 이빨고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남극보호위원회 회원국이며 세이셸공화국은 24개국으로 구성된 CCAMLR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음.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는 남극해에서만 발견되며 일본과 북미 유럽에서 인기를 끌어 1kg에 최고 55달러의 고가에 거래되고 있음<동아일보 2002.10.29>

톤)이 매우 적으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어장이었음을 고려하여 동 수역에서의 어획쿼타 확보를 위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 3-12> 북대서양 수산위원회(NAFO)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설립/본부	- '78. 10월 캐나다 다투마스	
가입여부	- 가입('93.12.21)	
회 원 국	- 캐나다, 러시아등 18개국	
관할수역	- 북서대서양	
주요활동	- 수산자원의 최적이용 및 합리적 관리를 위한 기여	

다.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남동대서양수산기구는 현재 설립중에 있는 기구로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9개국이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총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앙골라, 나미비아 등 13개국이다. 특히 연안국 최소한 1개국 포함하여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로부터 60일후에 동 협약이 발효되게 되어 있다.

한편 동 협약은 나미비아 원독에 임시사무국의 두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서안의 남동대서양(연안국 EEZ 제외)을 관할 수역으로 본 수역의 수산자원보존 관리(고도회유성어종 제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3-13>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South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설립/본부	- 설립중, 임시사무국 : 나미비아 원독	
가입여부	- 협약서명(2001.4.20), 서명국(9개국)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앙골라, 나미비아등 13개국	
관할수역	- 남아프리카 서안의 남동대서양(연안국 EEZ 제외)	
주요활동	- 남동대서양 수산자원보존관리(고도회유성어종 제외)	

한편 우리나라 조업현황을 보면, 연안국인 앙골라 EEZ수역에서 (주)인터블고 소속 트롤어선 10척이 민어류, 서대류 등 저서어류를 연간 약 7천톤(16백만불)을 생산하고 있고 공해상에서도 참치어선 12척이 285톤(2,500천불)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동 협약의 발효를 위하여 '97. 12월 이래 7차례의 설립준비회의를 거쳐 최종 협약안을 확정하고 협약 서명식이 2001. 4.19, 나미비아에서 개최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9개국 서명하였으며, 동 협약상 고도회유성어종(참치류)와 연안국 EEZ수역은 제외되어 현재로서는 우리 어선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므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어선들의 동 수역내 공해조업에 대비, 어장확보와 어업기득권 유지차원에서 동 기구에 가입하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특수어종 지역수산기구

가. 국제포경위원회(IWC)

1946년 12월에 채택된 국제포경위원회는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수산기구로서 정식명칭은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이다. 우리나라는 '78.12.29일에 가입하였으며, 총 회원국은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 42개국이다. 포경이 수행되는 모든 수역 및 내륙을 관할 수역으로 하여 고래 관련 연구조직 및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사항을 채택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표 3-14> 국제포경위원회(IWC)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설립/본부	- '46. 12월, 영국 캠브리지	
가입여부	- 가입('78. 12.29)	
참여국	- 한국, 노르웨이, 일본등 42개국	
관할수역	- 포경이 수행되는 모든수역 및 내륙	
주요활동	- 고래관련연구조직 및 수행자료의 수집·분석, 고래자원의 보존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제사항 채택	

특히 '86년 상업포경 전면금지 결정이후 증가된 고래자원에 대한 상업포경 허용을 위해 '94년에 새로운 포획쿼타 산정방식(RMP)을 만들고 감시·감독제도(RMS)를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일본, 노르웨이 등 포경국은 상업포경 재개를 위해 조속한 RMS 완성 및 고래가 막대한 어업자원소비, 어장교란 등 타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지속가능한 범위내 적절한 포획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영연방, EU국가 등 반포경국들은 보다 엄격한 RMS 요구와 더불어 포경의 영구 금지를 위한 고래보호구 설정을 제안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WC의 포경금지 결정에 따라 '86년에 포경어선 21척의 정부 매입 및 고래포획을 금지조치(수산청고시 제85-7호)하고, 연근해어업 허가 대상에서 포경어업을 삭제('91.3.28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하였으며, 향후 국제포경환경에 걸 맞는 고래자원관리제도 확립을 위하여 기존의 고래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하고 상업포경 허용에 대비하여 연근해 고래자원에 대한 연구·조사에 2005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중부베링해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자원인 명태는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 동 협약은 1990년 6월 부시와 고르바초프

간 미소정상회담에서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 촉구로 시작되었다.

그 후 1995년 12월 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이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공해수역을 관할수역으로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회원국은 6개국으로서 조업국은 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이며 연안국은 미국, 러시아 등이다.

<표 3-15>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설립/본부	- '95. 12월,	
가입여부	- 가입('95. 12월)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폴란드등 6개국	
관할수역	-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바깥의 공해수역	
주요활동	-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관리 및 적정이용을 위한 국제체제 수립 명태자원의 유지관리도모	

중부베링수역은 우리 명태 트롤어선 30~40척이 '86년 미국의 외국어선 축출정책에 따라 미국 EEZ에서 철수한 이후, 연간 25만톤씩 조업하던 주요 어장이었으나, 동 수역의 명태자원이 남획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93년부터 6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모라토리움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조업이 중단되고 있다. 이후 우리 어선들은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해 오고 있다.

모라토리움 실시 이후 6개 회원국은 '94. 6월에 중부베링명태자원보존협약(CBSPC)을 채택하여 중부베링해 명태 추정자원량이 167만톤 이상이 될 경우, 국별 할당량을 정해 조업을 재개기로 하였으나, 추정 자원량 수준이 '98년 72만톤에서 2001년에 35만톤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8만톤에 불과하여 조업재개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폴란드 등 조업국은 자원의 보존도 중요하나 어업의 영위도 중요함을 강조하며, 어업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소량

의 상징적인 허용어획량을 정하여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의 자원상태로는 어떠한 허용어획량도 설정할 수 없다며 미국, 러시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의사결정방법이 만장일치로 되어 있는 현 협약 규정상 반영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 협약의 재검토와 그간 회원국들의 축적된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중부베링수역에 대한 대규모 과학조사계획 수립 등을 위해 내년 봄 우리나라에서 Workshop을 개최할 것을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동 Workshop에서는 그간 모라토리움의 효과, 허용어획량 설정방법, 시험조업 조건 개선을 비롯하여 현 협약규정에 대한 재검토까지 그간 우리가 제기해 온 각종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를 위해 앞으로 관계전문가 및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연안국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3-16>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 중부베링해에서 가장 중요한 어업자원인 명태의 자원보존관리	
회원국 (6개국)	- 조업국 : 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 - 연안국 : 미국, 러시아	95.12 채택
협약 내용	- 명태자원량이 167만톤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 조업을 재개 - 허용어획량 : 베링해 명태자원량이 67만톤-200만톤 미만 → 13만톤, 200-250만톤 미만 → 19만톤, 250만톤 이상 → 연례회의에서 컨센서스로 결정 - 연례회의에서는 매년 나라별 자원조사실시 권고, 매년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명태자원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해 허용어획량 및 나라별 할당량 결정	
최근 동향	- 1차/2차 연례회의(96.11/97.11)에서 명태자원 평가 결과, 자원이 조업재개 수준인 167만톤에 미치지 못해 현재는 조업재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다.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1993년 2월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은 북태평양 및 북위 33도 이북인접 해역을 관할 수역으로 북태평양 소하성자원(연어)의 보존을 위한 과학적 정보의 수집, 분석, 배포 및 자원보존 조치 채택을 목적으로 북태평양 소하성 어족 위원회(NPAFC)를 발족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11월 제10차 연례회의 참석하여 조속한 시일내 가입 약속하는 등 현재 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3-17>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정식명칭	-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설립/본부	- '93. 2월 캐나다 밴쿠버	
가입여부	- 가입추진중	
참여국	- 캐나다, 미국, 러시아, 일본등4개국	
관할수역	- 북태평양 및 북위33도 이북인접해역	
주요활동	- 협약수역내 소하성 어족(연어 등) 및 관련어종의 보존조치 수립, 협약위반활동에 대한 자료교환 및 동 행위에 대한 처벌방법강구, 회원국들이 취한 행위평가	

특히 우리나라는 연어 모천국으로 '67년부터 동해안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으로 연어 방류사업 실시 및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2000년의 경우 2천만미(약 21억원)의 연어를 방류하였고, 2005년에는 3천미(40억원)를 방류할 계획이다.

동 기구는 회원국만 모천국 지위를 인정하고 과학조사 자료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천국 지위 확보 및 방류연어에 대한 회유경로 파악 등 자원조사와 선진기술 습득을 위하여 가입추진이 절실한 실정이다. '93년 제1차 회의부터 읍저버로 참석하여 가입의사 표명 (NPAFC측도 가입 권유) 및 외교통상부에 가입절차를 협조요청 중에 있으며, 제9차 연례회의 (2001.10월, 캐나다)에 참석하여 모천국 지위인정 및 한국어의 공용어채택 등 가입방안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제4장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분석

제1절 원양어업

1. 원양어업의 실태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현재 전세계적으로 152개 연안국 중 81%에 해당하는 113개 국가들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수산자원보호를 명목으로 조업국에 대하여 과도한 입어료 부과 및 직접투자 등을 요구하면서 외국어선의 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이라는 원칙하에 지역적 차원에서 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이행 및 감시제도의 강화, 국가별 쿼터할당 등의 규제를 통해 수산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1957년 참치연승어선인 "지남호"가 인도양에 시험조업을 시작한 이래 19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외화획득산업으로 직접 어로에 종사하는 선원을 비롯하여 조선업, 어망업 및 냉동창고업 등 관련산업을 통하여 대규모 고용촉진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현재도 전 세계 원양어업국중 생산량 면에서는 제4위라는 외형적인 화려한 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의 현실과 향후전망은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우리 원양어업의 현 상황은 위기라고 진단할 수 있으며,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업계의 자구노력이 시급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원양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업종별 여건을 고려한 원양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1998년부터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북해도트롤어선 6척, 꽁치봉수망 10척을 감척하였고, 오징어채낚기는 금년에 2척을 감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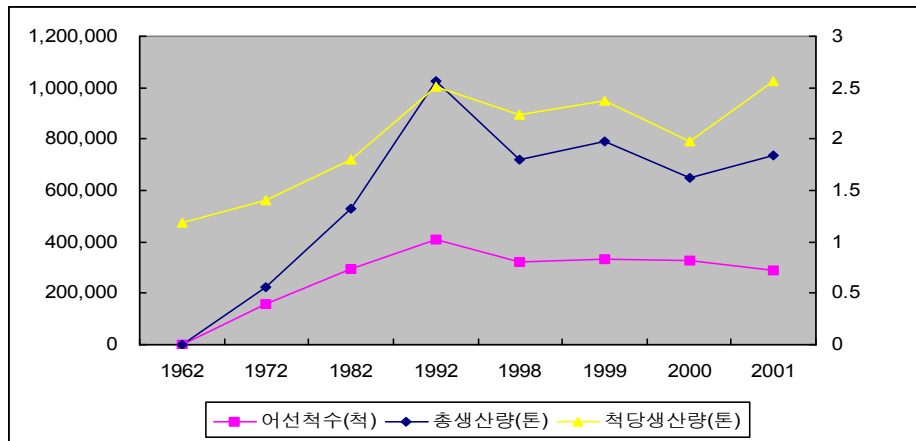
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15척을 감척하고 참치연승 노후어선 30척을 새로 건조 대체하는 계획이 있다.

또한 조업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연안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및 국제수산기구에의 가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해외 신규어장 개발을 위한 자원조사도 2001년부터 실시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정책과 더불어 해외어장에서 연안국의 수산관계 법규 및 국제협약 내용에 부합되는 투명한 조업을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등 책임있는 조업국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켜 우리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표 4-1> 원양어업의 추이

연도	어 선 수		선원수 (명)	업체수 (개)	생산량 (톤)	수출액 (천\$)
	척수	톤수				
1962	5	555	127	3	657	209
1972	455	159,814	12,230	64	224,135	68,032
1982	683	292,932	14,933	77	527,819	328,926
1992	759	408,142	14,212	212	1,023,926	503,825
1998	545	323,487	6,475	151	722,597	529,540
1999	550	333,790	6,281	147	791,409	429,325
2000	535	328,885	5,403	139	651,267	538,972
2001	507	287,527	5,099	130	739,057	389,688

자료 : 원양어업통계연보.



[그림 4-1] 원양어업 어선세력 및 생산량 추이

<표 4-2> 어업별 조업동향

어업	조업동향
명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서베링해 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쿼타 22,000톤 중 21척(허가척수 : 24척)이 1.5~2.22까지 19,637톤 어획하여 89%의 소진율을 보였고, 나머지 2,363톤(5척)은 하반기에 조업할 예정임 - 민간쿼타 미확보로 생산 차질 불가피(약 140,000톤) ○ 북쿠릴해 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쿼타 3,000톤 중 5척이 1.18~2.22까지 2,998톤 어획하여 100%의 소진율을 보였음 ○ 정부쿼타 25,000톤 중 3.31현재 90.5%인 22,635톤 소진
참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승어업 : 190여척 조업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량은 전년동기 누계 대비 98%로 전년 수준 유지 - 태평양 : 대부분 어선이 키리바시 수역 및 인근 공해에서 조업중이고 1일 척당 1.0~1.3톤 정도 어획량을 보이고 있음 - 인도양 : 어황이 불안정하여 전년도 하반기부터 전어선이 태평양 수역으로 이동, 조업중에 있으며 현재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은 없음 ※ 고위도어장(남방참다랑어) : 동원수산(주) 소속 제635 동원호 등 9척이 조업(1일 약400kg 어획)중에 있으며 5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 보다 증가된 287톤(2001.5월 : 197톤) 어획 ○ 선망어업 : 26여척 조업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동기 누계 대비 113%로 어획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 안정을 위해 WTPO를 통한 일본, 대만, 필리핀 관련국과의 어획량 조정 협의 - PNG, FSM에서 26척이 조업중이며 1일 척당 20톤 정도 어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PO(세계참치선망선주기구)의 어가안정을 위한 회의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기간 : 스페인 마드리드/'02.4.11~12 -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8개국 · 우리측 : 참치선망위원장 신성택 사장 등 5명 - 결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척수를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한국,일본,대만, 필리핀은 어가회복을 위해 35% 조업감축 노력 계속 추진 및 톤당 700\$이하로는 판매금지 · 선망에서 어획되는 참치류의 1.5kg 이하 어획금지

<계속> 어업별 조업동향

어업	조업동향
오징어	<p>○ 포클랜드 EEZ 및 공해상(원양오징어채낚기 총생산량의 80~90% 점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 54척이 조업하였으나,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13~14℃, 적정수온 9~12℃) 어군 형성이 되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저조하였고 5월말 현재 조업은 종료되었음 - 초기에 주로 SS사이즈가 어획되어 전년도 경우 대부분 유럽에 베이트용으로 수출되었으나 금년의 경우 베이트용 수출 감소로 톤당 가격이 300\$ 형성(수출가격 500\$/톤 적정가격) 되므로서 대부분 국내로 반입됨 - 당초 조업기간이 2.15~6.15까지(4개월) 였으나 포클랜드정부의 조기철수 요청에 의거 5.31 전어선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동향 : 54척(페루조업14, 콩치조업6, 외국채항27, 부산귀항중7) - 어획부진에 따른 포크정부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어료 지불시기 연기(4~6월 → 5~7월로 1개월씩 순연) · 2002년도 15일간 조업기간 단축분에 대한 5%(적당 10백만원) 감액 · 2003년 척당입어료 감액 : 10~20%(모든 입어어선10%, 과거 입어실적에 따라 매년 1%씩 감액, 최고 10년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클랜드수역(오징어채낚기) 생산 : (2001.2.15~5.31) 82천톤 → (2005.2.15~5.31) 9.4천톤 (11.5%) <p>○ 2002년 일본 EEZ수역 어획할당량 : 80톤, 2척(8.1~10.30)</p>
콩치붕수망	<p>○ 러시아 EEZ수역의 입어허가 지연에 따라 러시아 공해수역에서 어선 14척이 조업중에 있으며, 2002.6.24현재 1,704톤 생산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EEZ수역 어획할당량 : 20,000톤, 24척(6.1~11.15) - 일본 EEZ수역 어획할당량 : 9,000톤, 24척(8.20~11.30)
해외트롤	<p>○ 인도네시아 아라프라수역의 자원 회복에 따라 문어류, 갑오징어, 새우류 등 어종의 생산량 증가</p> <p>○ 서부아프리카의 주어장인 기니 꼬나끄리수역(황민어)에 대한 기네 당국의 감시강화로 인한 조업위축(영국인 회사의 위탁 감시 강화)</p> <p>○ 인도네시아, 서부아프리카 등 수역에서 147여척 조업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평양 및 인도양 수역 : 77척 【인도네시아 44(조업28, 수리·채항16), 뉴질랜드 11, 멕시코 3, 오만 7, 모잠비크 1, 예멘 1, 수리·채항(UAE, 파키스탄 등 10척)】 - 남대서양 수역(아프리카) : 70척(기니 32척, 앙골라 11척, 대서양 공해 10척, 시에라리온·세네갈·라이베리아·기니바사우 등 17척)

2. 원양어업에서의 IUU어업 개념

가. 불법(Illegal)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연안국의 EEZ에서 불법어업을 한 경우는 최근에까지도 발생하고 있다. 연안국으로부터 입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어업을 한 경우는 1998년 6월 자스민9호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자스민호가 키리바시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가 나포되어 재판에 계류중 도주하였다.

허가조업이기는 하나 연안국의 관련법규를 위반함으로써 불법어업을 행한 경우도 있다. 2000년 12월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들이 조업을 종료하고 러시아 수역에서 나올 때 통과절차 및 통신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네비소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이 조업수역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오만에서는 혼획 어업 및 조업수역 위반의 사례가 있었으며(1996년 6월-2000년 7월), 뉴질랜드에서는 조업수역 위반 및 금지 어족을 어획한 사례가 있었다(2001년 5월-7월).

이와 같은 연안국 EEZ 수역내 무허가 조업 또는 법규위반조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례는 정부와 업계의 각별한 노력이 없는 한 앞으로도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원양어선이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 어류의 이동을 따라 그 공해에 바로 인접한 연안국의 수역을 허가 없이 침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와 관련 연안국으로부터 조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금지어종 및 금지수역 조업, VMS 미작동, 읍저버 승선시 비협조 등 각종 조업활동 관련 의무 불이행과 입어료 미납 등 당해 연안국의 수산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의 IUU어업에 해당하는 조업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 들어 참치어업에서는 특기할만한 불법어업사례가 없으나, 대서양트롤의 경우에는 조업수역 위반사례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뉴질랜드 수역의 경우 입항시 연안국의 검색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어선들의 금

지어종 어획등 불법 어업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 향후에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지역수산기구가 있는 경우에도 불법어업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의 경우가 있다. 첫째는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내에서 회원국 어선이 지역수산기구가 결정한 보존조치를 위반한 경우이다. 둘째는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비 회원국인 경우에도 그 비회원국이 스스로 약속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우리나라 원양 어선들의 경우는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내에서 불법어업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향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지역수산기구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중부베링해명태보존관리협약(CBSPC) 등이 정한 각종 결의사항의 미이행, 쿼터 미준수, 금어기 및 금어수역 조업 등은 바로 불법어업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에 있어서 불법어업의 유형은 첫째, 연안국 EEZ내에서의 연안국 관련법규 위반 다음으로 지역수산기구 및 공해상에서의 국제적으로 규정된 사항 위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 비보고(Unreported) 어업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들이 외국의 EEZ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업활동 및 조업실적을 해당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일어 협상에서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비보고어업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수역에서의 트롤어업의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뉴질랜드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2001년 6월). 이러한 비보고어업은 특히 트롤어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 흐름에 따라 남태평양 연안국들도 외국 어선의 참치 조업보고사항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한편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비보고 어업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양어선들의 그러한 비보고 사례가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으나, 지역수산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의 비보고 사례의 발생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수산기구가 요구하는 조업 및 어획실적의 기일내 미제출은 물론 자료의 부정확 및 실제조업과의 차이도 비보고에 해당됨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다. 비규제(Unregulated)어업

우리나라 어선이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에서 일반 해양법상 해양생물자원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조업한 경우나 또는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지역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동 기구의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하는 조업이 비규제어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관련한 비규제어업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지역수산기구가 없는 수역의 경우나 또는 지역수산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고찰하여야 한다.

남동대서양과 중서부태평양은 최근까지 지역수산기구가 없었으나, 최근에 지역수산기구 설립을 위한 협약이 채택되었다.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는 2001년 4월 20일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의 채택과정에서 우리나라,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나미비아 등 13여 국가들이 참여하였다.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은 2000년 9월 중서부 태평양의 참치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내용이 너무나 연안국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로서는 비규제어업의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태로 이 수산기구의 보존조치에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원양어업의 IUU어업 사례

1996년부터 2002년 6월까지의 원양어업관련 IUU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연간 약 10여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 기간중 1997년의 경우는 겨우 2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의 경우는 30여건에 달하기도 하였다.

<표 4-3> 행정처분규칙에 의한 원양어업관련 IUU어업에 대한 조치내역

년도	IUU어업의 유형				어업종류별 건수	처분내용(건수)
	소계	불법	비보고	비규제		
1996	18	15	3	-	북양트롤: 8 오징어채낚기: 6 해외트롤: 4	어업정지: 15 1차경고: 3
1997	2	2	-	-	오징어채낚기: 2	허가취소: 1 어업정지: 1
1998	14	14	-	-	참치연승: 2 오징어채낚기: 8 해외트롤: 2 붕수망: 2	허가취소: 6 어업정지: 2 1차경고: 6
1999	5	5	-	-	오징어채낚기: 3 붕수망: 2	허가취소: 2 1차경고: 3
2000	15	15	-	-	북양트롤: 9 오징어채낚기: 2 해외트롤: 3 외줄낚시: 1	어업정지: 15
2001	30	30	-	-	참치연승: 4 오징어채낚기: 7 북양트롤: 14 해외트롤: 5	허가취소: 7 어업정지: 12 1차경고: 11
2002	9	9	-	-	북양트롤: 2 오징어채낚기: 2 해외트롤: 3 외줄낚시: 2	허가취소: 1 어업정지: 8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한편 동 기간동안의 총 IUU어업 발생건수는 총 93건으로 이중 비보고어업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어업에 해당하였다. 어업종류별로는 북양트롤이 33건, 오징어채낚기 30, 해외트롤이 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참치연승 6건, 붕수망 4건, 외줄낚시 3건 순이었다. 이러한 IUU어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어업정지가 53건으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다음으로 1차경고 23건, 허가취소 17건 등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원양어업에 대한 IUU어업의 경우,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전반에 대한 자료수집에 한계로 인하여 러시아수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러 양국간의 어업관계는 '91.9.16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이래 그 동안 10여 차례의 어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산분야에서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조업하는 러시아 수역은 오호츠크해, 베링해, 연해주수역, 남쿠릴 수역으로서 명태, 대구, 청어, 오징어, 꽂치 등을 어획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 수역에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IUU어업의 실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IUU어업 분류에 따른 러시아수역에서의 IUU어업 실태
(단위 :건, \$)

구 분	합 계	불법어업	비보고	비규제	
합계	건	133	122	11	-
	벌금 등	3,671,253	3,370,078	301,175	-
1996	건	45	37	8	-
	벌금 등	237,222	177,720	59,502	-
1997	건	8	8	-	-
	벌금 등	27,959	27,959	-	-
1998	건	20	18	2	-
	벌금 등	185,434	159,146	26,288	-
1999	건	39	38	1	-
	벌금 등	302,775	287,390	15,385	-
2000	건	9	9	-	-
	벌금 등	2,848,073	2,848,073	-	-
2001	건	12	12	-	-
	벌금 등	69,790	69,790	-	-

과거 6년간 총 발생건수는 133건(벌금 \$ 3,3671,253)으로 불법어업이 12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를 각 연도별로 그 위반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5> 각 연도별 러시아수역에서의 IUU어업 실태

◎ 1996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허가외 어종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 관련문제	기 타	비 고
건 수	45	-	25	8	-	12	25척
벌금 등	237,222	-	113,918	59,502	-	63,802	

기타 : 어체측정 기구불량, 허가장 미변경, 선명 미변경

◎ 1997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허가외 어종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 관련문제	기 타	비 고
건 수	8	4	2	-	-	2	31척
벌금 등	27,959	10,845	7,499	-	-	9,615	

기타 : 어창용적도 미비, 조업일지 기재 위반

◎ 1998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허가외 어종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 관련문제	기 타	비 고
건 수	20	-	2	2	4	11	29척
벌금 등	185,434	-	13,223	26,288	35,770	110,153	

기타 : 저층조업, 용적과 선박도면 불일치, 읍저버지시 미이행, 용적차이 등

제4장 우리나라의 IUU어업 실태 분석

◎ 1999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허가외 어종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관련문제	조업수역 위반	기 타	비 고
건 수	39	12	7	1	1	3	12	27
벌금 등	302,775	48,309	24,136	15,385	15,385	494,522	150,038	

기타 : Check point 미신고, 용적과 선박도면 불일치, 읍저버지시 미이행, 용적차이, 해상오물투기 등

◎ 2000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허가외 어종혼획	혼획율 위반	어획량 허위보고	조업일지 관련문제	조업수역 위반	기 타	비 고
건 수	9	2	-	-	-	-	7	31
벌금 등	2,848,073	6117	-	-	-	-	2,841,956	

기타 : 허가장 원본 미소지, 허가장 기재사항 미비, 선내폐기물 처리, 체크포인트 통과 문제

◎ 2001년도

(단위 : 건, \$)

구 분	계	불법폐기물 투하	체크포인트 미통과	조업수역 위반	조업일지 관련문제	어획량 허위보고	기 타	비 고
건 수	12	2	8	2	-	-	6	30척
벌금 등	69,790	6,117	1,411	11,206	2,292	-	54,881	

제2절 연근해어업

1. 연근해어업의 실태

어장은 어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그 풍토에 따라 경영성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현행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어장의 횡적경계와 종적경계를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 근해어업은 전국 또는 몇 개 시·도에 걸쳐 있고, 연안어업은 시·도 또는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인 종적경계 개념에서는 근해어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나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어 이론적으로는 연안어업이 근해어업보다 더 넓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근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와 주요어종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6> 연근해어업의 어업종류(유형)

구분	어업종류
근해어업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동해구기선저인망, 중형기선저인망(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쌍끌이), 대형트롤, 동해구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 근해유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잠수기, 근해통발, 근해형망, 근해연승
연안어업	연안유자망, 연안안강망, 연안형망, 연안선망, 연안연승, 연안채낚기, 연안통발, 연안들망,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복합, 구획어업(정치성), 구획어업(이동성), 정치망, 연안기타

<표 4-7>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주요어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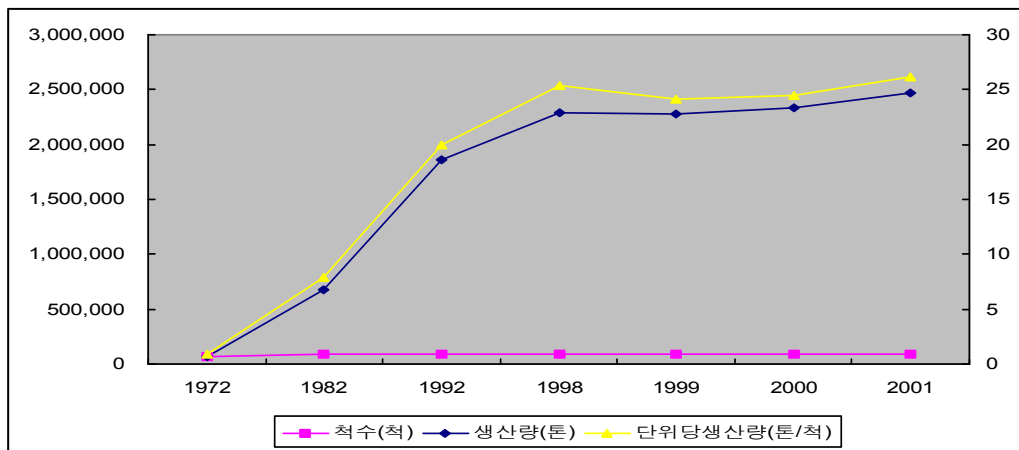
지역	주요어종
동해	멸치, 정어리, 꽁치, 방어, 쥐치, 오징어, 대구, 명태, 도루묵, 왕게, 털게, 철모새우, 소라, 전복 등
서해	조기, 갈치, 고등어, 강달이, 홍어, 바지락, 대합, 전복, 굴, 대하, 젓새우, 꽃게, 미역, 다시마 등
남해	멸치, 고등어, 전갱이, 삼치, 방어, 갈치, 봉장어, 굴, 홍합, 바지락, 소라, 복어, 대합, 문어, 꼴뚜기, 해삼, 성게, 우렁챙이, 김, 미역, 우뚝가사리 등

한편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와 생산량의 추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표 4-8> 연근해 어선세력 및 생산량

년도	척수(척)	톤수(톤)	척당 평균 톤수(톤/척)	생산량(톤)
1972	67,224	291,953	4.34	62,940
1982	85,832	514,638	6.00	673,668
1992	93,376	550,914	5.90	1,863,295
1998	90,452	654,847	7.24	2,293,638
1999	94,302	658,166	6.98	2,280,020
2000	95,355	594,214	6.23	2,329,483
2001	94,428	597,326	6.33	2,468,309

어선척수의 경우 2001년말 현재 총 94,428척에 총톤수는 597,326톤이다. 한편 최근들어 어선의 척수에는 별 변동은 없으나, 총톤수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인근 국가(일본, 중국)와의 어업협정 등에 따른 감척사업에 기인한다. 반면 생산량에 있어서는 어선의 톤당 생산능력 수준의 향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4-2] 연근해어업의 어선세력 및 생산 추이

우리나라의 연근해 수역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어선은 한·일/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이들 국가의 어선도 동시에 조업을 하고 있다.

일본어선의 경우, 1999년 1월 22일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은 매년 배타적경제수역체제에 의한 상호 입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어선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2000년도 조업실적은 1999년 1,590척보다 늘어난 4,364척으로서 274% 증가하였다. 대중형선망, 이서저인망어업 등 비교적 대형선들은 제주도 주변해역(113, 234, 243, 244, 257해구 등 주로 제주 동부 및 남부해역)에서 총어획량의 67.2%를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망어업은 제주도 주변수역에서만 3,936톤을 어획, 선망업종 전체어획량의 67.7%, 전업종 어획량의 53.9%를 어획하였고, 동해 남부 경계선 주변인 93, 94, 95해구 및 남해동부의 100해구는 예인조어선이 주로 조업하였으나, 2,216일의 많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72.8톤으로 저조하게 나타났다.²⁵⁾

중국의 경우, 2001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이 발효하기 이전은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연근해수역의 진출이 급증해, 연간 총 17,572척이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전인 2001년도 중국어선의 우리측 수역 내에서의 불법조업 나포건수는 49건이었으나, 발효된 이후 12월까지 123건이었다. 우리나라 남해안 및 제주동방해역의 대마도까지는 한·일 어업협정선이 한·일 양측 중앙선으로 분리되어 중국어선이 무단 진입하는 불법조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어선의 입어 허가 후 조업은 106·111·112·224해구 등에서 11월~익년 2월까지 삼치·멸치·정어리·갈치(폴치포함) 등의 포획을 목적으로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승 및 채낚기어선과의 조업분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남부 및 서부해역은 한·중 어업협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측 어선과 중국어선의 주요 조업어장이었으나, 이 어장의 219·220·230·231·241해구는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인하여 한국측 과도수역이 되었고, 향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관할해역으로 편입되는 해역이

25)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EEZ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 방안에 관한 연구, 2002. p.69.

다. 또한 제주도 서부해역은 한국측 과도수역과 영해기선이 인접(10~20Mile)하고 있다. 이 어장에는 조기·삼치·멸치·갈치 등 중층 및 표층어류들이 회유·서식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중국어선의 집단적이고 기습적인 불법조업이 예상된다.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선 부근 수역에서 중국어선과 우리나라 어선간의 격심한 조업분쟁과 더불어 우리어선의 어구피해는 물론 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황해의 한국측 과도수역을 제외한 중부해역은 중국어선의 주조업지로 삼았던 어청도 및 격렬비열도 부근어장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편입됨으로써 더이상 중국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서해특정해역 주변의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 160·170·180해구 및 서해특정해역 143·150해구의 회유성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으로 중국어선이 몰려올 것이 예상되며, 불법침범조업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⁶⁾

2. 연근해어업에 있어서의 IUU어업 개념

원양어업과 마찬가지로 연근해상에서의 IUU어업의 기본개념은 동일하다. 즉 IUU어업은 불법어업, 비보고, 비규제어업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연근해상에서는 IUU어업의 대부분은 불법어업이므로 연근해어업에서는 불법어업을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1990년 8월 1일(법률 제4252호)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불법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말한다. 여기서 부적법 또는 위법한 어업이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및 선박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을 위시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업자원보호법,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26) 전게서, pp.69~70

3. 연근해에서의 IUU어업 사례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은 단지 원양어업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EEZ내에서 이루어지는 IUU어업도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중에서 IUU어업규제 국제행동계획의 규범과 저촉되는 어업의 문제점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중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어업이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1970년대 후반이후 단속건수로 연 3000건의 불법어업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은 크게 어업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하거나 허가나 면허는 있으나 허가 또는 면허받은 사항 및 조건과는 다른 어업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가장 성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같이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어업으로 조업하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사항과 달리 어업을 변경하여 조업하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어선이 허가사항과 달리하여 조업하는 어구제한 위반, 어업을 변경하여 조업하는 업종위반, 허가이외의 장소에서 조업하는 조업구역 위반, 금어기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조업기간 위반, 허가받은 어구를 변형하거나 또는 허가이외의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구제한 위반, 허가할 당시에 부여된 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제한 및 조건 위반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이러한 불법어업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수산자원의 공유 재산적 성격, 전반적인 어업생산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보전하려는 동기, 수산관련 법규와 제도의 현실과의 괴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표 4-9> 유형별 IUU어업 사례

유형	업종 및 위반사례	
무허가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톤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업 ○ 이동성 구획어업 중 5톤 이상 형망어업, 새우조망어업 ○ 8톤 이상의 연안새우조망어업 	
허가어업	업종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개관 사용 조업 ○ 연안자망 또는 연수어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중형기선저인망 조업 ○ 쌍끌이기선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선미 트롤어업 ○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저인망조업
	조업구역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중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승인받은 구역이외의 장소에서의 조업 ○ 연안어선이 허가된 구역 이외의 조업(선인망, 조망, 양조망 등) ○ 대형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트롤 포함)의 금지구역 위반조업 ○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월선조업(제1구에서 제2구로) ○ 대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불빛을 이용한 제주도 연안조업 ○ 소형선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정치망 보호구역내 조업 ○ 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인천·경기·충남·전북 허가)이 경남·전남에서 조업 ○ 통발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서해특정해역에서 조업 ○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허가된 구역 이외에서의 조업
	조업기간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멸치포획기간 위반 ○ 새우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조업기간 위반 ○ 이동성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기간조업 위반
	어구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유자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고정자망어선이 고정자망 사용, 고정자망어선이 유자망 사용 ○ 연안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새우포획어구(새우조망형태) 부착 ○ 망목제한 위반 및 삼중망 사용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오징어채낚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로한계선 및 조업자제선 월선 조업 ○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형망어선의 야간조업 ○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어구통수 초과 ○ 형망어업의 콤프레샤와 해수펌프를 이용한 변형어업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망의 자연산 우럭 치어 어획·가두리 양식자에게 판매 ○ 체험어장 등 레저를 빙자한 일부 다이버들의 자원 남획 ○ 대형트롤어선이 오징어채낚기어선과 공조 조업

정부(해양수산부) 주도하의 연근해불법어업의 근절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자의 불법어업 포기 및 합법어업으로의 전업 등 전국적으로 불법어업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선단을 구성한 조직적인 불법조업과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 납치, 공갈협박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례도 있다. 특히 기선권현망, 대형트롤 등 일부 허가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으로 지역간, 업종간 조업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일선기관장은 어업

인과 마찰 및 집단시위 등을 우려하여 불법어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단속을 회피하고 합법어업인들도 불법어업을 방관하거나 신고를 기피하기도 한다.

인접국 어선의 우리나라 조업구역 침범의 경우, 일본어선의 수역침범조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침범조업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인접국 주변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위반조업의 경우, 서일본수역이나 중국수역에서의 위반조업은 격감하거나 감소추세에 있다.

<표 4-10> 인접국 어선의 우리나라 수역 침범조업 동향

구 분	내 용
일본어선	소형 연승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에 입어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업하거나 또는 입어가 허가된 어선이 조업조건 위반 조업이 발생하나 극감하고 있는 추세
중국어선	서해의 백령도, 격렬비열도, 고군산군도, 남해의 흑산도, 제주도, 거문도 근해 영해외측에서 집단조업하며, 야간 또는 기상악화시에 영해 또는 서해특정해역을 침범하여 조업 등 영해 침범조업이 증가추세

또한 육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어업 조장 및 방치 관련 사항으로 일부 FRP전문조선소에서 불법어선의 건조 개연성이 높으며, 삼중자망은 선구점 또는 제작소에서 완성품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또는 어업인이 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제작하고 있다. 또 소형기저어구는 어업인들이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여 은밀한 장소에서 제작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획물 자유판매에 따라 불법어획물의 거래가 용이하고 또한 일부 수협에서의 위판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불법어획물의 위판 및 판매가 묵인되는 경우도 있다.

<표 4-11> 불법어업의 해역별 동향

해역	불법어업 동향
동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등 무허가어업은 근절되었으나, 일부 허가어업의 조업구역 위반 등 경미한 위반 여전 · 경남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경북도계 월선조업 및 대형트롤·대형선망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연안어업인 및 오징어채낚기 업계와 마찰 · 무허가 소형기저는 완전 정비되었으나, 연안어선의 삼중자망 사용과 동해구트roller선의 금지구역 위반은 여전 · 일부 대형트롤·대형기저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수역 조업금지규정 위반한 조업
서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경기지역의 소형기저는 근절되었으나, 서해특정지역 무단 진입, 조업자제선 월선조업 등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위반은 지속되고 있음 · 경남, 전남지역 불법어선들의 서해중부해역(어청도, 격렬비열도 근해) 원정조업이 지속되고 있음 · 군산, 장항지역은 불법어선이 감소되지 않고 지능화·악질화되고 있음 · 충남, 전북 등 중부해역은 8톤 미만의 소형기저는 감소추세이나, 대형불법어선들이 조직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경남, 전남지역 불법어선들의 원정조업도 계속되고 있음 · 군산, 장항지역 불법어선들은 10~20여척으로 선단을 편성, 조직적으로 불법어업을 하고 어업지도선이 단속할 경우 해상집단시위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음 · 경남지역 통발어선이 9~10월에 서해특정해역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불법으로 조업함으로써 지역어업인과 분쟁 초래 · 무허가 잠수기·형망어선들이 고군산도 일대에서 종묘용 키조개를 채취하거나 일부 자망어선들이 삼중자망을 이용하여 대하 포획 · 타지역 무허가 중·소형기저가 어청도·고군산도 주변수역에 원정조업하거나 지역어선들의 무허가 새우조망으로 불법어업
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지역 일부 불법어선들은 통발, 채낚기 등으로 전업하고 잔여 불법어선들도 출어를 자제하며 관망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대포지역의 소형기저는 감소되지 않고 있음 · 제주지역은 시·도, 시·군의 어민간의 적극 협조로 어업질서가 정착되고 있고, 타시·도 어선의 불법조업도 관계기관의 협조로 감소추세에 있음 · 경남·전남지역은 전반적으로 불법어선이 감소하고 있으나, 경남 통영, 전남여수, 여천, 고흥지역 소형기선저인망은 여전하고 20톤 이상 대형불법어선의 서해중부 및 동중국해 원정조업도 지속되고 있음 · 제주는 자체 불법어선은 없으나, 인근지역 불법어선들이 야간 또는 악천후를 이용하여 불법조업하고 있음(주로 삼중자망어업) · 경남 홍도, 국도, 거문도, 백도 등 남해안 일대에서 연중 소형기저들이 야간 및 악천후를 이용하여 집단으로 불법조업

이상과 같은 각종 불법어업에 대한 과거 6년간의 단속실적을 보면, 매년 3천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시·도 단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단속 되었으나, 근래에는 해경청과 해양수산부로 그 중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4-12> 불법어업의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합계	3,959	3,126	3,443	3,157	3,277	3,161	3,451
해수부	95	937	942	725	590	502	417
해경청	406	234	234	494	850	1112	1152
시·도	3458	1955	2267	1938	1837	1547	1882

자료 : 해양수산부

최근 들어 중국어선의 한국측 수역의 침범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1995년에는 45건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말 현재 약 4배가 증가한 174건에 달하고 있다.

<표 4-13> 한국측 수역을 침범 조업한 외국어선 나포상황

(단위 : 건)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중국어선	계	45	45	39	39	80	62	174
	영해	45	45	39	31	60	34	34
침범수역	EEZ	-	-	-	8	20	28	140
	계	1	-	-	-	4	1	3
일본어선	영해	1	-	-	-	-	-	-
	EEZ	-	-	-	-	4	1	3

자료 : 해양수산부

제5장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상황 분석

제1절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내용 분석

1. 내용 체계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은 서론(I (1.2)), IUU어업 및 국제행동계획의 성격과 범위(II(3~7)), 목표 및 원칙(III(8~9)),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이행조치(III(10~84)),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III(85~86)), 보고(III(87)), FAO의 역할(III(88~93)) 등 모두 7개 부분 93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각국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행동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① 모든 국가의 책임 ② 기국의 책임 ③ 연안국 조치 ④ 항구국 조치²⁷⁾ ⑤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관련조치 ⑥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1>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내용 체계

주요 내용	구 성	비고
서론	IUU 국제행동계획 I (1.2)	
IUU어업 및 국제행동계획의 성격과 범위	IUU 국제행동계획 II (3~7)	
목표 및 원칙	IUU 국제행동계획 III(8~9)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이행조치	IUU 국제행동계획 III(10~84)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IUU 국제행동계획 III(85~86)	
보고	IUU 국제행동계획 III(87)	
FAO의 역할	IUU 국제행동계획 III(88~93)	
7개 부분	93개 조문	

27) 「port state measures」를 ‘항만국 조치’로 일부 자료들에서 번역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항구국 조치’로 번역으로 사용하였음을 밝힘

2. 내용 분석

본 절에서는 동 행동계획의 7개 부문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을 분석하
되, 각국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IUU어업방지를 위한 이행조치(제10조~84
조)”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격과 범위

IUU어업의 정의와 IPOA(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이행
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 성격이며,²⁸⁾ 책임수산업행동규범 제2조 d항²⁹⁾에 따
른 행동규범의 범위내에서 작성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규범 제2조 d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행동계획이 다른 강행
또는 자발적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또
는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이를 내부적으로 도입할 경우 강제성을 떨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는 협약수역내 보존관리조치수립에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기에서는 이 행동계획이 행동규범을 이행하
기 위한 모든 국가들간의 또 하나의 약속이라 규정하고 있다(제7조).

28) 제4조. The IPOA is voluntary. It has been elabora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s envisaged by Article 2 (d)

29) 책임수산업행동규범 제2조 d항은 동 규범의 목적중의 하나로서 “국제적 협정과 구속력
이 있거나 자율적인 기타 법적 협정 등의 마련 및 이행에 적절하게 사용될 기준 제
공”을 제시하고 있음

<표 5-2>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용어의 정의(제6조)

용 어	정 의	비 고
국 가	관련 권한 범위내에서 지역경제통합조직 포함	(a)
지 역	적절한 경우 소지역 포함	(b)
지역수산관리기구	정부간 수산기구 또는 적절한 경우 어업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할 권한을 가진 약정 포함	(c)
보존관리조치	국제법의 관련규칙과 일치하여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해양생물자원의 중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	(d)
1982 유엔협약	1982. 12. 10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	(e)
1993 FAO 이행협정	1993. 11. 24 FAO 총회에서 승인된 공해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이행증진협정	(f)
1995 유엔어족협정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1982 12. 10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의 이행협정	(g)
행 동 규 범	FAO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	(h)

나. 목표 및 원칙

IPOA의 목표는 제8조에 모든 국가 및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수산관리 기구에게 포괄적/효과적/투명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³⁰⁾

IPOA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는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6개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되었고, 행동규범 제5조³¹⁾에 의한 개발도상국가들의 특별 필

30)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제8조 참조

31) FAO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 제5조(개발도상국의 특별요구사항)

- 5.1 동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의 권고를 이행할 개발도상국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함
- 5.2 동 규범의 목적달성과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관련 정부간 및 비정부간 기구, 재정기관은 개도국의 특수사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고려를 하여야 함. 이에는 특별히 최저개발도상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함. 국가/정부/비정부 관련기구/재정기관은 특별히 재정/기술의 지원/기술이전/훈련/과학 협력/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공해어업으로의 접근/참여를 확장하는 분야에 있어 그러한 개도국들의 필요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

요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6가지의 원칙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와 조정이다. IPOA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국가/지역수산물관리기구/FAO 등 법세계적 기구/업계/어업공동체/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완전한 참여하에 상호간에 밀접하고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동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해서는 어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단계적 이행이다.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이 IPO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의 행동계획 그리고 지역적/범세계적인 이행조치가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 국제행동 계획의 이행을 가장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포괄적/종합적 접근이다. 여기에서는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는 항구국 조치/연안국 조치/시장관련 조치/자국민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기국의 우선적 책임을 설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관할권을 사용하는 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보존의 원칙이다.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어족자원의 보존/장기 지속적 이용/환경 보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투명성의 원칙이다. IPOA는 행동규범 제6.13조³²⁾에 따라서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차별의 원칙이다. IPOA는 어떤 국가/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 없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매우 포괄적이며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32) 행동규범 제6.13조는 “국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시급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적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5-3> IUU어업방지를 위한 목표 및 원칙

구분	주요내용	
목표	모든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게 포괄/효과/투명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는 것	
원칙	참여와 조정	국가/지역수산물관리기구/FAO 등 범세계적 기구/업계/어업공동체/비정부간기구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하에 상호간 밀접하고 효과적인 조정이 필요
	단계적 이행	모든 국가의 행동계획 그리고 지역적/범세계적인 이행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장 빠르게 추진
	포괄/종합적 접근	모든 국가는 항구국 조치/연안국 조치/시장관련 조치 및 자국민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기국의 우선적 책임을 설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관할권을 사용하는 조치 규정 및 시행
	보존의 원칙	어족자원의 보존/장기 지속적 이용/환경 보호와 일치
	투명성의 원칙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
	무차별의 원칙	어떤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없이 개발 및 적용

다.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이행조치

행동계획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모든 국가의 책임, 기국의 책임, 연안국 조치, 항구국 조치,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관련조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국가가 취할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문별 동 행동계획 작성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완하여 언급하면서 각 부문별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모든 국가의 책임

호주 시드니(00.5.15~19)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관한 전문가 회

의(Expert Consulta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가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목적은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 예비초안을 작성하여 채택하는 것이었으며, 이중에서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사항 관련 시드니 초안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는데 우선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가는 유엔해양법협약, 유엔공해어족자원보존관리협정, 편의치적선 금지협정의 비준, 수락 또는 가입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각 국가의 법률은 전자적인 증거 및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증거의 표준과 인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적인 증거란 IUU어업자를 처벌할 때에 그 증거로서 첨단 전자장비에 의한 어선의 위치 및 조업량 확인 등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각 국가는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IUU어업을 방지하고, IUU어업자가 IUU어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에 충분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넷째, 각 국가는 어업활동의 시작부터 양육지점을 통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 (MCS)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국으로부터 어업 허가를 받은 사람, 선박, 회사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어선들이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표준과 일치한 선박감시장치(VMS: Vessel Monitoring System)를 장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국가는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MCS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을 훈련시키고,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각 국가는 또한 국제행동계획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별 행동계획을 수립, 이행 및 감시하여야 한다. 각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하고,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직접 협력하여야 한다.

시드니 초안은 모든 국가가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된 사항을 공통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기국, 항구국, 연안국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장관련조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조치 등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1) 국제 제도들

모든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책임으로서 이 행동계획은 우선 그동안 어업관련 국제규범 등에 대해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이들 국제문서에 비준을 하지 않는 국가도 이들 제도들과 불일치한 방법으로 행동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동 국제행동계획의 제10조에 1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해양법협약(82)의 관련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 유엔해양법협약(82)/유엔공해어족협정(95)/FAO 이행협정(93)을 비준/수락/가입하도록 장려, 국가는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IPOA는 이들 제도들의 당사국에 대하여 유엔공해어족협정(95)/FAO 이행협정(93)에 포함된 의무를 대체하지 않음, 국가는 행동규범과 이와 연관된 국제행동계획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관련지역수산물기구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공해에서 조업국 국가는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국민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유엔해양법협약(82) 제7부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함 등이다.

<표 5-4> 모든 국가들의 국제제도 적용 문제

조 항	주 요 내 용
제10조	유엔해양법협약(82)의 관련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
제11조	유엔해양법협약(82)/유엔공해어족협정(95)/FAO 이행협정(93)을 비준/수락/가입하도록 장려. 이들 관련 국제제도들을 비준/수락/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들 제도들과 불일치한 방법으로 행동하여서는 아니됨.
제12조	국가는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제13조	동 국제행동계획은 이들 제도들의 당사국에 대하여 유엔공해어족협정(95)/FAO 이행협정(93)에 포함된 의무를 대체하지 않음
제14조	국가는 행동규범과 이와 연관된 국제행동계획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제15조	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공해에서 조업국 국가는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국민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유엔해양법협약(82) 제7부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함

*) 유엔해양법협약 제7편 공해(86조~120조) 참조

(2) 국가의 법규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법규로 규정할 사항이다.

(가) 법규

국가의 법규는 IUU어업의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하며(제16조), 전자적 증거(Electronic Evidences) 및 새로운 기술의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증거능력의 기준(Evidentiary Standards)과 증거력(Admissibility)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나)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이다. 각 국은 가능한 최대한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국민들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종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는 IUU어업에 연관된 선박의 운영자 또는 수혜적 소유자인 국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기국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어선에 국기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³³⁾

(다) 무국적 선박

무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일치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자국민 IUU어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라) 제재조치

자국민 IUU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IUU어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을 충분히 박탈할 만큼 엄격할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러한 것은 행정벌 제도에 기초한 민사제재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마) 비협력국

관련지역수산기구의 비협력국에 대하여는 비협력국의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경제적 유인

경제적 유인책으로서 IUU 어선에 대하여 보조금 등 각종지원을 막음으로서 IUU어업을 방지토록 하는 것이다.

33) 여기서 기국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라 함은 자국적 어선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은 벨리제, 온두라스 등 주요 편의치적국을 지칭한 것임

(사) 감시/통제/검색(MCS)

감시/통제/검색(MCS)의 경우는 동 행동계획 제24조에서 “국가는 다음을 포함하여 어업에 대하여 그 시작부터, 양육지점과 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검색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①어업허가제도의 개발 ②어선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기록의 유지 ③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 ④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따른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행 ⑤MCS 운영관련 훈련교육 실시 ⑥MCS 운영계획 수립실시 및 기금조성 ⑦MCS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참여 증진 ⑧국가의 사법체계내에서 MCS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증진 ⑨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MCS 데이터의 획득, 저장 및 분배를 위한 체계의 설립 및 유지 ⑩국별 승선검색체계 및 적절한 경우 국제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승선검색체제를 선장과 검색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되, 그러한 체계가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과 같은 일부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고, 그러한 체계가 오직 그들 협정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³⁴⁾

34) ⑩의 후단에 있는 유엔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에 규정된 승선검색체계가 오직 이 협정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은 협정의 성질상 당연하지만 문안작성과정에서 조업국의 요청에 따라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삽입된 것임

<표 5-5> 국가의 법규

구분	주요 내용	문서
법규	- IUU어업의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함 - 전자적 증거(電子的證據)/새로운 기술의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하여야 하며, 특히 이들 증거능력의 기준과 증거력 문제가 다루어져야 함	제16조 제17조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국민들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여야 함 - IUU어업에 연관된 선박의 운영자 또는 수혜적 소유자인 국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함 - 각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기국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어선에 국기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함	제18조 제19조
무적국 선박	- 국제법과 일치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	
제재 조치	- 자국민의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방지·근절하고 위반자들로부터 위반을 통한 이익을 박탈할 만큼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이러한 것은 행정벌 제도에 기초한 민사제재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음	제21조
비협력국 경제적 유인	- 비협력국의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일치한 모든 조치 강구 - IUU 어선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지원 회피	제22조 제23조
감시/통제/검색(MCS)	- 국가는 다음을 포함하여 어업에 대하여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 ① 어업허가제도의 개발 ② 어선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기록의 유지 ③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 ④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표준에 따른 옵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 ⑤ MCS 운영 관련 훈련교육 실시 ⑥ MCS 운영계획수립실시 및 기금조성 ⑦ MCS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참여 증진 ⑧ 국가의 사법체계내에서 MCS 문제에 대한 지식/이해의 증진 ⑨ 보안성 요건 고려, MCS 데이터의 획득/저장/분배를 위한 체계의 설립/유지 ⑩ 국별 승선검색체계 및 적절한 경우 국제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승선검색체제를 선장과 검색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되, 동 체계가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과 같은 일부 국제협정에 규정되어 있고, 오직 그들 협정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됨을 주목	제24조

(3) 국가행동계획

각국은 IPOA의 채택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년이내에 IPOA의 목표를 더 성취하기 위해 국별 행동계획들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행동계획의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적절한 경우 또한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채택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행동계획 채택 후, 적어도 4년마다 모든 국가는 국가행동계획의 효과적인 전략을 살펴보고, 2년마다 책임있는 수산업행동규범에 대한 각국의 이행사항을 FAO에 보고할 의무를 고려하여 이들 계획의 이행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표 5-6> 국가행동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문서
3년이내 행동계획 개발/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IPOA의 채택 가능한 한 3년이내에 IPOA의 목표를 더 성취하기 위해 국별 행동계획들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함 - 행동계획의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이러한 계획들은 적절한 경우 또한 IUU어업 방지를 위해 관련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채택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함 	제25조
채택 4년후 전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한 국별행동계획의 채택 4년후에 국가는 계획의 경제적인 전략 확인 - 동 IPOA 제6부상에 FAO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계획의 이행을 재검토 하여야 함 	제26조
자국내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은 IUU어업 방지를 국가적인 노력이 자국 내부에서 조정되도록 하여야 함 	제27조

(4) 국가간 협력

모든 국가는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관련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다음 사항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록에 대하여 가능한 한 표준화된 형태로 자료와 정보를 교환 ②조업관련자료 및 정보 획득, 관리 및 입증에 협력 ③각각의 MCS 실시자 및 집행자로 하여금 IUU어업에 관한 수사에 협력하고 이를 목적으로 그러한 어업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도록 허용 ④IUU어업에 신속한 대처를 허용하는 협력적 체계 개발 ⑤국제협정의 체결 등 MCS에 있어서 협력 등이다.

또한 IPOA 제29조는 “자국의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관한 정보교환에 있어서 국가간 협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선적국은 1993 FAO이행협정에 따라서 적절한 경우 다른 국가 그리고 관련 지역적 또는 국제적 기구가 그에 따른 이유³⁵⁾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국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는 최초의 공식 접촉창구를 지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즉 제29조에서는 1993 FAO이행협정에 따라서 기국은 적절한 경우 다른 국가 그리고 관련 지역적 또는 국제적 기구가 자국의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관한 정보와 가능한 정도까지 그에 따른 이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0조에서는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국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는 최초의 공식 접촉창구를 지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31조에서는 기국은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적용 가능한 법률과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

35) 1993 FAO 이행협정 제VI조는 어선의 기록의 삭제이유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각 당사국이 FAO에 보고시 삭제이유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있음. ① 선주 또는 운영자가 어업허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② 이 협정조항 위반어선에 대한 어업허가의 철회 ③ 관련어선이 더이상 자국적 소유자가 없을 때 ④ 관련어선의 폐기(Scrapping), 취역해제(Decommissioning) 또는 실종되었을 때, ⑤ 기타 다른 이유

와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집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표 5-7> 국가간 협약

구 분	주 요 내 용	문서
관련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	-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기구와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협력하여야 함 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록에 대하여 가능한 한 표준화된 형태로 자료와 정보를 교환 ② 조업관련자료 및 정보 획득, 관리 및 입증에 협력 ③ 각각의 MCS 실시자 및 집행자로 하여금 IUU어업에 관한 수사에 협력하고 이를 목적으로 그러한 어업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도록 허용 ④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데 협력 ⑤ 정책조치들이 연관성 있도록 협력 ⑥ IUU어업 대처 협력체계 개발 ⑦ 국제협정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MCS에 있어서 협력	제28조
자국의 기록으로부터 삭제/허가 취소된 선박의 정보교환 국가간 협력	- 1993 FAO이행협정에 따라서 기국은 FAO/다른 국가/관련 지역적/국제적 기구가 자국의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관한 정보와 이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제29조
정보교환/협력의 접촉창구 지정/공개	- 정보의 교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국/지역/국제기구는 최초의 공식 접촉창구를 지정하고 공개하여야 함	제30조
보존관리조치를 위한 다국가와의 협정/약정체결 협력 등	- 기국은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적용 가능한 법률과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집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제31조

(5) 공개성 및 기술적 능력/자원

국가는 IUU어업의 상세내용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적용 가능한 보안성요구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널리 공개하여야 하며(제32조), 국가

는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특별기금의 설립을 포함하여 IPO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3조).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IPOA 이행능력부족으로 인한 선진국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5-8>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공개성 및 기술적 능력/자원

구 분	주 요 내 용	문서
공개성	- 국가는 IUU어업의 상세 내용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적용 가능한 보안성요구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널리 공개하여야 함	제32조
기술적 능력 및 자원	- 국가는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특별기금의 설립을 포함하여 IPO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33조

2) 기국의 책임

기국(旗國)이라 함은 어선에 국적을 부여한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적국(船籍國)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이 행동계획은 어선의 등록, 어선의 기록, 어업허가에 대한 기국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1) 어선의 등록

우선 기국은 어선의 등록에 앞서 자국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IUU어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제34조 및 제35조).

또한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하나 다음 두 가지의 예외를 설정하여 두고 있다(제36조). 첫째,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더이상 그 선박에 대하여 법적인, 수익적인,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또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둘째, 모든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기국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IUU어업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결정한 경우이다.

참고로 동 조항의 제정과정(제36조 예외 규정)에서 노르웨이는 IUU어업의 경력을 가진 어선에 대하여는 무조건 선적을 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외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일본이 동조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대로 예외조항이 유지되었다. 우리나라는 IUU어업은 어선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어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용자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행동계획 문안을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 선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이는 또한 중고선의 활용과도 관계가 있는데 중국은 외국으로부터 중고선(비록 IUU 전력을 가진 어선이라 할지라도)을 구입하여 원양어업에 활용하려는 의도이고, 일본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범위내에서 용선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제37조), 기국은 선박이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자원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의 비이행을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제38조).

또한 기국이 채택한 조치와 표준은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통일되어야 한다. 국가는 “flag hopping”, 즉,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적의 반복적인 잦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및 자국국적부여의 거절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9조).

기국은 자국의 관할 또는 공해에서 어업허가장을 선박에 제공할 준비 과정에 따라서 또는 기국의 통제하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이 발급하는 허가장에 따라서 어선등록의 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제41조).

<표 5-9>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어선의 등록

구 분	주 요 내 용	문서
IUU어업에 종사/지원 금지	- 국가는 자국 국적을 가진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제34조
IUU어업 종사 금지 보장 문제 확실하게 함	- 기국은 어선을 등록하기에 앞서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함	제35조
IUU전력어선 자국적 부여 회피 및 예외	-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함 - 예외 조항 ①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더 이상 그 선박에 대하여 법적/수익적/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또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② 모든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기국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IUU어업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결정한 경우	제36조
용선어선 IUU어업에 종사 않도록 보장	- 용선약정을 인정하는 기국/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용선약정에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그들 각각의 관할 범위내에서 용선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37조
자원보존관리조치 불이행목적의 국적 변경/동기부여 금지	- 선박이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자원보존관리조치/규정의 불이행 목적의 국적 변경 막아야 함 - 기국이 채택한 조치와 기준은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통일되어야 함	제38조
국적회피 목적의 반복적인 변경 예방을 위한 조치	-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을 회피/규정의 불이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국적의 반복적인 잦은 변경(Flag hopping)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자국국적부여의 거절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39조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 기능 상호 보장	- 비록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제40조
어선등록시 허가장/입어허가 발급 조건	- 기국은 어떤 어선을 자국에 등록시킬 때, 자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수역/공해에서의 어업 허가장을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관련 연안국이 그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를 발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함	제41조

(2) 어선의 기록

각 기국은 자국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어선에 대한 각 기국의 기록은 공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1993 FAO 이행협정³⁶⁾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①이전 선박의 이름 ②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③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④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⑤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의 그 선박에 의한 비이행 기록 ⑥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 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이다.

36) 1993년11월24일 FAO 총회에서 승인된 “공해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이행증진협정”

<표 5-10>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어선의 기록

구 분	주 요 내 용	문서
어선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국은 자국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어선에 대한 각 기국의 기록은 공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1993 FAO 이행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전 선박의 이름 ② 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③ 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④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⑤ 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의 그 선박에 의한 비이행 기록 ⑥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 ※ FAO 이행협정(93)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국은 제IV조에 의거 유지되어야 할 기록부에 기입한 어선에 대하여 FAO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어선의 이름, 등록번호, 종전에 사용했던 이름들(알려져 있는 경우), 등록항구 (b) 종전국적(있는 경우) (c) 국제 무선호출부호(있는 경우) (d) 선주(들)의 이름 및 주소 (e) 선박 건조의 장소 및 일시 (f) 어선의 종류 (g) 길이 제2항 각 당사국은, 가능한 정도까지 - 제IV조에 의거 유지되어야 할 기록을 기입한 어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FAO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 관리자(들)의 이름 및 주소(있는 경우) (b) 어업방식 (c) 선박의 길이 (d) 최대폭 (e) 총등록톤수 (f) 주기관 또는 기관들의 출력 	제42조
공해상 어선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국은 또한 공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의 기록에 대하여도 제34조의 정보의 포함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자국 국적을 가진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제43조

(3) 어업허가

국가는 공해에 관한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공해어업권)³⁷⁾ 및 제117조(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³⁸⁾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또는 국가 관할 수역에서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여 허가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선박도 어업을 허용하지 않도

37)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 : 모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국민으로 하여금 공해에서 어업에 종사하게 할 권리를 가진다. (a) 자국의 조약상의 의무, (b) 특히, 제63조2항과 제64조 내지 제67조에 규정된 연안국의 권리, 의무 및 이익 (c) 이 절의 규정

※ 제63조(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서식하거나 또는 배타적경제수역과 당해 수역밖에 접속한 수역에 동시에 서식하는 어족)

1. 동일어족 또는 이와 관련된 어종의 어족이 2개국 이상의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서식하는 경우 관련연안국들은 이 장의 다른 규정을 해함이 없이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조직이나 지역조직을 통하여 그 어족의 보존 및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동일어족 또는 이와 관련된 어종의 어족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그리고 당해 수역밖에 인접한 수역내에 동시에 서식하는 경우 연안국 및 인접수역내에서 그 어족을 어획하는 국가는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조직이나 지역조직을 통하여 인접수역내에서 상기 어족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4조(원양회귀성 어종)

1. 연안국과 소속국민이 제1부속서에 기재된 원양회귀성 어종을 어획하는 타국은 배타적경제수역 및 그 외측수역에 걸쳐 당해 어종의 보존을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적절한 국제조직이 없는 지역에서는 연안국 및 소속국민이 당해 지역에서 당해 어종을 어획하는 타국은 그 조직을 설립하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 제67조(강하성어종)

1. 강하성어종이 그 생활환경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역의 연안국은 당해 어종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유어종의 출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강하성어종의 어획은 배타적경제수역 외측한계내의 수역에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이 행하여지는 경우 이 조의 규정 및 배타적경제수역내 어획에 관한 이 협약의 기타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강하성어종이 종어로서 또는 성어로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회유하는 경우 어획을 포함한 당해 어종의 관리는 제1항의 국가와 다른 관련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그 협정은 당해 어종의 합리적 관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어종의 유지를 위해서 제1항의 국가의 책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38) 제117조(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 :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대하여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취함에 있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록 보장할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제44조).

기국은 선적을 부여한 자국 국적의 선박이 유효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며, 연안국이 선박에 대하여 어업허가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자국수역의 어떠한 어업도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발급된 어업허가장 없이는 조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제45조).

선박은 어업허가장을 선상에 비치하도록 요청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각국의 허가장에는 ①선명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②어업허가 수역, 범위와 기간 ③어종, 허가받은 어구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6조).

허가장이 발급된 조건들은 ①VMS ②어획보고조건(선박별 시간별 어획 및 노력 통계, 각 어기에 적합한 어종별 수, 순중량, 또는 총어획량, 보고된 어류 투기 통계가 어법에 적합한 노력 통계, 조업위치, 조업일시 및 조업활동에 관한 기타통계) ③전재가 허용된 경우 전재보고 및 다른 조건 ④오퍼버의 수행 사항 ⑤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 ⑥경계 및 제한수역과 관련한 이행을 보장할 항해장비 ⑦해사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규를 이행 ⑧어선의 표시 및 확인을 위한 FAO 표준상세 및 지침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서 어선에 표시(마찬가지로 어구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되어함) ⑨기국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수산업 약정을 이행 ⑩어디서나 가능하고 고유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확인번호를 가진 선박. 그런데 그 확인번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등록이나 이름의 변경에 관계없이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제47조).

기국은 자국의 어떠한 선박도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하거나 이들 선박들에 또는 이들 선박들로부터 전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다만 승선원의 안전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제48조). 동 조항의 단서조항은 문안작성시 승선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대표단이 발의하여 여타국의 반대없이 채택된 것이다.

또한 기국은 해상 전채에 관련된 모든 자국의 조업, 운반, 지원선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전채를 위한 사전 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가수산기관 또는 기타 지정된 기관에 ①해상에서 모든 어류전채의 일자 및 위치 ②전채된 어획물의 어종별, 포획수역별 중량 ③선명, 선박의 등록, 국적 및 전채와 관련된 선박들의 확인과 연관된 기타 정보 ④전채된 어획물의 양륙항 등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9조).

마지막으로 기국은 어획 및 전채보고로부터의 정보를 수역과 어종별로 누적하여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 지역, 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제50조).

<표 5-11>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어업허가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국제법 불일치 어선 불허용	- 국가는 공해에 관한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공해어업권) 및 제117조(자국민을 대상으로 공해생물자원보존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방법/국가 관할 수역에서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여 허가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선박도 어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보장 조치 채택하여야 함	제44조
허가장 소지	- 기국은 선적을 부여한 자국 국적의 선박이 유효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 연안국이 선박에 대하여 어업허가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자국수역의 어떠한 어업도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발급된 어업허가장 없이는 조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제45조
허가장 내용	- 선박은 어업허가장이 선상에 소지하도록 요청된 장소에서는 그 허가장을 소지하여야 함. 다음 사항 포함 ①선명/적절한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연인/법인의 이름 ②어업허가/수역/범위와 기간 ③어종/허가받은 어구/적절한 경우 다른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	제46조
필요시 허가장 발급 조건들	- 허가장이 발급된 조건들은 다음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음 ①VMS ②어획보고조건(선박별 시간별 어획 및 노력 통계, 각 어기에 적합한 어종별 수, 순증량, 또는 총어획량, 보고된 어류 투기 통계가 어법에 적합한 노력 통계, 조업위치, 조업일시 및 조업활동에 관한 기타통계) ③전재가 허용된 경우 전재 보고 및 다른 조건 ④옹저버의 수행사항 ⑤ 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 ⑥경계 및 제한수역과 관련한 이행을 보장할 항해장비 ⑦해사안전/해양환경의 보호, 그리고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규를 이행 ⑧어선의 표시/확인을 위한 FAO 표준상세/지침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서 어선에 표시(어구포함) ⑨기국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수산업 약정을 이행 ⑩어디서나 가능하고 고유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확인번호를 가진 선박(그 확인번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등록이나 이름의 변경에 관계없이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함)	제47조
재공급 /전재 비보장	- 기국은 자국의 어떠한 선박도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전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다만, 승선원의 안전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음)	제48조
해상 전재 관련	- 기국은 해상 전재에 관련된 모든 자국의 조업/운반/지원선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전재를 위한 사전 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가수산기관/기타 지정된 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 ①해상에서 모든 어류전재의 일자/위치 ②전재된 어획물의 어종별/포획수역별 중량 ③선명/선박의 등록/국적/전재와 관련된 선박들의 확인과 연관된 기타 정보 ④전재된 어획물의 양륙항	제49조
어획/ 전재 정보	- 기국은 어획/전재보고로부터의 정보를 수역/어종별로 누적하여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지역/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함	제50조

3) 연안국 조치

연안국의 조치는 2000. 5월에 작성된 시드니 예비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2000. 10월의 로마회의시 처음으로 EU에서 제기한 사항이다. 우리나라 등 조업국과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연안국의 조치가 이미 유엔해양법협약 및 이 행동계획 기국의 책임 등에 나타나 있어 불필요함을 주장하였으나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 행동계획의 작성원칙(종합적 접근) 및 IUU어업을 방지하는 데 있어 연안국의 조치가 중요함을 들어 이의 추가를 주장하여 채택된 것이다.

동 국제행동계획에 채택된 연안국의 조치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국의 EEZ내에서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EEZ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MCS(감시(Monitoring), 통제(Contro), 검색(Surveillance)) ②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정보의 교환 및 협력 ③어떠한 선박도 연안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증 없이 자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④해당선박이 선박의 기록사항을 기입한 경우에 한해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것을 보장 ⑤조업일지를 유지 ⑥연안국수역에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의 전채 및 가공이 연안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관리규정과 일치하여 행해짐을 보장 ⑦IUU어업을 예방,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자국수역의 입어를 규정 ⑧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자국수역입어 금지(단, 어선의 소유권 변경 경우 등 예외인정) 등이다.

연안국의 조치중 ⑧항의 규정은 외국수역에 입어코자 하는 우리나라 원양 어선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표 5-12>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연안국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문서
연안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과 일치하여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연안국이 국내법규 및 국제법과 일치하게 검토하여야 할 조치 중에는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EZ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MCS ② 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정보의 교환 및 협력 ③ 어떠한 선박도 연안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증 없이 자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④ 해당선박이 선박의 기록사항을 기입한 경우에 한해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것을 보장 ⑤ 조업일지의 유지 ⑥ 연안국수역에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을 전채 및 가공이 연안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관리규정과 일치하여 행해짐을 보장 ⑦ IUU어업을 예방, 방지 및 제거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자국수역의 입어를 규정 ⑧ 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자국수역입어 금지(단, 어선의 소유권 변경경우 등 예외인정) 	제51조

4) 항구국 조치

항구국 조치란 재급유, 재공급, 전채 및 양륙을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 또는 연안에서 떨어진 부두(offshore terminals)로 입항할 경우에는 항구국에 의한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항구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구국의 조치는 문안작성시 시장관련조치와 함께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으로 이 행동계획의 작성을 주도했던 호주, 미국 등과 조업국 및 라틴아메리카국간의 대립이 극심했다. 당초 시드니 예비초안에서 규정된 “어선의 항구 입항전 비(非)IUU어선 선언의무,” “어선의 비(非)IUU어선 입증부담

의무” 등이 삭제되는 등 대폭 변경이 된 부분이다.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 조치를 사용해야 한다. 항구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제52조).

항구접근이라 함은 자국의 법률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³⁹⁾, 다른 관련 국제법에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채급유, 재공급, 전채 및 양육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 또는 연안에서 떨어진 부두로 입항함을 의미한다(제53조).

우선 항구국은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항구로 입항하기를 원하는 어선 및 어업관련 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 그들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증의 사본, 조업여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제55조).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자국의 항구입항을 허용하였던 어느 선박이 IUU어업활동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Clear evidence)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항구국은 그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 양륙 또는 전채를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6조). 동조의 문안작성시 한국은 증거가 분명해야 함을 주장하여 채택된 것으로 IUU어업에 대한 항구국의 입증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항구국은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항구들은 검사를 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어선을 검사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항구국은 ①어선의 기국 및 확인 상세내용 ②선장 및 어로장의 이름, 국적 및 자격증 ③어구 ④원산지, 어종, 가공형태 및 어획량을 포

39) 유엔해양법협약(82) 제25조(연안국의 보호권) 2항 : 연안국 선박이 내수를 향하여 또는 내수 외측의 항만시설에 기항하고자 기항하는 경우에도 당해 선박이 내수로 들어가기 위하여 또는 항만시설에 기항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조건에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In the case of ships proceeding to internal waters of a call at a port facility outside internal waters, the coastal State also has the right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prevent any breach of the conditions to which admission of the those ships to internal waters of such a call is subject)

합한 선상 어획량 ⑤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 또는 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요구된 기타 정보 ⑥총양륙 및 전채량 등을 수집하여 기국에,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제58조).

또한 만일 검사도중에 그 선박이 항구국의 관할을 넘은 수역에서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항구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 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항구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9조).

다음으로 항구국의 의무로서 항구국은 통제관의 훈련, 기술적 지원, 자격요건과 일반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어업 및 관련활동에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적인 전략과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61조). 모든 국가는 양자간, 다자간 그리고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내에서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를 위한 일관성 있는 조치를 개발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항구국이 수집할 정보, 정보수집 절차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체제하에서 선박에 의한 침해혐의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제62조).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는 모든 국가들은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비당사국이면서 그 지역수산물기구의 비협력국이 그 기구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선은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정하에 항구국 조치의 개발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구국 조치는 그 확인된 선박의 어획량이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어획물의 양육과 전채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한 IUU 선박의 확인은 공정, 투명, 비차별적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제63조). 이 조항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비회원국에 대하여 항구국이 특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IUU 선박의 확인"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합의된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있어 비회원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항구국에서 어획물의 양륙 또는 전채의 금지 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5-13>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항구국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항구국 통제 조치	- IUU어업방지를 위해 어선의 항구국 통제조치를 사용해야 함 항구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투명/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져야 함	제52조
항구 접근	- 항구접근이라 함은 자국의 법률/유엔해양법협약(82) 제25조 제2항/다른 관련 국제법에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재급유/재공급/전재/양육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연안에서 떨어진 부두로 입항함을 의미함	제53조
불가항력	- 불가항력적 원인/위험 또는 위기에 처한 사람/선박/항공기에 원조를 주기 위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선박의 항구 접근이 허용	제54조
IUU 종사 확인	-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국가는 항구로 입항하기를 원하는 어선/어업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 보안성 유지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들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장의 사본/조업일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	제55조
IUU어업 규제 /통보	- 자국의 항구입항을 허용하였던 어느 선박이 IUU어업활동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항구국은 그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 양육 또는 전재를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문제를 해당 선박 기국 통보	제56조
공개/검사	- 국가는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항구들은 검사를 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제57조
정보 송부	- 어선을 검사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항구국은 다음정보를 수집하여 기국에,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에 송부하여야 함. ①어선의 기국 및 확인 상세내용 ②선장/어로장의 이름/국적/자격증 ③어구 ④원산지/어종/가공형태/어획량을 포함한 선상 어획량 ⑤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요구된 기타 정보 ⑥총양륙 및 전재량 등	제58조
IUU어업종사 어선 적절한 조치	- 만일 검사도중에 그 선박이 항구국의 관할을 넘은 수역에서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항구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 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함. 항구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제59조
보안성	- 제58조/제59조 적용시 국제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안성유지	제60조
항구국 의무	- 항구국은 통제관의 훈련/기술적 지원/자격요건과 일반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어업/관련활동에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적인 전략/절차를 수립/공개하여야 함	제61조

<표 계속>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기국의 책임중 항구국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항구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는 양자간/다자간 그리고 관련 지역수산기구내에서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의 일관성 있는 조치를 개발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 그러한 조치는 항구국이 수집할 정보/정보수집 절차 그리고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체제하에서 선박에 의한 침해혐의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함 	제62조
어획물 양육 및 전채 금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들은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의 비당사국이면서 그 지역 수산기구의 비협력국이 그 기구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선은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정하에 항구국 조치의 개발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한 항구국 조치는 그 확인된 선박의 어획량이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어획물의 양육과 전채를 금지시킬 수 있음 -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한 IUU 선박의 확인은 공정/투명/비차별적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제63조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는 관련정보의 유통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지역수산기구/국가들간의 항구국 통제에 관하여 협력을 증진시켜야 함 	제64조

5)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관련조치

시장관련조치라 함은 IUU어업에 의한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는 어획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을 지속적으로 교역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즉 WTO에 설정된 원칙,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관련조치는 특히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의해서 채택토록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위원회의 “어획증명제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교역정보제도”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동 시장관련조치(제65조~제76조)는 당초 시드니 예비초안이 대폭 후퇴한

것으로 제목에서도 “국제적으로 합의된(Internationally Agreed)”을 추가 삽입 하였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을 겪은 바 있는 멕시코, 일본 등이 일방적 조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주장한 것으로 본문에도 “일방적 교역관련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제66조 후단)”고 규정되어 있다.

세부적인 교역관련조치를 살펴보면,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고, 관련 국가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국이 다자간 합의된 무역 관련조치를 채택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교역조치에는 수출입 금지, 다자간 어획기록 및 증명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제66조).

다음으로 어류 및 수산제품의 국제교역에 관한 조치가 적절한 경우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일치함의 보장(제67조)과 IUU어업 어획물 및 제품의 국제적인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무역관련조치의 채택에 협력, 지역 관리기구의 다자간 무역관련조치는 특정 어류 및 어류제품의 유통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IUU어업을 장려하지 않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1982 유엔해양법 협약과 일치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협력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다(제68조).

IUU어업으로부터의 어류 및 어류제품의 교역을 감소시키거나 근절하기 위한 교역관련조치는 수출입 금지와 통제 이외에도 다자간 어획기록 및 증명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다자간 조치가 채택될 때 각 국가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해야 한다(제69조).

모든 국가는 어류 및 어류제품 유통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느 이해당사국에 의해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국가의 관할에서 불법적으로 어획된 어류 및 어류제품의 교역을 막는데 있어 어느 국가라도 지원하여야 한다(제70조~제72조).

모든 국가는 수입자, 전채자, 구매자, 소비자, 장비공급자, 은행가, 보험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 및 일반 대중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

박과 사업을 행하는 부정적 영향을 알도록 보장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자국의 어민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사업을 행하는 수입자, 전재자, 구매자, 소비자, 장비공급자, 은행가, 보험가 및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을 행하는 부정적 영향을 알도록 보장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제73조).

<표 5-14>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시장관련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적용/이행	- 어획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을 교역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 WTO에 의해 확립된 원칙/권리/의무와 일치하여 해석되고 적용, 공정/투명/무차별적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	제65조
교역관련 조치	-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IUU 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가 자국의 영토안에서 수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 지역수산물기구는 공정/투명/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어선의 확인 - 교역관련조치는 WTO 협정에서 정한 원칙/권리/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채택/이행되어야 하며 공정/투명/비차별적 방법으로 이행. 또한 IUU어업 방지를 위한 다른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고, 관련 국가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일방적 교역관련조치는 회피)	제66조
과학적 증거	- 국가는 어류/수산물제품의 국제교역에 관한 조치가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투명/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일치 보장	제67조
다자간 무역 관련 조치	- 국가들은 세계적/지역적 수산물관리기구 등을 통하여 특정 어족 및 어종에 대한 IUU어업 방지를 위하여 WTO 규정에 부합하는 무역관련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협력 - 지역관리기구의 다자간 무역관련조치는 특정어류/어류제품의 유통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IUU어업을 장려하지 않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유엔해양법협약(82)과 일치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협력/지원하기 위하여 사용	제68조

<표 계속>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시장관련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IUU 제품 수출입 금지	- IUU어업으로부터의 어류/어류제품의 교역을 감소/근절하기 위한 교역관련조치는 수출입 금지/통제와 이외에도 다자간 어획기록 및 증명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음. 그러한 다자간 조치가 채택될 때 각 국가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해야 함	제69조
교역 조치	- 특정 어족/어종에 대한 교역관련조치는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기를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함	제70조
투명성	- 국가는 어류/어류제품의 추적을 허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제71조
지원 /협력	- 특정 국가의 관할하에서 불법적으로 어획된 어류/어류제품의 교역을 막는데 있어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국가 지원하여야 함 - 지원은 양국에 의해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주어져야 하며, 지원을 요구하는 국가의 관할권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함	제72조
IUU어 업 방지 조치	- 국가는 선박 운영 관할하에 있는 국가/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든지 수입자/전재자/구매자/소비자/장비공급자/은행가/보험가/다른 서비스 공급자/일반 대중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거래하는 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시키고/사업 방지 조치 취해야 함 - IUU어업으로부터 유출된 어류 및 어류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드는 법규를 포함할 수 있음.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확인은 공정/투명/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73조
IUU어 업방지 조치/법 규제정	- 국가는 선박이 운영되는 관할하에 있는 국가/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든지 자국의 어민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사업을 행하는 수입자/전재자/구매자/소비자/장비공급자/은행가/보험가/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을 행하는 부정적 영향을 알도록 보장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사업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IUU어업으로부터 유출된 어류 및 어류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드는 법규를 포함할 수 있음.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확인은 공정/투명/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제74조
HS제도 도입	- 국가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류/어류제품에 대한 HS제도를 사용할 작업을 하여야 함	제75조
전자장 치개발	- 증명/기록등 필요사항들은 최대한 표준화/효율성을 보장하면서 기만의 기회를 줄이고 아울러 교역에 관한 불필요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전자장치가 최대한 개발되어야 함	제76조

6) 연구

FAO는 가능한 어족의 원산지 확인 및 가공제품의 어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적 그리고 다른 표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망 설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7) 지역수산물관리기구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출발점이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인 만큼 이 분야 또한 문안 작성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비회원국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 행동계획은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실시하는 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지역수산물기구의 비회원인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제79조)”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해어족에 대한 자원의 관리는 지역수산물기구에서 하도록 유엔해양법 협약 제118조(공해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 등 어업관련 여러 국제문건에서 확인되고 있다. 동 행동계획은 지역수산물기구 앞에 수식어로서 “관련(related)”이라는 용어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서 일본의 반대하에 채택된 “중서부태평양참치관리기구(WCPFC)”를 관련없는(irrelevant) 기구로 보고 이러한 기구의 협약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도를 포함한 것이다.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중 지역수산물관리기구 관련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①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적절히 제도적으로 강화 ②국제법과 일치한 이행조치 개발 ③의무적 보고를 위한 포괄적인 약정의 개발 및 이행

④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선박에 관한 정보의 교환체제를 설립하고 협력 ⑤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기록사항을 개발 및 유지 ⑥IUU어업을 감시하기 위한 교역정보를 추적하고 이용할 방법을 개발 ⑦MCS의 개발, 실시간 어획 및 선박감시체계, 다른 새로운 기술, 양륙의 감시, 항구통제, 그리고 전재의 검사 및 규정의 개발 ⑧승선 및 검색체제를 개발 ⑨옴저버 프로그램의 개발 ⑩적절한 경우 IPOA에 따른 시장관련조치 ⑪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의 정의 ⑫교육 및 일반대중 의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⑬행동계획들의 개발 ⑭회원국에 의해 합의된 경우 용선약정이 IUU어업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 약정의 검사 등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제80조).

이러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조치들은 향후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든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여 적기에, 적어도 매년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FAO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①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 있어서 IUU어업 활동의 정도, 범위 및 특징에 대한 평가 ②IUU어업방지조치의 상세내용 ③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의 기록 ④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기록 등을 이용할 수 있다(제81조).

또한 IUU어업과 관련하여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강화의 목표들은 ①내부적 목적과 그리고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의 조정을 위하여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결정 ②IUU어업과 관련한 정책의 최적이행을 위하여 의무규정, 기능, 자원, 정책결정, 보고 또는 정보의 필요사항 및 집행을 포함한 제도적인 체제를 강화 ③IUU어업과 관련하여 특히 정보, 집행 및 교역측면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제도적인 체제와의 조정을 정례화 ④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및 조치의 적시 및 효과적인 이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다(제82조).

다음으로 모든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해당 수산업에 진

정한 이해를 가진 비협력국이 이들 기구에 가입하여 그 기구의 작업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관련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기구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비협력국의 참가와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켜야 하며,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당사국 또는 협력국은 IPOA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비당사국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제83조).

어느 국가가 자국 어선 또는 자국의 국민이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할하는 어족자원에 영향을 주는 IUU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때, 그 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는 국가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만일 그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 기구의 회원들은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제84조).

따라서 IUU어업의 정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국이면서 비협력국은 이 행동계획에 의하여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가입에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취한 보존관리조치에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15>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역할

구분	주요내용	문서
이행/집행	- 국가는 어느 관련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자국이 구속되는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조치의 이행/집행을 보장	제78조
협력	- IUU어업방지를 위한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실시하는 조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비회원인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음	제79조
IUU어업방지조치	-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을 취할 수 있음. ① IUU어업방지를 위한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적절히 제도적으로 강화 ② 국제법과 일치한 이행조치 개발 ③ 의무적 보고를 위한 포괄적인 약정의 개발 및 이행 ④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선박에 관한 정보의 교환 체제를 설립하고 협력 ⑤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기록사항을 개발 및 유지 ⑥ IUU어업을 감시하기 위한 교역정보를 추적하고 이용할 방법을 개발 ⑦ MCS의 개발, 실시간 어획 및 선박감시체계, 다른 새로운 기술/양륙의 감시/항구통제, 그리고 전재의 검사/규정의 개발 ⑧ 승선 및 검색체제를 개발 ⑨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 ⑩ 적절한 경우 IPOA에 따른 시장관련조치 ⑪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의 정의 ⑫ 교육 및 일반 대중 의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⑬ 행동계획들의 개발 ⑭ 회원국에 의해 합의된 경우 용선약정이 IUU어업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 약정의 검사 등	제80조
정보추적, FAO이용	-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다음을 포함하여 IUU어업방지와 관련된 정보를 추적하여 적기에, 적어도 매년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FAO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 있어서 IUU어업 활동의 정도, 범위 및 특징에 대한 평가 ② IUU어업방지조치의 상세내용 ③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의 기록 ④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기록 등	제81조
제도/정책적목표	- IUU어업과 관련하여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있어 제도적/정책적 강화의 목표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함 ① 내부적 목적과 그리고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의 조정을 위하여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결정 ②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의 최적 이행을 위하여 의무규정, 기능, 자원, 정책결정, 보고 또는 정보의 필요사항 및 집행을 포함한 제도적인 체제를 강화 ③ IUU어업과 관련하여 특히 정보, 집행 및 교역측면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제도적인 체제와의 조정을 정례화 ④ 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및 조치의 적시 및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 등	제82조

<표 계속>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관계

구분	주요내용	문서
비협력국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해당 수산업에 진정한 이해를 가진 비협력국이 이들 기구에 가입하여 그 기구의 작업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함 -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역수산관리기구는 관련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기구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비협력국의 참가와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켜야 함 -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의 당사국 또는 협력국은 IPOA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시 비당사국을 지원하지 말아야 함 	제83조
주의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국가가 자국 어선 또는 자국의 국민이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가 관할하는 어족자원에 영향을 주는 IUU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때, 그 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는 국가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킴 - 만일 그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그 기구의 회원들은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 	제84조

라. 개발 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모든 국가들은 최저 개발도상국과 그리고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이 IPOA상의 그들의 약속과 기구 또는 항구국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과 능력향상을 위해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다른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제85조).

각국은 개발도상국, 소규모 도서국이 ① 국가의 법률 및 지역적 법규체계의 검토 및 개정 ② 수산업 및 관련자료수집의 개선 및 조화 ③ 지역적 제도의 강화 ④ 특히 위성감시체계를 포함하여 통합된 MCS 체계의 강화 및 증진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제86조).

<표 5-16>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개발도국 지원	- 모든 국가들은 최저 개발도상국/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이 IPOA상의 그들의 약속과 기국/항구국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재정적/기술적/다른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제85조
개발도국 협력	- 각국은 개발도상국/소규모 도서국이 다음을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 ① 국가의 법률 및 지역적 법규체계의 검토 및 개정 ② 수산업 및 관련자료수집의 개선 및 조화 ③ 지역적 제도의 강화 ④ 특히 위성감시체계를 포함하여 통합된 MCS 체계의 강화 및 증진 등	제86조

마. 보고

모든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는 책임수산업행동규범에 의거, FAO에 2년 단위로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진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FAO는 이러한 보고들을 취합하여 적절한 시기에 출판하여야 한다.

바. FAO의 역할

FAO는 UN산하의 수산전문기구로서 이 행동계획 작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기구로서 이 행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①투입 및 산출관리통제의 미흡, 비지속적 수산업 관리방법 및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같은 IUU어업에 기여하는 요소 및 원인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어질 모든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 ②정규 프로그램기금(Regular Programme Funds)을 가진 특정, 국가

내 기술적 지원계획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FAO에서 이용 가능한 특별기금의 사용을 통하여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 ③IMO와 협력하여 IUU어업의 문제를 더 조사 ④어획증명 및 기록 필요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의 개최 ⑤지역적, 세계적 데이터베이스 설립하고 유지연구 ⑥FAO 수산위원회는 사무국에 의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IPOA의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2년마다 평가할 것이다.

<표 5-17>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달성을 위한 FAO의 역할

구 분	주 요 내 용	문 서
FAO의 역할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정 ① 투입 및 산출관리통제의 미흡, 비지속적 수산업 관리방법 및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같은 IUU어업에 기여하는 요소 및 원인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질 모든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 ② 정규 프로그램기금을 가진 특정, 국가내 기술적 지원계획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FAO에서 이용 가능한 특별기금의 사용을 통하여 IUU어업을 예방, 방지, 제거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 ③ IMO와 협력하여 IUU어업의 문제를 더 조사 ④ 어획증명 및 기록 필요사항을 표준화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의 개최 ⑤ 지역적/세계적 데이터베이스 설립하고 유지연구 ⑥ FAO 수산위원회는 사무국에 의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IPOA의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2년마다 평가	제88조 ~ 제93조

제2절 국제행동계획 이행상황 분석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상 우리나라에서 취해야 할 행동계획은 본 국제행동계획에서 규정한 『IUU어업을 예방·방지·제거하기 위한 이행조치(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동 국제행동계획의 내용 중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주요내용은 IUU어업방지를 위한 기국(旗國), 연안국(沿岸國), 항구국(港口國), 시장국(市場國) 및 지역수산기구에 대한 전방위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표 5-18>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중 각국/기구가 취해야할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기 국(旗國)	- IUU어업경력 어선에 대한 선적부여 거부	
연 안 국(沿岸國)	- IUU어업경력 외국어선에 대한 입어허가 거부	
항 구 국(港口國)	- IUU어업 혐의가 있는 어선에 대한 항구국의 승선·검색 권리인정	
시 장 국(市場國)	- IUU어획물 수입금지 등 제재조치 시행	
지역수산기구	- IUU어업혐의가 있는 비회원국 어선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	

<표 5-19>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핵심내용 분석

구분	분 류	핵심내용	
모든 국가의 책임	국제제도 적용	- 비준/수락/가입한 국제제도 이행 문제	
	국가 법규 적용	법 규	- IUU어업 효과적으로 다룸(포괄적)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IUU어업 지원/종사 금지 조치
		공해상 무국적 선박	- 국제법과 일치
		제재조치	- 자국민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
		비협력국	- 국제법과 일치하는 모든 조치 강구
		경제적 유인	- IUU어선 수산보조금 지원 회피
	감시/통제/검색(MCS)	- 출어부터 판매까지 포괄적 MCS	
	국가행동계획	- 3년이내 행동계획 개발/이행(예산 연계) - 각 조항과 연계한 수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 채택 4년이후 전략확인, 자국내부 조정	
	국가간의 협력	- 수산기구 및 관련국과 협력체제 구축	
공개성, 기술적 능력 및 자원	- IUU어업공개 및 기술적능력, 자원이용 노력		
기국의 책임	어 선 등 록	- IUU어업 경력어선 등록 회피	
	어 선 기 록	- 자국국적 어선 기록 세부 내용 기록 - IUU어업 경력 기록	
	어 업 허 가	- 국제법 불일치 어선 불허용 - 허가장 소지 - IUU어선 재공급/전재 비보장 등	
연안국 조치	- EEZ에서 IUU어업방지 조치 이행 - 효율적인 MCS, 조업일지 유지 - IUU어업 경력어선 자국입어 금지 등		
항구국 조치	- IUU어업 종사 확인 정보 요구 - IUU어업 양육/전재 금지 - IUU어업 조사 어선에 대한 적절한 조치 - IUU어업 통제 수립 및 공개		
시장관련조치	- IUU어업 어획물 자국 수입/유통 금지 - WTO 협정 채택/이행 - 특정어족/어종 교역관련 조치 - 포괄적 IUU어업 교역 방지 조치(생산-소비) 및 법규 제정 - HS제도 도입		
지역수산관리기구	- 수산관리기구 채택 정책/조치의 이행/집행의 보장 및 협력 - 수산관리기구를 통한 IUU어업방지 조치 - 정보축적, FAO 이용 - 비협력국 참여 - 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의 IUU어업 주의 환기		

1. 모든 국가의 책임

가. 국제제도 적용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서 국제제도 적용 중 주요한 내용은 유엔해양법협약(82)의 관련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제10조), 유엔해양법협약(82)/유엔공해어족협정(95)/FAO 이행협정(93)을 비준/수락·가입하도록 장려(제11조), 국가는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함(제12조), 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공해에서 조업국 국가는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국민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는 유엔해양법협약(82) 제7부상의 의무(공해 : 86조~120조)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함(제15조)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 조항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1) 관련규정 이행상황 분석

□ 유엔해양법협약(82)의 관련규정 완전한 효력 부여(제10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UN해양법협약을 1996년1월에 비준하였으며, 동 협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연안국의 해양생물에 관한 주권적 권리 부여 및 자국 EEZ내 어업자원에 대한 총허용어획량(TAC, 동협약 제62조) 결정과 관련하여 TAC제도를 시범실시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TAC 관리제도는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해양생물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동북아 주변수역에 대한 새로운 어업질서 정착과 한국의 EEZ 자원관리의 필요성 증대 및 어획쿼타 배분 등 상호입어에 대비하여 1999년부터 도입·시행되었다.

관련제도로는 수산업법(95.12) 및 수산자원보호령(96.12) 개정을 통하여 TAC 제도 시행근거(수산업법 제54조의2,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2 및 3)를 마련하였다. 또한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제정(98.4)을 통하여 TAC제도(TAC할당, 어획실적 보고, 지도·단속 등 제도 운영 등)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무리하였다.

<표 5-20> 현행 TAC 관련 자원관리 제도

법 규	내용
수 산 업 법	허가제에 의한 어업자원관리 명기, TAC제도 시행근거 마련
수산업법시행령	조업방법 명시
수산자원보호령	기술적 수단, 선복량제한, 근해어업 조업구역 및 정한수, TAC의 결정, TAC 할당근거, TAC 심의위원회 설치 및 TAC 관리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선의 규모, 연안어업의 정한수,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총허용어획량의관리에관한규칙	세부적인 TAC 실시방안 규정

TAC 적용대상 수역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과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이며, 원칙적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제외하고 있다. 2002년도 TAC 실시대상 8개어종의 선정은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 어종(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어장 및 어구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대게), 시도지사가 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어종(제주소라)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표 5-21> 한국의 TAC 관리제도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수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국가와의 협정에 의한 한국 EEZ수역과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을 포함한 수역 및 필요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영해제외) 포함 · 외국어선의 경우 어업협정 내용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 적용
어종선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큰 어종 · 주변수역에서 인접국 어선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어종 · 자원감소로 보존관리가 필요하거나 업종간의 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어종
관리대상어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오징어, 말쥐치, 삼치, 갈치, 참조기, 부세, 병어, 강달이, 꽁치, 명태, 도루묵, 붉은대게, <u>개조개, 키조개, 소라, 대게 등 <19개 어종(4개어종 추가)></u>
2002년 시행어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붉은대게, 대게, 개조개, 키조개, 소라 (8개어종) · 붉은대게, 개조개 및 소라어종은 본격적 실시 추진 · 키조개는 시범사업 실시 및 본격적 실시를 위한 기반조성 추진 · 고등어 등 회유성 어종은 주변국과의 어업협력체제 구축시까지 시범사업보다 강화된 실시방안 추진

자료 : 해양수산부

□ 유엔해양법협약(82)/유엔공해어족협정(95)/FAO 이행협정(93) 가입 장려(제11조)

○ 유엔해양법협약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에 관한 기본법으로 배타적경제수역, 심해저,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규범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6년 1월에 비준하였다.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협정명은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92.12.10

유엔해양법협약(이하 『유해공해어족보존협정』)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으로 동 협정은 1995년 8월 4일(제6차 유엔경제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에 관한 유엔회의)에 채택되었다. 서명국 수는 59개국(우리나라는 1996.11.26 서명, 미비준)이며 2001년 11월 11일 몰타가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달 후인 2001년 12월 11일자로 협정이 발효(가입당사국에 대하여만 발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명만 하였고, 미비준 상태이다.

<표 5-22>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비준국 현황(2001. 12월 현재)

연도별	계	비준국(비준/가입일)
계	31개국	
1996	7	통가(7.31), 세인트루시아(8.9), 미국(8.21), 스리랑카(10.24), 사모아(10.25), 피지(12.12), 노르웨이(12.30)
1997	8	나우루(1.10), 바하마(1.16), 세네갈(1.30), 솔로몬군도(2.13), 아이슬란드(2.14), 모리셔스(3.25), 마이크로네시아(5.23), 러시아(8.4)
1998	5	세이셸(3.20), 나미비아(4.8), 이란(4.17), 캐나다(8.3), 말레이시아(12.30)
1999	5	룩아일랜드(4.1), 파푸아뉴기니아(6.4), 모나코(6.9), 우루구아이(9.10), 호주(12.23)
2000	2	브라질(3.8), 바르바도스(9.22)
2001	4	뉴질랜드(4.18), 코스타리카(6.18), 몰타(11.11), 영국(12.10)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협정의 문제점으로는 동 협정은 승선검색이라는 강력한 자원보존관리조치 집행수단 규정 및 향후 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조업이 불가능하여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위축이 우려된다.

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강력한 승선검색의 경우 첫째, 지역기구 관할의 공해에서 비기국의 검색관에 의한 승선검색(제21조제1항 단, 처벌권은 기국이 행사제21조제6항a) 둘째, 선장이 비기국에 의한 승선검색 거부시 기국은 즉각 귀항명령 조치(제22조제4항)등의 조항들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역수산관련기구에 가입하지 않고는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동 협정의 내용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지역기구 가입 또는 지역기구 설정 보존관리조치에 협력할 의무(제

8조제3항), 공해어족보존협정 당사국은 지역수산기구 비회원국인 경우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자국선박 조업불허의무(제17조제2항) 등이다.

그러나 향후 동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비준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2001년 11월에 제56차 유엔총회시 동 협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WCPFC)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동 협정 가입에 대한 압력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5-23>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의 주요 집행 수단

구 분	세 부 내 용	협정조항
승선검색	- 지역기구 관할의 공해에서 비기국의 검색관에 의한 승선검색(제21조제1항). 단, 처벌권은 기국이 행사	제21조제6항a
	- 선장이 비기국에 의한 승선검색 거부시 기국은 즉각 귀항명령 조치	제22조제4항
지역수산 관련기구	- 지역기구 가입 또는 지역기구 설정 보존관리조치에 협력할 의무	제8조제3항
	- 공해어족보존협정 당사국은 지역수산기구 비회원국인 경우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자국선박 조업불허의무	제17조제2항

협정비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국제동향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비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준시기는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 가입과 연계하여 검토(업계 공청회(2000.12.14)), 관계기관 비준 검토회의 결과 현 단계에서 비준 불가로 결론(외교부, 원협 참석, (2001.11.30))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향후 동 협정 비준시 지역기구에 가입해야만 조업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WCPFC)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⁴⁰⁾ 또한 일본, 중국 등 여타 조업국은 현재 비준불가 입장임이므로 이들 조업국과도 공동보조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40) 2001.12.7, 해양수산부 입장을 외교부 및 관련 실국에 통보한 바 있음

<표 5-24>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책

구분	세부내용	비고
협정명	-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982.12.10 유엔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	
현황	- 몰타의 30번째 가입서 기탁으로(01. 11) 협정 규정 따라 12. 11 협정이 발효(가입당사국에 대하여만 발효) - 우리나라는 미가입 상태	
문제점	- 동 협정은 승선검색이라는 강력한 자원보존관리조치 집행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원양어업 위축우려 - 향후 지역수산관리기구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조업이 불가능	
입장	- 최근(2001. 11. 30) 관계기관 비준검토회의 결과 현 단계에서 비준불가로 결론(외교부, 원협 참석) - 다만 향후 동 협정 비준에 대한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준시기를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 가입과 연계하여 검토 ※ 본건 관련 해양수산부 입장을 외교부에 통보(2001. 12.) - 일본 등 조업국과 공동보조 필요 - 일본, 중국 등 여타 조업국은 현재 비준불가 입장	

○ 편의국적금지협정

1993년 FOC는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합법적인 어업허가를 부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어업자원의 보존관리체제에 위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엔해양법협약, 여타 지역적 차원의 국제수산협약 및 '95 UNFSA 등과 더불어 국제어업자원관리체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협정명은 「공해상 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이하 “편의국적금지협정” (1993.11.24 제27차 FAO총회에서 채택, 아국 미수락)」으로 동 협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공해상 자국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토록 함 둘째, 공해상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조업허가, FOC 어선의 조업허가 금지 등이다. 동 협정은 23개국이 수락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로 2개국이 수락하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5-25> 편의국적금지협정 수락현황

연도별	계	수락국(수락일)
합계	23개국	
1994	7	캐나다(5.20), 성키츠와 네비스(6.24), 조지아(9.7), 미얀마(9.8), 마다가스카르(9.8), 스웨덴(10.25), 노르웨이(12.28)
1995	1	미국(12.19)
1996	2	아르헨티나(6.24), EC(8.6)
1997	0	-
1998	1	나미비아(8.7)
1999	4	베닌(1.4), 탄자니아(2.17), 멕시코(3.11), 우루과이(11.11)
2000	4	세이셸(4.7), 일본(6.20), 사이프러스(7.19), 바르바도스(10.26)
2001	3	모로코(1.30), 페루(2.23), 이집트(8.14)
2002	1	세인트 루치아(10.23)

자료 : <http://fao.org/legal/treaties/012s-e.htm>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비하여 우리의 원양어업이 안정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93 FOC의 조기비준을 검토할 단계라고 보며 특히 발효요건인 25번째 국가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어업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국제신인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동 협정 수락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원양업계 공청회(2000.12.14)), 조기수락 입장정리, 원양협회의 조기수락 요청(2001.10) 등을 정리한 결과 협정의 조기수락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해상 편의국적어선 국적화 조치를 완료('99)하였으며, 편의국적 어선이 많은 후발 원양조업국(대만, 중국)의 FOC 어선이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를 통한 반사이익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어업질서에 부응하면서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5-26> 편의국적금지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및 대책

구분	세부내용	비고
협정명	- 공해상 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 이행증진을 위한 협정 (1993.11.24 제27차 FAO총회에서 채택, 아국 미수락)	
주요 내용	- 공해상 자국 어선이 국제적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토록 함 - 공해상 자국 어선에 대하여만 조업허가, FOC 어선의 조업허가 금지 등	
현황	- 규정상 25개국이 수락하면 발효되나 '02. 11월 현재 23개국이 수락함	
협정 수락 입장	- 편의국적 어선이 많은 후발 원양조업국(대만, 중국) 견제 필요 - 국제어업질서에 부응, 안정적 조업기반 확보 · 업계 공청회(2000. 12. 14) 개최시 조기수락 입장표명 - 원양업계의 조기수락 요청(2001. 10월) · 협정 수락절차 추진의뢰(2001. 12월, 해수부→외교부)	

□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제12조)

○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주요국제기구 비준/수락 및 가입 현황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주요국제기구 비준/수락 및 가입 현황은 가입 13, 가입추진 3, 미가입 5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입개별국제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회원국 19개국) ②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회원국 24개국) ③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회원국 34개국) ④FAO 수산위원회(FAO/COFI, 회원국169개국) ⑤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회원국31개국) ⑥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42개국) ⑦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회원국18개국) ⑧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회원국33개국) ⑨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관리협약(CBSPC, 회원국 6개국) ⑩아·태경제협력체/수산실무그룹회의(APEC/FWG, 회원국 21개국) ⑪OECD수산위원회(OECD/Committee for Fisheries, 회원국27개국) ⑫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회원국20개국) ⑬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회원국4개국) 등이다.

<표 5-27> 개별가입 국제수산기구 세부 현황

번호	기구명	가입일	본부	회원국	주요활동
1	국제포경위원회(IWC)	'78. 12	런던	일본, 미국 등 43국	포경산업의 건전한 발전
2	OECD 수산위원회	'96. 12	파리	OECD 가입 29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85. 4	호주	칠레, 알제틴 등 24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이용
4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보전관리협약(CBSPC)	'95. 12	시애틀	미국, 러시아 등 6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5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NAFO)	'93. 12	캐나다	캐나다, 러시아 등 17국	관할수역 수산자원 최적이용, 합리적관리
6	중동대서양수산기구(CECAF)	'68. 1	로마	미국, 일본 등 32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지원
6	중서대서양수산기구(WECAFC)	'74. 1	"	이태리, 스페인 등 31국	"
8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50. 1	방콕	일본, 베트남 등 20국	"
9	FAO 수산위원회	'65. 12	로마	일본, 미국 등 183국	세계수산업 추세 및 전망검토
10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70. 8	스페인	모로코, 스페인 등 31국	참치 및 참치류 어군 유지 권고
11	인도양참치보전위원회(IOTC)	'96. 3	세미셸	인도, 영국 등 14국	인도양 참치자원 보존이용
12	APEC 수산실무그룹	'91. 3	싱가폴	APEC 회원 21국	역내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등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01. 10	호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남방참다랑어 자원최적이용
14	중서부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위원회(WCPFC)	설립추진	뉴질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25국	태평양수역 참치자원 보존관리
15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	나미비아	앙골라 등 12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6	북태평양소하성어족위원회(NPAFC)	가입추진	캐나다	캐나다 등 4개국	연어산업 발전 도모
17	아·태지역양식기구(NACA)	미가입	방콕	중국 등 12국	양식기술 정보교환등
18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	미국	미국, 일본 등 8국	참치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19	북대서양연어보존기구(NASCO)	"	영국	캐나다, 덴마크 외 9국	연어자원관리
20	남태평양위원회(SPC)	"	뉴칼레도니아	프랑스 등 27국	어로지도사업, 자원조사 평가
21	북동대서양수산기구(NEAFC)	"	런던	덴마크 등 7국	어족자원 정보교환

○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제출자료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

유엔해양법 발효 이후 전세계 어업관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여 연안국의 200해리 선포 및 자원의 자국화 선언으로 연안국의 입지는 한층 강화된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원양어업국은 기존 어장의 상실 및 조업어장의 축소 등으로 활로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해상 어업도 인근 연안국 자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유엔해양법 협약 제118조(공해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 등 어업관련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관련 지역수산기구에서 동 자원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 대양은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대서양 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및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등 약 13개의 주요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이들 주요 국제기구는 산하에 과학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과학위원회에서 관할 해역의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방안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있다.

관련 지역 수산기구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별 종별 FAO 해구별 어획량(Nominal Catch : NC) 및 해구별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Catch and Effort : CE)이다.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자원평가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현재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다랑어류 및 새치류 상임위원회(SCTB)에 다랑어 연승어업 및 선망어업 관련 자료(어획량, 노력량, 생물학적 자료 및 조업선 자료 등),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및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협약(CBSPC)에 남극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베링해 명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전세계를 권역별로 나누어 수산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자료의 보완을 지역기구와 상호 협력하여 가능한 정확한 통계수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FAO 통계해구는 통계자료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하에 구분되어 진다. ①해구별 경계는 가능한 어획강도가 적은 해역에 위치, ②

경계는 통계작업이 용이한 해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경계확정을 위해 해류, 해저지형, 국경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현재의 FAO 통계해구가 확정되었다. 이들 FAO 통계해구의 변경을 위해서는 관련 주요국가, 지역수산기구 및 FAO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통계해구 변경은 통계작업이 용이하고 과거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직접 FAO에 통계해구별 어종별 어획량을 제출하고 있으며, 지역수산기구에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동 자료들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어업을 수행하고 전세계 자원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표 5-28> 관련 국제수산제도 완전하고 효과적 이행(제12조)

구 분	국제수산 기구명	아국 제출자료
지역수산 기구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대서양 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다랑어류 및 새치류 상임위원회(SCTB)	다랑어 연승어업 및 선망어업 관련 자료(어획량, 노력량, 생물학적 자 료 및 조업선 자료 등)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남극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자료 등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협약(CBSPC)	베링해 명태 관련 자료 등
FAO	직접 FAO에 제출	통계해구별/어종별 어획량 등

주) 관련 지역 수산기구 과학위원회 제출 자료 : 국별/어종별/FAO 해구별/어획량
(Nominal Catch : NC), 해구별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Catch and Effort : CE)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에 있어서, 관련 지역 수산기구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별 종별 FAO 해구별 어획량(Nominal Catch : NC) 및 해구별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Catch and Effort : CE)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업 국별 어획량은 한국원양어업협회에서 자원평가에 필요한 소해구별 노력량과 어획량, 환

경관련 자료수집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표 5-29> 우리나라의 어획량/어획노력량 자료수집 방법

구 분	자료 수집방법 및 작성
국별어획량	자료수집 및 작성 : 한국원양어업협회 조사방법 : 원양선사로부터 수집한 종별/해구별/어획량 이용
어획량/노력량 자료 /생물학적자료(체장조성)	자료수집 및 작성 : 국립수산과학원 조사방법 : 원양어업협회를 통해 소정의 양식을 각 원양출어선에 제공하고 작성한 자료 이용

그러나 우리나라가 각 관련 지역 국제수산기구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첫째, 국별 어획량과 수입량의 차이 둘째, 국별 어획량과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간의 종 조성 차이 셋째, 부수어획종인 새치류의 소량 어획량 및 분류오류에 의한 차이 넷째, 인도양 IOTC 관할수역인 FAO통계해구 51 및 57해구 외에 남극수역인 58해구에서의 어획량 급증 다섯째, 인도양 등록척수와 실제 조업척수 차이에 따른 문제점 여섯째, 생물자료의 부정확 및 부재 일곱째, 자료제출기한 지연 여덟째,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제출 실적 저조 등이다.

<표 5-30> 지역 국제수산기구 제출 자료의 문제점

문제점	세 부 내 용
국별 어획량과 수입량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다량어 연승어업 대상종은 횡감용으로 일본 등지에 주로 수출됨. - 무역정보제도에 의한 이들 국가의 연도별 수입량과 우리나라 생산량과의 비교에서 수입량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 - 통계자료의 신빙성 문제 제기
국별 어획량과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간의 종 조성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어획량과 어획량 노력량 자료간에 대부분의 경우 종 조성에 차이 발생. - 조업선에서 조업선사를 통해 원양어업협회에 보고되는 국별 어획량에는 소량의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종들의 어획량이 비보고 되는 것으로 추정됨
부수어획종인 새치류의 소량 어획량 및 분류오류에 의한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새치류 어획량이 아주 적거나 분류상의 오류로 인해 국별/어종별/FAO 해구별/어획량(Nominal Catch : NC), 해구별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Catch and Effort : CE) 간에 차이가 발생
인도양 IOTC 관할수역인(FAO통계해구 51 및 57해구) 외에 남극수역인 58해구 어획량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이후 우리나라 원양어업 공식 어획량인 원양어업 통계연보에 IOTC 관할 수역이 아닌 58해구에서의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량이 급증 - 인접 해구인 51해구와의 조업위치 중복에 의한 것으로 추정 → IOTC 해역 자원평가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재검토 요구
인도양 등록척수와 실제 조업척수 차이에 따른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IOTC수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척수와 실제 조업척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상 전재국으로 의심 야기
생물자료의 부정확 및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평가지 생물학적 자료인 크기 조성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소정의 양식을 원양출어선에 배부하여 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 - 수집자료가 부정확하고 양이 적어 실제 자원평가에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자료제출기한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국제기구의 자료제출기간은 효율적인 자원평가를 위해 국별 어획량은 차기연도 3~4월,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 및 크기조성자료는 7월 이전에 제출토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 원양어업자료는 조업종료 후 30~60일 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조업이 1년 6개월~2년간 지속되는 다량어업의 경우 제출기한 준수에 어려움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제출 실적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집하고 있는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와 크기조성자료의 제출실적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 이에 따른 대책 요구 - 일본의 경우 90~95%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50%내외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국별 어획량과 어획량 노력량 자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집하는 세부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와는 별도로 원양어선에서 원양선사에 7-10일 간격으로 보고하는 자료를 좀더 세분화하여 노력량 및 어획량과 정확한 어획위치, 1톤 미만의 소량 부수어획량도 보고를 하고 원양어업협회와 국립수산과학원이 공동으로 취합한다면 동 문제는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집하고 있는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는 어기 종료가 아닌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번씩 운반선사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러한 자료는 운반하는 도중 분실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현재에는 거의 실시치 않고 있으나 운반선 및 조업선의 협조하에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종 분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 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지침서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어획자료 수집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어황예측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인 및 자료수집 방법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과학오퍼저버 승선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모든 국제수산기구가 신뢰성있는 과학조사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오퍼저버기구의 운영을 고려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어업선진국으로서 일정 수준의 오퍼저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생물축적자료는 전적으로 원양어선 종사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홍보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FAO 및 국제수산기구에서는 IUU어업 규제를 위한 행동강령을 채택하는 등 불법 어업활동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어업국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표 5-31> 지역 국제수산기구 제출 자료의 개선방안

방 안	세 부 내 용
국별 어획량과 어획량 노력량 자료의 불일치 해소 방안	- 기존보고와 별도로 원양선사에 좀더 세분화하여 노력량 및 어획량과 정확한 어획위치, 1톤 미만의 소량 부수어획량도 보고 - 원양어업협회와 국립수산과학원 공동 취합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	- 어기 종료가 아닌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번씩 운반선사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종 분류 오류를 해결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지침서를 제작/배부 필요
중장기적 어획자료 수집체계 구축(생물축적자료,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인 및 자료수집 방법개선)	-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어획자료 수집체계 구축 -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어획예측 자료 활용 필요 - 전적으로 원양어선 종사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제적으로 과학읍저버 승선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모든 국제수산기구의 신뢰성있는 과학조사자료 요구를 고려하여, - 실질적인 읍저버기구 운영 검토 필요

2) 이행상황 평가

IPOA 제1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82)은 1996.1 비준하였으며, 편의국적금지협정은 수락 추진중이며, 유해공해어족보존협정은 1995.12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았다. 따라서 편의국적금지협정과 유해공해어족보존협정의 수락 및 비준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12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13개의 주요 국제수산기구에 가입해 있으며,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다랑어류 및 새치류 상임위원회(SCTB)에 다랑어 연승어업 및 선망어업 관련 자료(어획량, 노력량, 생물학적 자료 및 조업선 자료 등),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및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존협약

(CBSPC)에 남극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베링해 명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FAO 통계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제출 및 지역수산기구에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별 어획량과 수입량의 차이 문제, 국별 어획량과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간의 종 조성 차이, 부수어획종인 새치류의 소량 어획량 및 분류오류에 의한 차이, 인도양 등록척수와 실제 조업척수 차이에 따른 문제, 생물자료의 부정확 및 부재, 자료제출기한 지연,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제출 실적 저조 등에 대한 문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32> 국제제도 적용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필요여부	
			불필요	필요
제11조	-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 96.1 가입	○	-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가입	- 미가입	-	○
	- 편의국적금지협정 가입	- 미가입	-	○
제12조	-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어업통계 자료 일부 미비	-	△(보완)

나. 국가의 법규 적용

1) 이행상황 분석

□ 법규 및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제16조~제19조)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제16조~제19조에서는 IUU어업의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중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해 협력, IUU어업에 연관된 선박의 운영자 또는 수혜적 소유자인 국민들을 확인하기 위한 협력 등 IUU어업근절을 위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 8월 1일(법률 제4252호)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불법어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불법어업이란 수산업법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어업감독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 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말한다.

여기서 부적법 또는 위법한 어업이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및 선박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을 위시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업자원보호법」,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과거에는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 요건이 결여된 어업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범칙어업 또는 부정어업이라고 정의했다.

대부분의 부적법 어업이 단순히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으로서 어업면허·허가·신고의 내용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과 그러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하는 어업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산자원은 국가관리자원이기 때문에 국가는 어업허가라는 절차를 통해 이용자를 규제하며, 또 수산자원을 위태롭지 않게 보존관리 할 책무를 부담하는 것이다.⁴¹⁾

한편 선박안전조업규칙의 일부 규정의 위반은 수산자원의 보호 측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어업질서의 유지에 관한 행정규칙 위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규칙 위반은 반사회성을 띤 것과 단순히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이다. 이들 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지만,⁴²⁾ 이들 위반이 어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⁴³⁾

41) 차철표, 「수산업법상 어업자원관리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8, p. 66.

42) 대법원 판결 1969. 7. 29, 69 마 400.

43) 차철표·정순범, "불법어업의 단속에 관한 법리 고찰", 「해사법연구」, 한국해사법학회,

따라서 우리나라는 법규상 IUU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잘 되어 있다(<부록참조>).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IUU어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제20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에 대해 국제법과 일치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양어선이 공해상 출어 및 조업시에도 어선의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만 출어가 가능하므로 공해상 무국적 어선은 없다.

□ 제재조치(제21조)

우리나라의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선박안전조업규칙,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등에 아주 구체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불법어업의 경우는 사법처벌(법무부)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도/시·군·구)도 병행하여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배제고 있는 등 매우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9, pp. 180~182.

<표 5-33> 우리나라의 불법어업자 처벌 내용

구 분	처 벌 내 용
사법처벌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반사안에 따라 법령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무면허(수산업법 제8조, 41조, 제57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범칙어획물 소지·운반(수산업법 제75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어획물 전량 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인이 소유·소지한 어획물·어구 등 몰수(수산업법 제99조) ○ 불법어업 공범자 조사 사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조업어선 선장 이외 이에 동조한 선원에 대해서도 처벌
행정처분 (시·도/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범자 감정처분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1년기간내에 2회이상 처벌을 받은 자 ○ 제도권이외의 불법어선 허가 취소(수산업법 제57조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기선저인망, 소형선망·양조망어선의 기선선인망식 또는 기선권현망식 불법조업 등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 배제 (수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류공급 중지(행정처분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전국 전산망 구축으로 타 지역수협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 차단 ○ 영어자금회수 및 대출 중지(어업정지 60일이상 처분을 받은자) ○ 조합원 제명(어업허가 취소자)

□ 비협력국(제22조)

IUU어업의 정의에서 비규제어업(Unregulated Fishing)의 첫번째 정의에서는 ①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협약수역에서 무국적어선 또는 비회원국들이 협약이 정한 자원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어업활동을 말하고 ②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 또는 어족에 대하여는 국제법에서 정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비회원국(non-party)중에서 협력국과 비협력국이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협력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양어업에서 비록 지역수산물기구에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적극 협력하는 협력국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역수산기구에 협력하고 있으며, 원양어선의 어업허가장에도 제한 또는 조건 규정을 만들어서 국제기구 및 관계연안국의 어업에 관한 규제 조치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경제적 유인(IUU 어선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지원 회피, 제23조)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자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데 첫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둘째, 영어자금 셋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어업용면세유류 >

우리나라의 어업용 유류의 면세혜택을 살펴보면, 유종별로는 경유 및 휘발유, 중질유 모두 관세 및 석유사업기금으로 과세 및 납부를 하고 있으나, 교통세(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는 면세를 받고 있다. 중질유는 B.A유, 중유, B.C유를 말하며, 교육세는 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의 15% 세율로 부과, 주행세는 교통세의 3.2%로 200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표 5-34> 불법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중지

유 형	면세유류 공급 중지 기간	유류공급사업요령
불법어업을 한 어선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2배	제26조2항2호
어업허가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제한기간의 2배	제26조2항3호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어선을 매입 및 변경등록한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2배	제26조2항4호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선의 경우	과징금 납부여하에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간	제26조2항4호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에 대한 지원과 연계하여 불법 어업을 한 어선의 경우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2배, 어업허가취소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제한기간의 2배,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어선을 매입 및 변경등록한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의 2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선의 경우, 과징금 납부여하에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기간 만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중지를 하고 있다.

< 영어자금 >

영어자금의 용자목적은 어업경비의 저리·적기 공급으로 어업자 소득증대 및 수산업 진흥 등이다. 관련 법률로는 영어자금 용자의 경우는 수산업법 제 87조 제2항,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용자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영어자금 운용요령(해양수산부 고시) 등이다.

용자대상자는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연근해어업인,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인, 어선조난, 흉어,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재해 어업인 등이다.

이러한 영어자금 지원도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에 대해서는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 상환토록 통보하고 있다. 만일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

<표 5-35> 불법어선에 대한 영어자금의 융자제한

구 분	융 자 제 한
○ 수산관계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60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	○ 융자된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

주)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제6조제3항) 및 영어자금운용요령(제17조)

<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 >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은 원양어업의 지속적 생산증대와 어장의 유지, 개발 및 국제어업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는 자금을 말한다.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에 대해서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4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에 대해서는 영어자금에 대한 지원 회피와 유사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표 5-36> 불법어선 해외자원 생산지원자금의 용자제한

구 분	용 자 제 한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정지 45일 이상의 처분을 받은 어업인 또는 선박	○대출금 전액을 처분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자진상환토록 통보하되, 그 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법적수속 등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회수하고 기존 대출금 회수일로부터 6개월간 대출(서환포함) 중지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회수에 따라 대출중지 기간을 6개월씩 가산 적용

주)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운영요령 제11조 제2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자들에 대하여 제재조치(21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사법처벌(법무부), 행정처분(시·도/시·군·구)과 병행하여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도 배제도 하고 있는 등 매우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정부지원인 면세유류공급, 영어자금 해외생산지원자금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 어업허가제도의 개발(제24조 1항)

우리나라는 어업규제방법으로서 허가제도(License System)와 어획량할당제도(Quota System) 중 허가제도를, 어장접근방법으로서 조업해역제한(Limited Access)과 공개참여어업(Open Access) 중 조업해역제한을 각각 선택하여 실행중에 있다.

어업자원관리정책은 크게 어업규제정책과 어업자원조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업규제정책은 포획크기 제한, 어구 규제, 어획물의 전재 제한, 어획활동 제한, 어획노력량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규제는 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어업자원조성정책은 인공어초 투하사업, 종묘방류사업, 연어부화방류사업 및 대구부화 방류사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획량할당제도(Quota System)를 1998년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있다.

<표 5-37> 우리나라의 어업제도 세부 내용

종 류	구체적 예	시행 상태
포획크기 제한	어구망크기 제한 포획크기 제한	시행 중
어획활동 제한	특정어업의 금지 금어종 설정 금어구역 설정 금어기 설정 조업시간 제한 어란 및 치어 포획 제한 비어업자의 포획채취 제한 조업구역 제한 포획채취물의 제한	시행 중
어구 규제	사용어구 종류 제한 어망목 제한 어도차단 금지	시행 중
어획량과 어획노력량 제한	총어획량 제한(쿼터제도) 어선별 쿼터량 배정 1일 어획량 제한 어선척수 제한 어선톤수 제한	1998년부터 시범실시 미 시행 미 시행 시행 중 시행 중
기 타	어획물의 양륙 및 전재 제한 어획물의 판매장소 제한 자원보호를 위한 수질보전 법칙포획채취물의 판매금지	시행 중

○ 그물·통발 등 어구에 실명제 도입을 통한 불법어구 제거

우리나라는 행정관청이 명하는 경우에 어구 등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표지에 대하여 손괴·변조 등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연안개량안강망·근해자망·구획어업 등 일부업종에 사용되는 망어구만 어구 표지를 하도록 허가의 제한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장환경오염 및 어장선점 등으로 인한 어업자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통발·자망은 지나치게 과다한 어구를 사용하여 폐어구가 어장에 방치됨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 훼손시키고 있다. 또한 연안개량안강망어구는 3통이내 어구를 사용토록 제한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경우 20~40여통의 어구사용으로 수산자원 남획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어구(틀)에 실명을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불법어구에 대하여 단속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즉 부착된 실명표지의 탈락, 훼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실시 후 본격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실명이 없이 설치된 어구는 불법어구로 간주하여 강제로 철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 확산 유도를 통한 불법어업 예방

지역별, 어종별,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어업관리 유도를 통하여 어장환경 개선, 어획강도 감축, 수산자원 조성뿐만 아니라 불법어업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율관리어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관리어업을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2년 현재, 79개소의 자율관리공동체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이 중 48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다. 즉 자율관리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표 5-38> 불법어업예방을 위한 어업허가제도 개선방안

제 도 명	주 요 내 용
그물·통발 등 어구 실명제 도입	○ 어구사용 규모의 적정화 및 어망 투기 방지를 위해 어구표지 모델개발 및 보급추진 ○ 2004년부터 어구에 실명을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토록 의무화 - 표지 미부착 어구 강제 철거·인양 방안 강구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 확산 유도	○ 지역별, 어종별,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어업관리 유도 - 어장환경 개선, 불법어업 예방, 어획강도 감축, 수산자원 조성 등

자료 : 해양수산심포지엄, “WTO와 한국해양수산의 미래”(2002.9.5), p16~19

□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제24조 3항)

선박모니터링제도(이하 VMS)란 자원의 보존관리의 이행감시를 위하여 조업선박의 조업위치, 조업일수 등에 대한 자료수집 및 검토를 위하여 조업선박에 자동위치발신기를 설치하고 인공위성을 통하여 선박의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를 말한다.

FAO는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조업선박의 감시를 위하여 선박위치의 자동파악이 가능토록 VMS체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지역적 차원의 수산기구도 관할수역내 조업어선의 감시를 위하여 VMS체제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먼저 VMS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의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UN 및 FAO는 수산자원 보존관리에 관련된 협정(규범)을 채택, 조업선박의 감시를 위하여 선박위치 등의 파악이 가능토록 VMS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UN "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95.8.4) 제5부제18조, FAO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95.10.31) 제7조제7항,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2001.3.2) 제24조)

다음으로 일부 지역수산기구는 관할수역내 조업어선 감시를 위하여 VMS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99.1.1), 남

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99.3.1), 중서부태평양다자간고위급회의(MHLC, 추진중) 등이다. 마지막으로 연안국의 경우 자국 관할수역내 조업중인 외국어선의 조업감시를 위하여 VMS체제 구축, 모니터링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데, 주요 연안국으로는 불령폴리네시아(‘93), 러시아(2000), 중서부태평양솔로몬 등 16개국(FFA회원국)(참치선망 ‘9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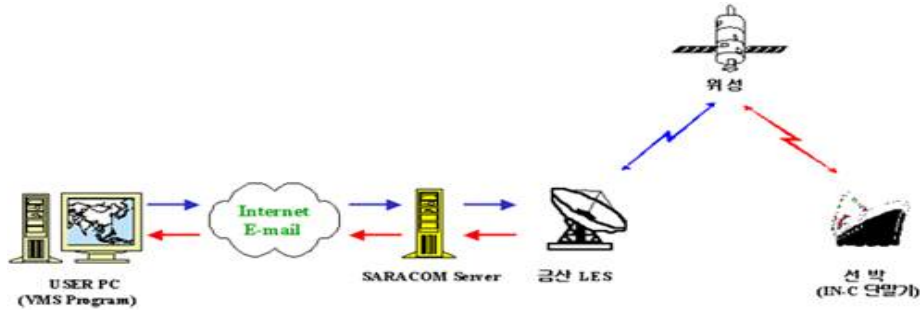
<표 5-39> VMS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

구 분	국제수산기구/연안국	비 고
국제수산 기구명	UN "공해어족보존관리협정“(‘95.8.4)	제5부제18조
	FAO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95.10.31)	제7조제7항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99.1.)	-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2001.3.2)	제24조 제3항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99.3.1)	-
	중서부태평양 다자간 고위급회의(WCPFC)(추진중)	-
주요 연안국	불령폴리네시아(‘93)	-
	러시아(2000)	-
	중서부태평양 FFA회원국 16개국(참치선망 ‘99)	-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선박감시체제(VMS)⁴⁴⁾는 국제수산기구 및 각 연안국의 “선박감시체제(VMS)” 시행 의무화 및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의 역할과 불법조업방지 등 조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원양어선의 위치확인 등을 감시·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즉 국제기구 및 연안국들은 외국어선의 조업감시를 위한 VMS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어업국으로서의 불법조업방지, 선박 조난시 신속한 대처 및 조업과 관련 분쟁 발생시 증빙자료 확보 등 조업질서유지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내의 모니터링센터에서 통신위성(Argo, Inmarsat)으로 부터 위성지구국(금산과 프랑스 Argo 컴퓨터) 및 한국통신을 통해 선박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44) VMS(Vessel monitoring system) : 선박에 “위치발생기”를 설치하고 육상에서 인공위성을 통하여 동 선박의 위치 등의 파악(monitring)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



[그림 5-1]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VMS체계도

한편 모니터링 방법은 해당 선박이 각종 데이터를 전송함에 있어 사용하는 통신위성의 종류에 따라 Argos를 설치한 어선과 Inmarsat-c를 설치한 어선의 경우로 대별된다.

<표 5-40> 선박위치의 모니터링 방식

모니터링 방식	모니터링 과정
Argos 설치 어선	선박위치 데이터→미국 해양대기청 통신위성(2개)에 송신→위성 지구국(프랑스)을 통해 Argos 컴퓨터에 저장→해양수산부 모니터링센터에서 국제통신망을 통해 Argos 컴퓨터에 직접 인출
Inmarsat-c	선박위치 데이터→국제위성이동통신기구 통신위성(4개)에 송신→위성지구국(금산) 및 한국통신을 통해→해양수산부 모니터링센터에서 수신

VMS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은 선박위치 좌표(선명, 일자, 시간, 위도, 경도) 조업구역내·외 선박위치 및 이동상황(경로), 속도 좌표, 조업선박의 회사, 선명, 톤수 등이며, 어선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필요한 양식으로 언제든지 출력 및 조회가 가능(선박별/일자별 위치, 이력 등) 하도록 한다.

<표 5-41> VMS를 통한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항목	세 부 내 용
선박의 위치파악	- 선명, 일자, 시간, 위도, 경도
선박위치 등	- 조업구역내·외 선박위치 및 이동상황(경로), 속도 파악
선박정보	- 조업선박의 회사, 선명, 톤수 등
기타기능	- 어선으로부터 수신된 정보는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필요한 양식으로 언제든지 출력 조회 가능(선박별/일자별 위치, 이력 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수역(3척) 및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조업어선 없음) 관할수역내 조업어선 위치파악 등을 위하여 수산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기타 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의 선박감시체제(VMS)시행에 따라 각 조업선박에서 동국(同國)에 선박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는 선박위치파악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⁴⁵⁾

<표 5-42> 우리나라의 선박감시체제 운영상황

구분	세부내용
해양수산부 직접모니터링	-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 수역(3척)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 조업어선 없음
모니터링 하지 않음	- 기타 지역수산기구 및 연안국 : 선박감시체제(VMS)시행에 따라 각 조업선박에서 해당국에 선박위치 정보 제공 ※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와는 선박위치파악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음

주) 2002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 위치발신기 설치현황은 국제수산기구 및 각 연안국의 VMS체제 시행으로 조업권·어장확보를 위하여 원양업체(원양선사)가 자율적

45) VMS 실시를 위해서는 선박위치발신기 소유주의 이용동의(ID 및 Password)를 받아야 위성지구국(한국통신, 프랑스 Argos)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령근거 필요

으로 선박위치발신기를 설치하고 있다. 2001.12월 현재 총 원양어선 507척중에서 58%(294척)이 설치를 완료하였다.⁴⁶⁾

<표 5-43> VMS 설치 원양어선 현황(2001.12 현재)

업종별	어선척수	설치척수	미설치	기종	설치사유
합 계	507	294	213		
참치연승	193	170	23	Argos	FFA 및 연안국 입어약정
참치선망	27	27	-	Inmarsat-c	"
북양트롤	30	30	-	Inmarsat-c	한·러정부간 어업협정
꽁치붕수망	23	23	-	Inmarsat-c	"
오징어 채낚기	64	21	43	Inmarsat-c:20 Argos :1	- CCAMLR 규정
해외트롤	147	14	133	Argos:3 Inmarsat:11	오만국(2), CCAMLR(1)입어규정 뉴지국 입어규정
저연승등기타	23	9	14	Argos:2 Inmarsat-c :7	CCAMLR 규정 러시아 입어규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제수산기구 관할수역 어업제한 및 어업협정 준수를 위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고시를 개정(2002.5.1)하여 선박감시체제 구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5-44> VMS 구축 관련 근거 법령

근거법령	세부내용	비고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제5호	· 외국 또는 국제기구가 관할하는 수역에서의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 -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제6조 · 어선에는 인공위성을 통하여 수신이 가능한 자동위치 발신기를 장착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명·위치·일자과 시간 등 자료를 완전자동으로 제공하여야 함	2002.5 시행

46) Argos : 176척, Inmarsat-c : 210척

다음으로 연근해어선 VMS 장착문제에 대하여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근해수역 뿐만 아니라 중·일 상대국 EEZ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 및 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동성이 좋은 대형어선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함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및 연안어선과의 어장분쟁 등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어업교섭지도과)에서는 연근해어선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지구역 위반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위치발신기 설치이다. 그러나 자동위치발신기 설치에 어업인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관련업체, 시·도 및 학계 전문가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이 필요함으로 적절한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이것이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어선으로부터 직접 조업실적, 조업해역 등의 정보를 받아 TAC 등 어업관리정책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근해어업중 어획강도가 높고 조업구역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위치발신기 부착하는 방안 모색, 연안어업은 근해어업의 부착효과를 평가 후 단계적 도입, 장비구입, 설치비용 및 운영예산 확보(1단계) 등이며, 이를 위해 현재(2002.11)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중이다.

<표 5-45> 연근해어선의 모니터링 제도도입 추진

구 분	추진방향 및 계획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구역 위반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위치발신기 설치 ※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 ○ 장기적으로 어선으로부터 직접 조업실적, 조업해역 등의 정보를 받아 TAC 등 어업관리정책에 활용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업중 어획강도가 높고 조업구역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위치발신기 부착하는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대형선망·대형트롤·대형기저 → (2단계) 중형기저·동해트롤·기선권 현망 → (3단계) 근해자망·근해통발 등 전 근해 업종 ※ 의무화 이전 우선 본부 어업지도선 또는 대형선망에 시범부착 운영 방안 모색 ○ 연안어업은 근해어업의 부착효과를 평가후 단계적 도입 ○ 장비구입, 설치비용 및 운영 예산 확보(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240척(대형선망 35, 대형트롤 61, 쌍끌이기저 86, 외끌이기저 68) - 자동위치발신기 부착 및 운영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안) Argos : 연간운영비 6억원(척당 3백만원) (제2안) Inmarsat-c : 운영비 8억원(척당600만원) 선박별 ID관리비 240천원 - 모니터링시스템 장비·설치비용(개소당) : 10백만원 - 모니터링센타 설치·운영 :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지도선사무소 등

자료 :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관리를 위한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안), 해양수산부, 2002.11

□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표준에 따른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제24조 제4항)

읍저버제도에 대하여 1982 유엔해양법협약은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의무, 관련 과학자료의 정보 및 규제, 경계왕래자원의 보존, 고도회유성어종의 보존,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적 협력, 공해생물자원의 보존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부베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당사국간 정보교환의무를 규정하여 조업선박당 1명의 읍저버를 승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은 협약수역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조업선박에 100%의 읍저버를 승선토록 하고 있다.

<표 5-46> 주요 국제기구의 옵저버관련 규정

구 분	세 부 내 용
유엔해양법협약	- 이용가능한 과학적 정보의 제공 및 교환의무, 관련 과학 자료의 정보 및 규제, 경계왕래자원의 보존, 고도회유성 어종의 보존, 공해상 과학조사의 자유,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국가적 협력,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의무 등
중부배링해 명태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 당사국간 정보교환의무를 규정하여 조업선박당 1명의 옵저버를 승선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 협약수역내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조업선박에 100%의 옵저버를 승선

먼저 우리나라의 연근해 옵저버(observer) 제도는 공인된 승선 옵저버와 양륙항 옵저버를 두고 이들로 하여금 조업어선에 승선시키거나 양륙항에 근무하게 하여, 자원관리를 위해 TAC 소진상태 및 어획상황의 파악·보고, 수산자원의 평가와 어획특성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더불어 협약국의 의무이행과 외국어선의 EEZ 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의 중요성, 정확한 조업실태와 과학적 자료수집이 긴요함에 따라 옵저버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국내 어업관리의 변화로 인한 옵저버 제도의 필요성은 TAC 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으로, 1999년 TAC 시범실시와 더불어 2000년에 처음으로 옵저버 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TAC 옵저버 제도가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어, 매년 일정수의 옵저버를 계약직으로 일정기간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TAC 관련 어업과 어종에 대하여 옵저버 임무를 수행하는 TAC 옵저버이다. TAC 시행 어종에 따라 전국 5개 지역에 분산된 TAC 어업의 양륙항에서 어획량 파악과 기타 과학적 자료수집 등의 옵저버 임무를 수행하는 양륙항 옵저버이다.

구체적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TAC 제도의 첫 업무가 시행된 1999년도에 TAC 옵저버 운영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듬해인 2000년 7월에 처음으로

8명의 TAC 읍저버가 채용되어 정식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매년 6개월 단위로 신규 읍저버가 채용되고 있으며, 2002년 하반기 현재 제5기 양륙항 TAC 읍저버 9명이 TAC 어업관리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5-47> 우리나라 연근해 읍저버 기수별 현황

읍저버	기간	인원	배치장소	비고
제1기	2000.07-2000.10	8	부산3, 동해1, 포항2, 서해수산1, 남해수산1	
	2000.11-2000.12	14	부산2, 동해2, 포항2, 서해수산1, 남해수산1, 제주3, 동해수산1, 포항분소1	추가 채용
제2기	2001.01-2001.06	9	부산2, 동해1, 포항2, 서해수산1, 남해수산1, 제주2	
제3기	2001.07-2001.12	10	부산2, 동해1, 포항3, 서해수산1, 남해수산1, 제주2	
제4기	2002.01-2002.06	10	부산2, 동해1, 포항3, 서해수산1, 남해수산1, 제주2	
제5기	2001.07-2001.12	9	부산2, 동해1, 포항2, 서해수산1, 남해수산1, 제주2	

TAC 읍저버 제도에서 읍저버의 유형에는 승선 읍저버와 양륙항 읍저버가 있다. 일반적으로 읍저버하면 승선 읍저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TAC 읍저버 제도는 양륙항 읍저버이다.

<표 5-48> 읍저버 유형별 임무

구 분	임 무	시행여부
승선 읍저버	-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동태 확인 - 어업별, 어선별 및 어종별 어획량 파악 - 어종별 어획량 및 생물학적 자료 생산 - 조업장소, 조업일, 어획시간 등 제반 어업정보 수집	미시행
양륙항 읍저버	- 어업별, 어선별 및 어획실적 보고의 확인 및 대조 - 어업별 어획통계 등 과학자료 수집보고 - 어업관계 법규 위반사항 등의 점검	시행

이러한 연근해어업에 대한 읍저버 투자문제를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총허용어획량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어획량 파악 및 관리/감독을 위한 읍저버 요원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중이다.

<표 5-49> TAC제도 활성화를 위한 읍저버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149	2	5	5	7	12	26	46	46
양육장	74	2	4	4	5	5	18	18	18
승 선	60	-	-	-	-	5	5	25	25
기 타	15	-	1	1	2	2	3	3	3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02.10

다음으로 국제(원양) 읍저버 제도의 운용을 살펴보면, 국제 읍저버 제도로는 1990~1992년 「한미 읍저버 제도 승선계획」에 의거하여 수산과학원의 연구사가 읍저버 활동을 한 것이나,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수산과학원의 연구원이 미국과 NAFO에서 읍저버 교육을 이수하는 등 국내 원양어업에서 필요한 타국의 읍저버 제도에 대한 산업적 이해는 이루어져 왔다.

<표 5-50> 우리나라 읍저버 운영 실태

구 분	운 영 실 태	비고
원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1992년 :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어장에서 「한미읍저버승선 계획」에 의거 수산과학원 연구사 28명 임시로 활동 - 1989-1997년 : 수산과학원 연구원 4명 및 일반인 1명이 미국과 NAFO에서 읍저버 교관교육 이수 - 국제 읍저버 양성을 위한 요원을 채용(수산과학원) 	
연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9년 TAC 시범실시와 더불어 2000년에 처음으로 읍저버 계획 수립하여 전국 6개 지역 양육항에서의 TAC 실시어업의 어획량 파악 - 읍저버 운영 총괄 : 해양수산부 - 읍저버 교육 : 수산과학원 - 읍저버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 위탁 - 읍저버 업무 : 양륙장에서 어업별·어선별 및 어획실적 보고의 확인 및 감독과 수산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점검(양륙항 읍저버) - 읍저버 운영 비용 : 전액 국고 	

이러한 읍저버제도의 주요 현안문제는 재정부담, 조업방해, 읍저버와 선원 간 언어적/문화적 갈등의 유발 등을 이유로 국제기준의 읍저버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과학읍저버 인력 확보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읍저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감시·통제·감독(MCS) 운영을 기획, 기금조성 및 실시(제24조6항)

우리나라의 직·간접 관할수역은 동북아 어업협정체결 후 배타적경제적수역(102,860km²), 한/중 잠정조치수역(84,067km²), 한/일 남부중간수역(26,154km²), 한/일 동부중간수역(98,278km²), 서해특정해역(2,403km²) 등을 합하여 342,472km²에 이르며, 이는 남한 국토의 약 3.5배에 달한다.⁴⁷⁾

<표 5-51> 우리나라의 직/간접 관할수역

구 분(해역)	면 적	비 고
EEZ	102,860km ²	남한국토의 1.3배
한/중 잠정조치수역	84,067km ²	
한/일 남부중간수역	26,154km ²	
한/일 동부중간수역	98,278km ²	
서해특정해역	2,403km ²	
합 계	313,762km ²	

이러한 관할수역하에서 우리나라의 MCS 운영계획수립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MCS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시·도, 시·군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매년 2차례의 전국 불법어업 일제단속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해양수산부, 시·도 및 시·군, 해양경찰, 검찰 등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행정과 사법적 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47) 21세기 어업질서확립 세미나, 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p.57, 2002.9.28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육상과 해상, 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⁴⁸⁾

<표 5-52> 정부의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및 홍보 실적

기 간	참여기관 및 단체	주요내용
00.4.15~4.21	- 주 관 : 해양수산부 - 참 여 : 시·도(시·군)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 협 조 : 법무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수협	-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수립 - 불법어업 예방 홍보계획 - 어업질서 확립 유공자(기관) 포상계획
00.10.1.~10. 31	"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01.5.1~5.31	"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불법어업 예방 홍보계획
01.10.8~10. 31	"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02.5.1~5.31	"	불법어업 전국일제단속계획 불법어업 예방 홍보계획

주) 2000년 이후

<표 5-53> 우리나라의 MCS 관련 정부종합 주요추진실적(2001)

구 분	단 속 실 적
지도·단속 실적	- 불법어업자 단속실적(소형기저 1,646건, 중형기저 95건, 대형기저 82건, 기선형망 143건, 잠수기 62건 기타 1,597건 계 3,443건) - 관계기관 합동단속 5회 실시
제도개선 사항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지급규정 개정(수산업법시행령 2001.2.3) - 동해구트롤어업과 오징어채낚기어선간 공조조업 예방(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에 관한 고시 제정(2001.7.30)) - 어선 불법건조·개조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어선법시행령 2001.12.31) - 불법어업자 면세유류 공급 중단기간 상향 조정(어업취소 또는 정지기간의 2배) - 불법어업 전담신고전화 설치운용(2001.4.1)
외국어선의 단속	- 중국어선의 단속(영해침범 34건, 무허가 62건, 특정금지구역 침범 27건, 조업조건 위반 51건, 계 174건) - 한·중 어업협정 발효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3회 - 일본어선의 단속(3척)

48) 해양수산부, 「1998년도 수산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해양수산부, p. 195.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해역별 MCS 담당기관 불법어업의 단속과 지원행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영해 이원의 관할수역은 해군,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또 영해 내측수역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시·도 및 시·군이 담당하며, 시·도 및 시·군의 경계수역은 시·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MCS 관련기관은 어업관리 감시·감독업무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교섭지도과를 중심으로 11개 지방수산청, 어업지도선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시·도의 수산관련 부서에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상감시를 주도하는 해양경찰청이 있다. 그밖에 협조기관으로 법무부와 국방부가 있다.

먼저 어업관리 감시·감독을 총괄하는 어업자원국 어업교섭지도과는 근해 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어업지도선 수급계획의 수립,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쿼터 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체적인 어업감시·감독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도한다.

특히 어업지도선사무소는 어업지도선의 정비 및 운항관리, 어업지도·단속 및 어업분쟁 예방·조정 나포·해난사고 방지 및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 이행, EEZ와 TAC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 어업지도상황실 및 무선국 운영, 그리고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사무소와 같이 각 시·도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도선을 이용하여 관할수역내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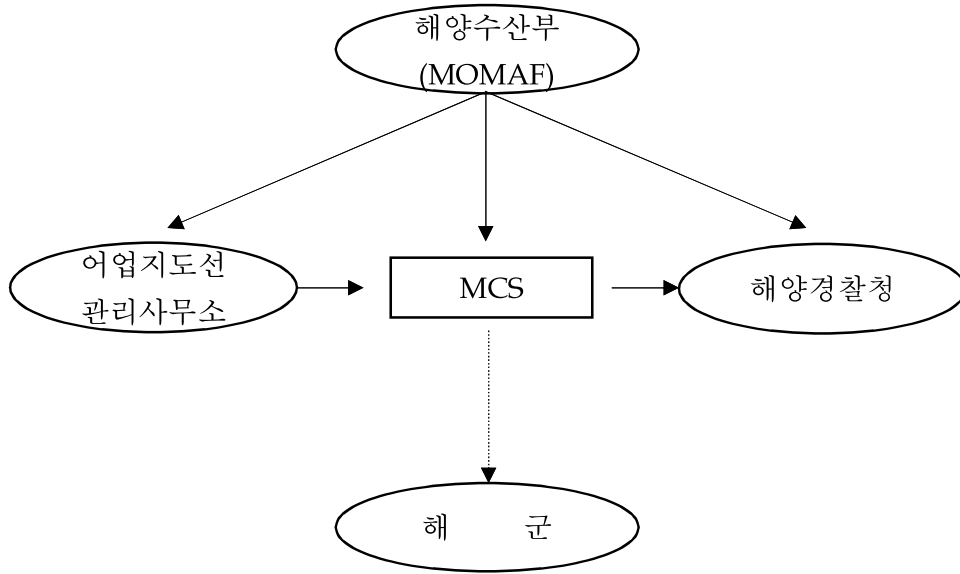
해양수산부의 외청인 해양경찰청은 전국 7개 연안도시에 해양경찰서를 두고 접적지역 출어선 보호, 불법어선 단속, 조난선 검색구조 등의 대어민활동과 영해 및 EEZ 외국 불법어선의 단속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어업관리 감시·감독의 유관기관으로 법무부는 불법어업자에 대한 벌금부과, 불법어업에 의해 포획된 어획물 압수, 불법어구의 몰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 어선을 몰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에서 해군함정에 승무하는 장교와 사병에게 범죄수사권한을 부여하여, 군 작전임무와 병행하여 외국어선

조업동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 어업단체인 수협중앙회는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출어선의 위치확인 및 일부 어업어종에 대한 조업정보를 관리하며,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어업인 홍보도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어업관리의 감시·감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5-54> 우리나라의 MCS 기관별 주요업무

기관(단체)별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어업교섭지도과 -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수립 - 근해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 관한 사항,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지도, 어업지도선수급계획의 수립,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획쿼터 배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체적인 어업감시·감독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지도 등
	어업지도선사무소 - 어업지도선의 정비 및 운항관리, 어업지도·단속 및 어업분쟁 예방·조정 나포·해난사고 방지 및 어로활동 보호를 위한 지도, -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정부간 합의사항 이행, EEZ와 TAC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수행, 어업지도상황실 및 무선국 운영, 어업지도선 승선요원의 교육 훈련 등
시·도	○ 지도선 및 단속인력 최대 동원 ○ 관내 불법어선 단속과 병행, 지도홍보 강화 ○ 관내 불법양식시설 강력 단속 및 자진철거 유도
해양경찰청	○ 단속반에서 경비정 및 경찰인력 요청시 적극지원 ○ 단속방해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 조사, 처리 ○ 무허가어선 불법어구적재, 범칙어획물운반선 출·입항 통제 및 단속(선박출입항통제소) ○ 나포 외국어선 현장 인수 및 조사 처리 - 전국 7개 연안도시에 해양경찰서를 두고 접적지역 출어선 보호, 불법어선 단속, 조난선 검색구조 등의 대 어민활동과 영해 및 EEZ 외국 불법어선의 단속에 관한 임무
법무부 (대검찰청)	○ 단속기간중 전담검사 지정 및 사법경찰관 지휘 ○ 공무집행 방해 당사자 및 조정하는 자, 불법어업 누범자, 단속공무원에게 흉기로 위협하거나 공갈·협박하는자 엄중 처벌(구속 지휘) - 불법어업자에 대한 벌금부과, 불법어업에 의해 포획된 어획물 압수, 불법어구의 몰수, 5년 이내에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어업자의 경우 어선을 몰수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수협중앙회	○ 수협위원장 범칙어획물 및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배제사항 이행 여부 점검 - 범칙어획물 위판행위 발견시 관계기관에 고발 ○ 불법어업자 면세유류 등 지원배제를 위한 전국수협 전산망 조기 구축 ○ 수협별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 지도·홍보 ※ 출어선의 위치확인 및 일부 어업어종에 대한 조업정보 관리,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어업인 홍보 담당
국방부	- 어업자원보호법 제4조에서 해군함정에 승무하는 장교와 사병에게 범죄수사 권한을 부여, 군 작전임무와 병행하여 외국어선 조업동태 등의 정보를 제공



[그림 5-2] 우리나라의 MCS

MCS를 위한 지도선 및 항공기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관리와 질서유지를 총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25척이며 시도는 69척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수역, 동해 중간수역, 서해 잠정조치수역, 한국 측 과도수역(이상 총 313,915km²)에 대한 MCS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도선 1척이 담당해야 할 평균 수역면적은 약 3.340km²에 달한다.

<표 5-55> 어업지도선 톤급별 현황

구분	계(척)	50톤미만	50~100톤	100~300톤	400~500톤	1,300톤급
합계(척)	94	40	25	14	10	5
해양수산부	25	-	1	9	10	5
시·도	69	40	24	5	-	-
부산	8	7	-	1	-	-
인천	9	1	6	2	-	-
울산	2	2	-	-	-	-
경기	2	1	1	-	-	-
강원	3	2	1	-	-	-
충남	5	3	2	-	-	-
전북	4	1	3	-	-	-
전남	17	11	5	1	-	-
경북	3	2	1	-	-	-
경남	11	10	1	-	-	-
제주	5	-	4	1	-	-

자료 : 해양수산부

한편 해양질서 유지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업무는 출입국관리법, 밀항단속법, 어선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109개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양경찰의 업무편람으로 훈련, 예규 및 고시 등이 있고 이들은 주로 단속 및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된다. 불법어업 단속업무의 경우 해양경찰은 어업감독 공무원과 공조하여 예방과 단속에 필요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및 항공기는 1,500~3,000톤급 구난함 5척 및 1,000톤급 5척 총 10척의 원해용 대형경비함, 연안 및 접속수역 경용 200~500톤급의 중형경비함 39척, 영해 및 연안 경비용 30~100톤급 소형경비함 1-2척, 소형 고속정인 형사기동정 20척 및 기동순찰정 40척이다. 이밖에 해양경찰청은 특수목적용 선박인 유방제정 18척, 예인선 4척과 소방정 1척 그리고 헬리콥터 9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 5-56> 해양경찰청의 함정 및 항공기 보유현황

구 분	유 형	톤 수	척 수	속력(knot)	승조원수	
경비함정	대 형	1,500~30,00	5	18~21	33~60	
		1000	5	21~31	32	
	중 형	200~500	39	14~27	19~22	
	소 형	30~100	102	22~29	5~10	
	특수함정	형사기동정	25	20	22~25	5~10
		기동순찰정	2~3	40	35	5~10
		유방제정	150~450	18	8~12	8~17
소방정		200	1	13	5	
	예인정	50~100	4	11	5	
항공기	헬리콥터	중단거리	9	-	4~5	

주: 승조원수는 전투경찰요원을 제외한 수임.

자료: 해양경찰청(2000)

또한 EEZ체제가 정착됨으로써 한국의 관할권 범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업활동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기본업무는 우리의 관할권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EEZ에서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제23조 1항과 대통령령 제7조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시도 그리고 해양경찰이 상당한 정도의 MCS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비제도권 어업에 의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어업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 및 장비부족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정부의 의지, 어업인 교육, 대체소득원 개발, 유통단계 감시, 단속 기관간 협조체제 등의 문제도 불법어업의 지속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UU어업방지 기금조성관련 어업질서확립자금 운영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청 등에 의해 무허가 어선, 금지구역 및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의 적재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불법어업자들의 반발 및 조업 지속에 따라 완전하게 근절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어업자들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1996년부터 자금의 지원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어업질서 확립자금」이다.

어업질서 확립자금은 생계형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유도함으로써 어업질서의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구 구입비, 어선구조 설비비 등 전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한시적으로 특별 융자하는 사업이다.

먼저 해양수산부가 어업질서 확립자금에 대한 사업공고를 각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취지를 하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대상 어업자의 신청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어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어구를 자진해서 반납하거나 또는 폐기하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어업자를 선정하며, 소요액을 조사하고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시·도에 보고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의 지원대상자 및 소요금액을 취합하여 수협중앙회에 통보한다. 수협중앙회에서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융자조건을 따라 소요액을 지원하게 된다.

어업질서 확립자금은 보통 1척당 1~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첫해는 이자만 상환, 2~5년은 지원금을 균등하여 상환)을 하게 되어 있다. 동 사업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일몰제를 적용하여 농특자금으로 운영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종료되었지만, 2002년도에 수산발전기금의 변경 운용계획에 따라 자원관리형 어업육성 사업에 어업질서 확립자금이 포함되었고, 30억원의 예산으로써 사업이 재개되었다.

다음은 1996년부터 실시된 어업질서 확립자금의 업종별, 시·도별 지원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199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863척에 대해 280억원의 자금이 배정되었다. 연도별로는 1996년 첫해에는 지원척수 및 지원금액이 각각 965척, 95억원으로 제일 많았으나, 해마다 감소하여 1999년에는 304척, 31억원이 지원되었다. 지역별로는 소형기선저인망이 많이 분포하는 전남, 경남, 부산과 그리고 삼중자망의 의존도가 높은 강원지역에 많이 지원되었다. 업종별로 불법어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이 압도적인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삼중자망이 뒤따르고 있다.

<표 5-57> 어업질서 확립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척)

연도	구 분			합계
	소형기저	삼중자망	기타	
1996	797	82	86	965(95억원)
1997	727	98	42	867(94억원)
1998	374	320	33	727(58억원)
1999	205	54	45	304(31억원)
누계	2,103	554	206	2,863(280억원)

주 : ()안은 당해년도 지원실적

자료 : 해양수산부

또한 정부에서는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영세어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서 불법어구를 폐기하고 당초 허가받은 어업의 어구구입비, 시설비 등 정부에서는 합법어업 전업을 위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업질서 확립자금은 기존의 강력한 불법어업의 지도·단속에 비해 전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사업이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동 자금운영의 효율성으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죄의식 없이 조업하여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은 전업자금을 지원받아 어구를 반납하여

폐기 또는 소각함으로써, 당사자는 물론 동종 어업인들에게 소형기선저인망의 위법성과 정부 근절대책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평가할 때 자원보호 필요성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업질서 확립자금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시행 주체의 이원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동 자금의 대상자는 지방행정관청이 지원대상 어업자 중에서 적격 어업자를 선정하며, 실제 사업자금의 지원은 거주지 수협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 주체가 지방수협과 수협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의 집행 및 관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지원규모의 미흡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어업질서 확립자금의 지원 내용은 1년 거치 4년 상환이지만, 금리도 시중 은행금리와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영어자금보다 금리(5%)가 높기 때문에 어업자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기 위해서는 어구 및 어선개조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지원금액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오징어채낚기어업이나 통발어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집어등 설치비 및 어구비 등 출어경비가 약 3,000만원이 소요되며, 더욱이 숙련된 고용노동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액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자가 많아 지원금도 균등하게 배정하기 때문에 어업자 1인당 지원액이 낮게 책정되어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고자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셋째, 사후 관리감독의 미비이다. 불법어업의 단속과 전업자금 지원을 통해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적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성행되고 있다. 그 이유로서 ①전문적 기술이 필요치 않고 조업방식이 용이한 점 ②허가어선에 비해 출어경비가 낮은 점 ③그물코가 작은 저인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며, 어획량의 편차가 높지 않는 점 ④타 어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이전에 비해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어업질서 확립자금을 지원받은 어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여 합법적 어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는지 어업자들의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후 관리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⁴⁹⁾

□ MCS에 대한 업계의 이해 및 참여 증진(제24조 제7항)

수협중앙회에서는 매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적인 어업질서확립 운동 전개, 불법어획물 위판금지 강화, 시범제도 운영을 통한 어업질서확립 효과 확산, 불법어업자의 합법어업으로 전업유도,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배제 조치 강화, 어업질서 확립교육 및 홍보 강화, 불법어업 근절지도, 단속강화 등이다.

<표 5-58> 수협중앙회의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2002)

구분	세부실천 계획
1. 자율적인 어업질서확립 운동 전개	가. 어업인 간담회 개최 ○ 주 관 : 조합(지구별, 업종별) ○ 기 간 : 매분기 1회 이상 ○ 진 행 : 전무(상임이사) 또는 지도상무 ○ 참 석 : 어업인, 임직원, 수산관련공무원 등 ○ 간담회 내용 - 어업질서확립 세부추진방안 - 어업인 주도의 자율관리형어업 도입 - 지역별 각종 현안문제 협의 -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 ○ 현안 설명·청취 및 자유토론 나. 「불법어업예방 집중 홍보의 달」 지정. 운영 ○ 기 간 : - 2002. 4. 1 ~ 4. 30, - 2002. 9. 1 ~ 9. 30 ○ 주요 추진사항 - 어업질서확립 자율결의대회 개최 - 불법어업 잔존 항포구 중심으로 캠페인 전개 - 위판장, 항포구에서 입출항 어선 대상 계도 방송 실시 -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 제작. 배포 -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어업인 지도 교육 ※ 해양수산부에서는 5월과 10월을 불법어업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강력단속 예정임 ○ 포상방법 - 상장 및 포상금 수여 - 포상자 선정, 포상 금액은 조합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 어업질서확립 유공자 포상 조합 : 대상자 및 시기 자율적으로 선정 포상 중앙회 : 연말 유공자 포상 -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앙회장 표창

49)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EEZ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7.

<표 계속> 수협중앙회의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2002)

구분	세부실천 계획
<p>2. 불법어획물 위판금지 강화</p>	<p>가. 불법어획물 판정협의회 구성/운영 ○ 대상 : 위판 취급 조합 ○ 구성 : 경제상무, 판매과장, 지도과장 등 ○ 임무 - 불법어획물 해당여부 판정 (어업허가장, 어구확인) - 수산자원보호령상 포획, 채취금지기간 및 포획 금지체장 해당여부 확인 ※ 조합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 나. 조합 위판장별 불법어획물 위판방지책임자 지정 관리 ○ 대상 : 경제상무, 판매과장, 담당직원 ○ 불법어획물 위판시 엄중 문책 조치 다. 조합책임자 관내 위판장 불시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관내 위·공판장 어획물 위판사항 ○ 점검자 및 점검시기 : 전무, 상임이사 (월 1회 이상 불시 점검실시) 라. 위판장별 불법어업자 명단작성 특별관리 ○ 행정처분기간중 위판여부 확인 철저 ○ 불법어업 관련 행정처분 통보자 명단비치 특별관리 마. 범칙어획물 위판 배제 홍보 ○ 조합 위판장, 항포구 및 선착장 등에 현수막 연중 부착 (문안) : "수협은 불법어획물을 위판하지 않습니다" ○ 입출항 어선대상 불법어업 계도방송 실시</p>
<p>3. 시범제도 운영을 통한 어업질서확립 효과 확산</p>	<p>가. 시범어촌계 지정 및 자율관리형어촌계 육성 ○ 추진 : 지구별조합당 시범어촌계 1개 지정 ○ 지정대상 : 불법어업의 성행지역 및 최근 상당히 근절된 어촌계 ○ 시범어촌계에 대한 지원 - 영어자금, 선수몰자 등 우선지원 공급 - 어촌소득증대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우선순위 부여 - 어촌계 공동사업시 자금 우선지원 -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입간판 설치(장관명의) : 어촌계 자긍심 부여 및 대외 홍보 · 관할 시·군과 협조하여 지정하고 각종 숙원 사항 우선처리</p>
<p>4. 불법어업자의 합법어업으로 전업유도</p>	<p>○ 지원방향 -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합법어업으로 전업소요되는 어구구입비 및 설치비 용자 지원 ○ 정부 전업자금 지원계획 - 재원 : 30억원(수산발전기금) - 지원대상 : 소형기선저인망 등 - 지원규모 : 150척(척당 2천만원, 금리 연 5%, 1년후 상환) ※ 세부계획 추후 시달 ○ 불법어업자로 검거된 자에 대한 전업지도</p>
<p>5.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p>	<p>○ 어업인의 창의력과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사항 발굴개선 ○ 불필요한 어업규제 완화로 불법어업자 양산 방지 ○ 어업규제사항 개선 보완 - 어업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조정 ○ 어장관리체제 확립 - 무면허, 불법초과시설 근절 지도 - 양식어장 적정 시설 및 어장정화 지도</p>

<표 계속> 수협중앙회의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2002)

구분	세부실천 계획
6. 불법어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배제 조치 강화	<p>라. 미이행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배제 조치사항 불이행 조합 및 직원은 사안별 주의 촉구 및 문책조치 ※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자 지원배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범자 법정 최고형 처벌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처벌 : 벌금부과, 어획물, 어구 전량몰수 * 어선몰수 적극검토 (5년 이내 3회 이상 처벌자) - 행정처분 : 누범자 감경처분 적용배제 (처분기관) - 집단시위 적극 가담자 및 공무집행 방해자 구속 원칙 * 지원배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어업 처분 통보를 받은자 * 영어자금 회수, 대출중지 및 면세유류, 수산기자재 공급중지는 해당 어선에 한해서만 적용
7. 어업질서 확립교육 및 홍보 강화	<p>가. 어업인 교육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연수원 교육 ○ 조합 자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선원 안전조업 교육시 병행 추진 - 각종 회의시 불법어업 근절 교육 병행 - 자체강사 및 수산관계공무원 등 초청 강연 - 어촌계 순회 교육시 수산자원 보호 중요성 밀착교육 강화 ○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질서 확립 필요성 및 근절방안 - 합법어업자의 불법어업자 감시역할 수행 - 조업구역 준수로 지역간, 업계간 분쟁예방 - 주변수역(일본, 중국)에서의 어업질서 확립 - 우리수역을 침범 조업하는 외국어선의 신고요령 계도 <p>나. 어업인 홍보활동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물 제작 조합에 배포 : 2002. 4월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터 : 1,000 매, · 표 어 : 3,000 매 - 우리바다지 및 기타 수산전문지를 통한 홍보 - 어업무선국을 통한 조업구역 위반 방지 및 어장분쟁 예방 계도방송 실시
8. 불법어업 근절지도 단속강화	<p>가. 불법어업근절추진사항 본부 점검반 현장지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부(회원지원부) : 연 2회 이상(상,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회원조합 ○ 조합 정기감사시 현장 지도점검 및 불법 어획물 위판 과다 발생조합 특별검사 실시 <p>나. 유관기관 합동 특별 단속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단속 : 매월 1회 이상 - 참여기관 : 해양수산부, 검찰, 해경, 시·도, 검찰(협조) ○ 불법어업 집중 단속기간(어. 패류 산란기) : 5월, 10월
9. 기타 추진사항	<p>가. 불법어업자 온라인 전산등록 관리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 통보 접수 즉시 전산등록하여 조합내 각 부서에서 자동 관리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자율 추진 - 조합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시 연차적으로 예산편성 <p>나. 민간 환경단체와 어업질서확립운동 추진 협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조대상 : 사단법인 『바다가꾸기실천운동시민연합』 ○ 추진방법 : 전국 권역별 이벤트 행사 및 순회 포럼 개최 참여

자료 : 수협중앙회, 회원지원부

2) 이행상황 평가

IPOA 제16조~제19조에서는 IUU어업방지를 위한 법규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법규상 IUU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IPOA 제20조에서는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은 우리나라의 경우, 원양어업에서 출어 및 공해상 조업시에도 어선의 등록 및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IPOA 제21조 IUU어업에 대한 재제조치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어업에 대하여 사법처벌(법무부)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시·도/시·군·구)도 병행하여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 배제도 하고 있는 등 매우 강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22조 비협력국 문제도 우리나라는 미가입 지역수산물기구라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IPOA 제23조 IUU어업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에 대한 이행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IUU 어선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지원 회피와 관련하여 불법어업자들에 대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제재에 대한 제도가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POA 제24조 제1항 관련, IUU어업방지를 위한 어업허가제도는 잘되어 있으나, 불법어구 방지를 위한 어구실명제 및 자율적인 관리를 통한 불법어업의 사전방지 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24조 제3항의 VMS장착 문제도 원양어업의 경우 약 58%만 장착(01 기준), 연근해어업은 전무한 실정임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제24조 제4항의 옹저버 프로그램도 원양어업은 필요시 운영하고 있고, 연근해어업은 시행초기이다. 추가적인 조치로는 과학옹저버 인력확보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옹저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POA 제24조 제6항 관련, 우리나라 MCS는 매년 2차례의 전국 불법어업 일제단속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국

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시·도, 수협 등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육상과 해상, 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1996년 ~199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863척에 대해 280억원의 어업질서확립자금자금이 운용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죄의식 없이 조업하여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자들은 전업자금을 지원받아 어구를 반납/폐기/소각함으로써, 동종 어업인들에게 소형기선저인망의 위법성과 정부 근절대책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추진상의 일부 문제점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제24조 제7항의 MCS 업계의 이해 및 참여 문제는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책 자체 수립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진중에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제9항의 D/B 구축 문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9> 국가의 법규 적용관련 이행상황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16조 ~ 제19조	법규 및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잘 되어 있음	○	-
제20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	- 어선의 등록 및 허가를 득해야만 공해상 출어가 가능	○	-
제21조	제재조치	- 사법처벌(법무부), 행정처분병행 등 매우 강력한 제도시행	○	-
제22조	비협력국	- 미가입 지역수산물구라도 협력하고 있음	○	-
제23조	경제적유인 (보조금지원회피)	-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면세유류,영어자금 해외생산지원자금 등) 배제 제도 시행중	○	-
제24조제1항	어업허가제도개발	- 불법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 적 장치 보완 필요	-	○
제24조제3항	VMS 이행	원양어업 : VMS 58%장착 완료(01기준) 연근해어업 : VMS 장착 전무	-	○
제24조제4항	오퍼버 프로그램	원양어업 : 필요시 운영 중 연근해 : TAC제도시행을 위한 초기 단계(9명)	-	○
제24조제6항	MCS 운영 및 기획	- 해수부/국방부/검찰청/경찰청 등 7개 부 처와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 구축, 육상/ 해상/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법정부적 차원 적극 추진 중	○	-
	MCS기금 조성	- 어업질서확립자금 운용중 - 어구 반납/폐기/소각함으로써, 당사자/ 동종 어업인들에게 소형기선저인망의 위법성/정부 근절대책에 폭 넓은 공감 대 형성 및 자원보호 필요성 제고 기여 - 일부 운영상 문제점	-	△ (문제점 보완)
제24조제7항	MCS 업계이해 및 참여	-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어업질서확립 종합대 책 자체 수립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추진중	○	-
제24조제9항	MCS D/B체계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불법어업자 대장은 있으나 D/B는 미구축		○

다. 국가간 협력

1) 이행상황 분석

□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제28조)

1970년대 들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EEZ 선포의 여파로 세계 연안국들이 해양자원 보호에 나섬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성장이 정체되고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지역수산기구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보존과 관리라는 명목으로 공동관리가 강화되면서 어업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불리한 국제어업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해양자원이 풍부한 연안국과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어업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어선들의 입어기회를 확대하고, 합작회사 및 현지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등 어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협정에 의해 할당받은 쿼타가 있는 경우 이를 늘려가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왔다.

한편 1982년 해양법협약이 1994년 11월 효력발생에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주변국가인 일본 및 중국과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모두 1996년에서 1998년 사이에 EEZ를 선포하고 해양법협약을 비준하였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해양경계획정에 합의하기는 불가능하므로 한·일, 한·중, 중·일간에 잠정적인 성격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1965년 어업협정을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게 되었으며, 중국과는 최초의 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양자간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는 이란, 투발루, 쿡, 프랑스,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호주, 모리타니아, 에쿠아도르, 러시아,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3개국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한·러, 한·일, 한·중, 지역수산기구간의 IUU어업방지를 위한 협력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한·러간 협력 >

한·러간의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업국의 입장이므로 러시아 EEZ 수역에서의 조업시 지켜야할 조건들인 위치정보, 어획량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동 수역 입어가 불가능함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업정보 협력과 관련하여, 최근에 러시아측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러시아 EEZ내에서 어획한 어획물을 국내(한국)로 반입하는 어선 및 운반선에 대한 현황을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동 문제는 관련자료를 통보해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관세분야(관세청)와 연결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러간 어업협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양국간 어업협력서가 있음으로,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양국이 상호간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일, 한·중간 협력 >

한·일, 한중간에 있어서는 상대국 EEZ입어 결과를 일일보고 및 분기별 보고 등의 형태로 상호간에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등 어업협정에 따른 양국간의 협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국간 상호 협의하여 IUU어업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시키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 >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와 IUU어업방지를 위한 협력은 지역수산기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잘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향후 지역수산기구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후속적인 조치가 마련된다면, 이에 따르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 문제는, IUU국제행동계획 보다도 양국간에 맺은 어업협력서에 기초하여 상호간 협의를 통하여 협력을 하면 될 것이다. 특히 외국의 연안국에서는 상호간 협력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조업이 불가능함으로 상호 협의한 IUU어업방지를 위한 어업협력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도 동 기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조업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향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를 준수하면 됨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공식접촉창구 지정(제30조)

1996년 8월 해양수산부의 발족시에 국제협력관을 신설하여 국제협력담당관, 국제기구담당관, 원양어업담당관 조직으로 해양수산부의 국제협력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해 왔으나, 1999년 5월에 정부조직개편시 국제협력관을 폐지하여 국제협력과와 원양어업과를 어업자원국에 편입하고 국제협력심의관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국제협력업무를 총괄기능이 약화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2000년 7월에 국제협력관제도를 부활하여 국제협력심의관을 폐지하고 국제협력담당관, 무역진흥담당관, 원양어업담당관으로 국제협력체제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사무분장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어업협정의 체결/운영에 관한 사항(한일, 한중 제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관련업무를 총괄/조정, 국제수산기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 외국주재 공무원의 업무 지도/감독, 공무원의 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무역진흥담당관은 수산물 수출·입 정책의 수립/조정, 세계무역기구와의 수산분야 협정이행에 관한 사항, 수산물 수출개발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수산물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수산물 교역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원양어업담당관은 원양어업진흥 및 정책자금의 지원/운영에 관한 사항, 해외어장개발 및 합작투자에 관한 사항, 원양어업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원양어업 생산계획의 수립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원양어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이행상황 평가

IPOA 제28조의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13개국가의 양자간 어업협정을 맺고 있다. 각각의 어업협정서에는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조항들이 있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음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도 동 기구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면, 조업이 불가능함으로 이를 지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향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면 이를 준수하면 될 것이다.

다음으로 IPOA 제30조의 최초의 공식창구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업무분장에 따라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분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의 협력 문제는 별도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IUU어업을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2. 기국의 책임

가. 어선의 등록

1) 이행상황 분석

□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제34조~제36조)

IPOA 제34조~제36조에서는 자국 국적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못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어선 등록 전(前)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은 자국적 부여를 회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선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어선검사를 마친 어선은 등록 및 등기를 하여 한다. 「선박등기법」에 따라, 20톤 이상의 경우는 '등기'(선박국적등록신청)를 해야 하며, 20톤 미만의 경우는 '등록'(어선등록신청)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등기'와 '등록'을 담당하는 관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인천시의 경우 구·군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고, 부산시는 등기(선박국적등록신청)는 시에서 하고 등록은 조업근거지(선적항)에서 하고 있다. 등록 및 등기 신청에 따라, 20톤 미만의 경우에는 '선적증서'를, 20톤 이상의 경우는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으며, 증서발급시 기존 선박이 약속된 대로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한다(어선법 제13조).

어선등록 신청등의 경우는 어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③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표 5-60> 우리나라의 어선등록 법령 현황

구분	내 용	어선법
어선의 등기와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소유자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 ※ 총톤수 20톤이상 : 선박국적증서, 총톤수 20톤미만 : 선적증서를, 총톤수 5톤미만의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을 각각 교부<개정 2002.1.14> 	어선법 제13조
등록의 신청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 -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 선박등기부등본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 -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이 말소 또는 상실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등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어선원부에 기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어선법시행규칙 제23조
등록업무의 실적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고, -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어선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등록업무 등의 확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 	어선법시행규칙 제73조

등록사항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어선원부에 기재(어선법시행규칙 제23조), 등록업무의 실적보고에서는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

적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어선법시행규칙제72조,제1항), 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어선법시행규칙 제73조).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어선법/시행령/규칙 등에서는 한국국적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못하도록 보장 즉, 어선 등록 전(前)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과 관련하여 어선등록 전(前)의 경우는 미등록 및 무등록 어선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⁵⁰⁾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의 자국적 부여 회피 규정과 관련해서는 수산업법 제34조에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업을 제한 또는 정치/어선을 계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은 IUU어선에 대한 등록자체를 회피하는 규정은 아님으로 IUU어업 전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금지, 어업허가를 받은 후 IUU어업에 종사한 경우 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및 신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UU어업 종사의 경중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용선어선(또는 FOC)의 IUU어업종사 금지 보장 등(제37조~제39)

자국 용선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장(제37), 자원보존관리조치 불이행목적의 국적 변경/동기부여 금지(제38조), 국적회피 목적의 반복적인 변경 예방을 위한 조치(39조)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검토하면

50) 어선등록전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등록 및 허가 요건이 갖추어야 등록/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근해어업은 시도별로 정한수가 책정되어 있고, 무등록 및 미등록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제도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들 불법어선들간의 문제일 것이다.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용선이란 어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선박을 일정기간 소유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대여받아, 선장/승무원/선용품 등 조업 및 운항에 필요한 일부 및 전체비용을 임차인인 어업자(개인 또는 법인)가 선박 전체를 대여받아 조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나용선계약을 의미한다.

용선어선은 외국적 어선을 임차기간 동안 용선자의 명의로 관리/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허가대상이 아니고 선박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선박매매, 담보제공 등 소유권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용선어선은 국적어선이 아니므로 불법조업 등에 대한 아국의 단속, 제재조치 등의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양어업관련 지원 및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용선기간 동안 임차료를 지불하고 용선자 명의로 운영하다 계약기간 종료시 외국의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박이다.

우리나라의 용선 유형 및 현황을 살펴보면, 어선용선의 유형은 자국의 어업자가 타국 소유선박을 제3국에 편의치적하여 제4국의 선박관리인을 통하여 제5국의 용선인으로 용선하는 등 여러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경우에도 법인의 경우에 소재지 및 소유관계에 따라 다시 복잡한 형태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크게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자국어선이 아니면 조업이 불가능한 특정국가에 조업하기 위해 조업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입어료의 절감을 위해 조업국가의 국적을 취득, 입어허가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형태로 대부분 용선어선이 이에 해당되며, 인도네시아/멕시코 등의 국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어선 또는 선박의 실소유자가 한국인인 경우다.

둘째, 상대국 국적어선을 한국인이 일정액의 용선료를 지불, 일정기간 용선하여 운영하는 경우로(멕시코), 대체적으로 국적 취득이 편의한 제3국적선(파나마, 혼두라스, 벨리제 등)을 한국인이 TIME CHARTER 형식으로 용선하는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입어실태를 고려하여, 3가지 형태로 입어 유형별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용선형태의 원양어선은 총 509척중에서 75척(2001.02 기준)으로 약 15%가 이에 해당된다.

첫째, 입어하고자 하는 국가외 제3국의 어선을 일정기간 용선하여 입어하는 경우로, 일반적으로 단순입어가 가능한 대서양트롤, 오징어채낚기, 북양트롤어업에서 운용(대부분 파나마, 혼두라스, 벨리제 등의 국적임)하는 사례이며, 이에 해당되는 원양어선은 39척(52%)이다.

둘째, 입어국 국적어선을 일정액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용선하여 입어하는 경우이다. 이는 대부분 어업협력용으로 멕시코 등에 입어하여 조업할 때이며, 해당되는 원양어선은 11척(15%)이다.

셋째, 연안국의 수산정책에 따라 연안국의 국적이 아니면 조업불가할 경우, 우리 국적어선이 연안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입어하는 경우이다. 주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연안국 국적취득시 영해내 조업 입어료 절감 등의 혜택이 있으나 소유권 문제 등으로 피해볼 우려도 있다. 이에 해당되는 원양어선은 25척(33%)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입어하고자 하는 국가외 제3국의 어선을 일정기간 용선하여 입어하는 경우와 입어국 국적어선을 일정액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용선하여 입어하는 경우는 각종 국제 수산관련 협약에 위배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61> 우리나라의 용선의 유형 및 내용 (2001.12 현재)

용선의 유형	척수 (75척)	사 유	비고
- 입어하고자 하는 국가외 제3국의 어선을 일정기간 용선하여 입어	39척 (52%)	-일반적으로 단순입어가 가능한 대서양트롤, 오징어채낚기, 북양트롤어업에서 운용(대부분 파나마, 혼두라스, 벨리제 등의 국적임)	각종 수산관련 협약에 배치됨
- 입어국 국적어선을 일정액의 용선료를 지급하고 기간용선하여 입어	11척 (15%)	- 어업협력용(멕시코 등)	
- 연안국의 수산정책에 따라 연안국의 국적이 아니면 조업불가할 경우, 우리 국적어선이 연안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입어	25척 (33%)	- 주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연안국 국적취득시 영해내 조업 입어료 절감 등의 혜택이 있으나 소유권 문제 등으로 피해볼 우려도 있음.	-

주) 원양어선 총 509척

우리나라의 어선용선 현황은 2001년 12월 현재 전체 총 507척 중 해외트롤이 62척으로 가장 많고, 오징어채낚기 5척, 북양트롤 4척, 기타 4척의 순이며, 참치연승/선망어업은 없다.

해외트롤이 가장 많은 이유는 트롤은 어법상 연안국 EEZ내에서 조업하므로 연안국의 자국어선외에는 조업허가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업국적을 취득하여 조업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참치선망은 지역수산기구의 편의치적 금지압력으로 조기에 국적선화를 추진하여 편의국적선이 없다.

<표 5-62> 우리나라의 업종별 용선현황(2001.12 현재)

업종별	총 허가척수	용선척수	대비(%)	조업수역
계	509	75	15	
참치연승	193	-	-	남태평양도서국 및 공해, 인도양 공해
참치선망	27	-	-	남태평양도서국 및 공해
오징어채낚기	64	5	8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공해, 뉴질랜드
꽁치봉수망	23	-	-	일본 및 북양공해
해외트롤	147	62	42	
- 태평양	58	34	59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 대서양	70	24	34	기니, 시에라레온, 앙골라 등
- 인도양	19	4	21	오만, 파키스탄, 인도
북양트롤	30	4	13	러시아
기 타	23	4	17	

용선관련 국내외 국제동향으로 1986년 선박등록조건협약(원명칭은 198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ditions for Registration of Ships)은 등록조건으로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관계의 요소로 선박관리(강제규정), 선박소유, 선원배승(임의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1993년 FOC협정('93.11 FAO)에서 『공해상 편의국적 어선 규제협정』 채택)은 해양법 국제협약 제91조 관련, FAO 수산위원회에서 편의국적 어선 규제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99.2), 24미터 이상의 공해조업어선에 대한 허가부여, 조업조건 및 보존관리조치의 금지, 어선표지부착의무, 위반어선에 대한 제재

조치의 확보, 어획정보제공의무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역수산기구로는 '99.11 ICCAT 및 '99.12 IOTC 정례회의시 참치연승 어선의 비보고, 비규제어획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사항을 통과하였으며, ICCAT 회의시 편의국적선 명단작성 배포 및 향후 수입업자, 운반업자 등에게 FOC 선박에 의한 어획물 거래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표 5-63> 선박 국적 관련 국제협약 동향

협약명	선박 국적관련 주요 내용
선박등록조건 협약(1986년)	- 등록조건으로 선박과 기국간의 진정한 관계의 요소로 선박관리(강제규정), 선박소유, 선원배승(임의규정)을 규정
UN해양법협약 (제91조, 제92조)	- 모든 국가에 대한 자국국적 부여,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 게양 권리 - 국기 게양선박과 그 선박의 국적이 진정한 관계를 유지토록 규정 - 2개국 이상의 국기를 편의에 따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은 무국적선으로 취급
FAO편의국적 금지협정	- 관련 당국의 허가없는 자국어선 공해상 조업금지(제3조제2항) - 당사국의 허가받은 어선이 국기게양 중단시 공해조업허가 취소(제3조제4항) - 해양법 국제협약 제91조관련, FAO 수산위원회에서 편의국적어선 규제방안 강구('99.2) - 2000.12 현재 18개국 수락서 기탁(25개국 기탁시 발효) ※ 우리나라는 수락서 미기탁
UN 공해어족 보존관리 협정	- 자국국기 게양선박에 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경우에만 공해조업 참여 허가(제18조제2항) - 국제적으로 식별가능한 선박·어구 표시제도에 따라 어선 및 어구의 정체표시(제18조제3항)
기타 지역수산기구	- '99.11 ICCAT 및 '99.12 IOTC 정례회의시 참치연승어선의 비보고, 무규제 어획금지 촉구 결의 - ICCAT 회의시 편의국적선 명단작성 배포 및 향후 수입업자, 운반업자 등에게 FOC(Flag of Convenience) 선박에 의한 어획물 거래금지 촉구

이러한 편의치적 용선의 경우에 아국 수산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어업의 경우에 관리 및 단속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상의 애로가 있다. 불법어업의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불법조업의 방치로 인한 국제 비난가능성 및 국제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표 5-64> 편의국적(FOC) 용선어선의 문제점

구 분	문 제 점
관리 및 단속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상 애로	- 아국 수산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어업의 경우에 관리 및 단속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상 애로
불법어업의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음	- 불법어업의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불법조업의 방치로 인한 국제비난가능성 및 국제신인도 하락 가능성
지원불가	- 금융지원의 근거가 없으므로 인한 경영 및 운전자금압박, 단기사채의 유통 등으로 금융비용 증가, 채산성 및 경영수지가 악화될 우려
수산관련 협약에 배치	- 외국적 어선에 원양어업 허가를 하게되므로 각종 수산관련 협약에 배치되어 어업국으로서의 국제사회 신뢰 실추
원양용선선박(외국적선) 어획물에 대한 관세법 저촉우려(관세법 제2조)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하나(관세법 제2조제4항제2호) 제3국적선인 용선선박은 동법 제2조제3항에 의거 외국의 선박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포획된 수산물은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 수입에 해당되므로서 동법에 의한 위법 소지 논란 예상
편의국적선 어획물수입규제	- 일본을 중심으로 편의국적선 어획물에 대한 수입규제 추진
국적취득 경비 소요	- 국적취득을 위한 선박 국내회항에 따른 막대한 경비소요 (척당 2~10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어선법 개정('99.2.8)으로 선박용선제도에 대한 『어선양도등의허가요령등』 해수부 고시를 폐지하였고('99.5.24), 동 제도 폐지가 등록제도가 없어지고 어선법에 근거 '어선양도등의허가요령'을 신설하여 용선기간 동안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 선박으로 가등록하여 원양어업허가를 주고 있다. 즉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용선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용선어선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5> 우리나라의 용선제도 개선

구 분	세 부 내 용
국내회항 않고 선박등기 및 국적을 부여	○ 용선선박에 대하여 국내회항을 하지 않고 선박등기 및 국적을 부여 - 용선선박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선박등기시 수입면장 대신 관세청 발행 「선박미수입사실신고확인서」로 대체 ※ 용선선박 국적취득 절차 • 업체신청→해양수산부 확인→관세청 「선박미수입사실신고확인서」 발급→법원 소유권 등기→시·도 어선등록(국적취득)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허가	○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허가

□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상호보장(제40조)

IPOA 제40조에서는 비록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들(어업허가/자국 국적부여 거절 등)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등록부의 운영과 국가가 유지하는 어선기록사이에 연관성 보장, 그러한 기능이 한 기관에 의해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는 그러한 기능에 책임있는 기관들간의 충분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은 먼저 어선의 등록/허가에 있어서, 연안 및 구획어업은 등록/허가가 동일하나(시/군/구), 근해어업의 경우는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 원양어업에 있어서는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로 각기 분리되어 있다.

어선 등록 등의 통보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법 제13조·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실적보고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보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등록업무등의 확인/점검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

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3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및 신고수리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선의 등록과 허가업무가 기관별로 구분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계기관간의 통보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등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등기/등록/허가 등의 어선기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66> 우리나라의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 발급 기능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어선등록	-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출항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선적항 중심
어업허가	- 연안 및 구획어업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근해어업 : 시·도지사에게 제출 - 원양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어업의 특성에 따른 행정관청 중심
차이점	○ 연안 및 구획어업 : 등록/허가 동일 ○ 어업허가 - 근해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 - 원양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	-

2) 이행상황 평가

IPOA 제34조~제36조의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와 관련, 우리나라는 수산업법 제34조에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업을 제

한 또는 정지/어선을 계류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서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IUU어선에 대한 등록자체를 회피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의 국적 부여 회피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인 자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POA 제37조의 용선어선의 IUU어업 종사 금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허가를 해주고 있고, 용선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7년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용선어선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IPOA 제40조의 선박등록/허가장 발급 기능 상호보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연안 및 구획어업의 경우는 등록/허가 동일(시/군/구), 근해어업의 경우는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이다. 또한 원양어업의 경우는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선의 관리 강화 및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 기능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표 5-67> 어선의 등록 관련 이행상황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34조 ~제36조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	-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함	-	○
제37조 ~제39조	용선어선(또는 FOC)의 IUU어업종사 금지 보장 등	-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 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허가 → 용선기간 5년 고려, 2007년 이후 용선어선이 없어짐	-	○ (추진중)
제40조	선박등록/허가장 의 발급기능 상호보장	○ 연안 및 구획어업 : 등록/허가 동일 ○ 어업허가 - 근해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 - 원양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 → 등록 및 허가의 통합필요	-	○

나. 어선의 기록

□ 어선의 기록(제42조)

IPOA 제42조에서는 자국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할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해상 어업허가를 받는 어선(허가받지 않은 어선도 포함, IPOA 제43조)에 대하여는 1993 FAO 이행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 포함⁵¹⁾ 또한 ① 이전 선박의 이름 ② 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③ 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④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⑤ 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에 의한 그 선박에 의한 비이행(non-compliance) 기록 ⑥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 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51) ※ FAO 이행협정(93)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

- 당사국은 제IV조에 의거 유지되어야 할 기록부에 기입한 어선에 대하여 FAO가 아래와 같은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a) 어선의 이름, 등록번호, 종전에 사용했던 이름들(알려져 있는 경우에), 등록항구 (b) 종전국적(있는 경우에) (c) 국제 무선호출부호(있는 경우에) (d) 선주(들)의 이름 및 주소 (e) 선박 건조의 장소 및 일시 (f) 어선의 종류 (g) 길이 제2항 각 당사국은, 가능한 정도까지.
- 제IV조에 의거, 유지되어야 할 기록을 기입한 어선에 대한 다음과 같은 부수적인 정보를 FAO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a) 관리자(들)의 이름 및 주소(있는 경우에) b) 어업방식 (c) 선박의 길이 (d) 최대폭 (e) 총 등록 톤수 (f) 주기관 또는 기관들의 출력

<표 5-68> 우리나라의 어선등록사항 및 어업허가장의 기재사항

구분	세 부 내 용	
어선원부 등록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어선원부에 기재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범장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14. 기관의 종류·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어선법시 행규칙제 23조
어업허가 대장의 기재사항	-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한 경우 - 제18조·제21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사항 또는 어업신고사항을 변경하여 허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폐지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 - 허가를 받은 당해 어선·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매매·임대 또는 대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허가를 한 경우	어업허가 및신고등 에관한규 칙 제34 조의2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박등기부등본이나 어선원부 등에 ①~⑤까지는 똑같은 것은 없지만 유사한 기록들을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⑥어선의 사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어업허가

1) 이행상황 검토

□ 어업허가장 소지 문제(제45조 및 제46조)

IPOA 제45조 및 46조에서는 기국은 선적을 부여한 자국 국적의 선박이 유효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하고, 선박은 어업허가장이 선상에 소지하도록 요청된 장소에서는 그 허가장을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선의 허가장 소지에 대하여 수산산업법제52조제1항10호 및 수산자원보호령제25조(면허/허가등에 관한 증서 휴대 의무, 96.12.31 법령공포일)가 1999.04.15 해양수산부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되었다.⁵²⁾

먼저 연근해어선의 어업허가장 소지 문제는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폐지되었는데, 이를 부활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업허가장이 없어도 어선등록증을 각 개별 어선들이 소지하게 되어 있고, 단속공무원들이 어선에 대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행정규제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여야만 하는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는 비록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으로 소지의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업국의 입장에서는 연안국의 EEZ입어시,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 조업시, 향후 공해상 등에서 어업허가장의 소지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양어선의 경우는 어업허가장 소지를 의무화하여, 타국 및 타 해역에서의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2) 폐지 조항 : 어업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어업을 경영할 때에는 어업의 면허/허가증 등을 휴대하여야 하고, 수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공장안에 해당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비치하여야 함

다만, 이 문제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지 않고, 관련어업인들이 또 다른 행정적인 규제라는 반발도 예상됨으로 관련어업인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어업허가장 소지 관련 제도를 신중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69> 우리나라 어선들의 어업허가장 및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어업허가장 소지	- 수산업법제52조제1항10호 및 수산자원보호령제25조(면허/허가등에 관한 증서 휴대 의무, 96.12.31 법령공포일)가 1999.04.15 해양수산부 '98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됨	소지의무폐지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어선안에 비치하여야 함.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어선법제15조

□ 어업허가장 발급조건(제47조)

IPOA 제47조에서는 허가장 발급된 조건들을 ①VMS ②어획보고조건(선박별 시간별 어획 및 노력 통계, 각 어기에 적합한 어종별 수, 순중량, 또는 총어획량, 보고된 어류투기 통계가 어법에 적합하는 노력 통계, 조업위치, 조업일시 및 조업활동에 관한 기타통계) ③전재가 허용된 경우 전재 보고 및 다른 조건 ④오퍼버의 수행사항 ⑤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 ⑥경계 및 제한수역과 관련한 이행을 보장할 항해장비 ⑦해사안전/해양환경의 보호, 그리고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규를 이행 ⑧어선의 표시/확인을 위한 FAO 표준상세/지침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서 어선에 표시(어구포함) ⑨기국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수산업 약정을 이행 ⑩어디서나 가능하고 고유

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확인번호를 가진 선박(그 확인번호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등록이나 이름의 변경에 관계없이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함) 등이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업허가장 발급 조건에 이러한 상세 규정으로 없으나, ⑧어선의 표시/확인을 위한 FAO 표준상세/지침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선의 표시에 대해서는 수산업법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 어선표지 설치 명령,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표지의 설치)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선의 표시와 관련된 국제적인 의무와 국내 현황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각 국제기구에서 FAO 표준 어선표시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IUU 어업방지 행동계획(2001.3.2)에서 뿐만 아니라,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95.8.4), 편의국적금지협정('93.11.24) 등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표 5-70> 어선표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국 제 규 범	조 문	비고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95.8.4)	제18조	
편의국적금지협정('93.11.24)	제Ⅲ조 6	
IUU어업방지 행동계획(2001.3.2)	제47조8	

여기에서 FAO 표준 어선표시 내용은 어선표시의 기준, 무선국 호출부호 부여 방법, ITU 부여 부호, 각체신청 부여 부호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표 5-71> FAO 표준 어선표시 내용

구분	세 부 내 용
기준	- 무선국 호출부호를 어선의 좌우현 및 상부구조물상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 - 어선의 규모에 따라 표지크기 규정
무선국 호출부호 부여 방법	- 국제통신조합(ITU)이 우리나라(기국)에 부여한 부호에 이어서 각지방체신청에서 뒷자리 부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ITU 부여 부호	- 어선의 경우 7개 부호 HL, 6K, 6L, 6N, 6M, DT, DS(부호는 2 자리이며 모두 대한민국을 의미함)
각체신청 부여 부호	- 2자리 또는 3자리를 중복되지 않도록 영문 알파벳에 숫자 포함 (예, 6MWD, 6NSR, DTBF5, DSFS4) ※ 현재 DT, DS만 사용(이외 부호는 사용 종료)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어선 표시 실태 및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2001년 12월 현재 원양어선 총 507척중 360척(약 70%)이 FAO 표준기준에 따른 어선표시를 이미 마쳤다. 참치연승 및 선망, 북양트롤, 오징어채낚기 등 대부분의 어선이 FAO 표준기준에 따른 어선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거법은 수산업법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에서 어선표지 설치 명령,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표지의 설치)에서는 어선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 식별 표지를 설치, 어선 표지규격 및 형태와 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 5-72> 우리나라 원양어선 어선 표시 실태 및 근거법령

구분	세 부 내 용
어선 표시 실태	- 참치연승 및 선망, 북양트롤, 오징어채낚기 등 대부분 표시 (507척 중 약 360척 표시, 2001.12기준)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 어선표지 설치 명령 -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제3항(표지의 설치) · 어선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 식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어선 표지규격 및 형태와 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FAO 표준 어선표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연·근해어선의 경우는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99-17호)에 의거 어선표시를 하고 있으나 원양어선은 제외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원양어선 식별표시는 연·근해어선 표시방법과 달라 별도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을 추진중에 있다.

즉 원양어선표지규격 및 부착요령에 대해서는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에 반영하여 2003.3.1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 이유는 각 국제수산기구의 어선표시 사항은 현 시점에서 이행의무는 없으나 앞으로 동 사항 이행이 불가피 하며, 또한 어선표시는 어선수리시 하여야 하므로 어선수리 시기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5-73> FAO 표준 어선표시 추진계획

구분	세 부 내 용
추진목적	- 각 국제기구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원양어선 식별 표시에 대한 고시 제정 시행
어선 식별표시 주요내용	- 대상어선 : 원양어선 허가어선 - 어선 좌현 및 우현 또는 상부구조물에 무선국호출번호를 표시 - 원양어선 규모에 따라 표지크기 및 표시방법
시행시기	- 각 국제수산기구의 어선표시 사항은 현 시점에서 이행의무는 없으나 앞으로 동 사항 이행이 불가피 하며 - 또한 어선표시는 어선수리시 하여야 하므로 어선수리 시기 등을 감안 2003.3.1부터 시행(원양어선표지규격 및 부착요령에 대해서는 “원양어선표지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에 반영) ※ 어선표시에 따른 소요비용 : 척당 10만원 정도 ※ 연·근해어선은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99-17호)에 의거 어선표시를 하고 있으나 원양어선은 제외되어 있음, 원양어선 식별표시는 연·근해어선 표시방법과 달라 별도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

자료 : 해양수산부 원양어업과

□ IUU어선 재공급/해상전재 제한 문제(제48조, 제49조)

IPOA 제48조에서는 기국은 자국의 어떠한 선박도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전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UU어선에 재공급/전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관련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재 관련규정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제3항에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정은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전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어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IUU어업 금지에 대한 법/제도적인 장치 및 IUU어업자들에 대한 Data-Base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완전 가동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어업의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도달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제49조에서는 기국은 해상 전재에 관련된 모든 자국의 조업/운반/지원선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전재를 위한 사전 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가수산기관/기타 지정된 기관에 ①해상에서 모든 어류전재의 일자/위치 ②전재된 어획물의 어종별/포획수역별 중량 ③선명/선박의 등록/국적/전재와 관련된 선박들의 확인과 연관된 기타 정보 ④전재된 어획물의 양륙항 등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해상전재 문제는 원양어업에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 내 이빨고기 어획제한과 관련하여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는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시 합의된 규정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획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도 규정을 잘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상 전재에 관련된 모든 자국의 조업/운반/지원선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전재를 위한 사전 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가수산기관/기타 지정된 기관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지켜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부문도 우리나라의 어업여건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5-74> 우리나라의 전재관련 법령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관련법규
어업협정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 3.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실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수산자원보호령제27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이빨고기 어획제한	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협약수역내에서 이빨고기류(Dissostichus, spp.)를 어획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2. 조업선박이 어획한 이빨고기류를 양륙하거나 전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이빨고기어획증명서』를 작성 3. 조업선박은 전재 및 양륙하기 위해 작성한 어획증명서를 가장 빠른 전자적인 통신 수단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국확인번호를 부여받아 어획증명서에 기입 4. 조업선박은 어획한 이빨고기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선박에 전재한 경우에는 작성된 어획증명서에 어획물이 전재된 선박의 선장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양륙한 경우에는 양륙지의 책임있는 관리 및 어획물을 수령한 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재 및 양륙한 조업선박은 이용 가능한 가장 빠른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조업선박의 선장이 서명한 어획증명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어획물을 수령한 자에게 어획증명서 사본을 제공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 관한고시 제7조

□ 어획/전재 정보(제50조)

IPOA 제50조에서는 기국은 “어획/전재보고로부터의 정보를 수역/어종별로 누적하여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지역/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재보고 관련은 이미 언급하였기 때문에 어획보고에 한정하여 우리나라의 현황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어획보고는 수산업법 제77조(자원의 조사 및 보고),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3제5항(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실적보고),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5조~제8조(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보고),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제6조~제8조) 등에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획보고로부터의 정보를 시기 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관련 국가/지역/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하나,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5-75> 우리나라의 어획보고 관련 법령

구분	세부내용	조항
자원의 조사 및 보고	① 어업권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육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당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관청에 보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대상어업 기타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	수산업법 제77조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실적 보고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어업자별로 배분량을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포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의3제5항
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보고	○ 원양어업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내 기지식 어선의 경우에는 매항차 종료후 30일 이내, 해외 기지식 어선의 경우에는 매항차 종료후 6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원양어업의 보고서를 제출(제5조제4항)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5조
	○ 연근해어업 - 제5조 : 5톤이상→ 입항후 3일 이내에 수협조합장, 시군구청장 등에게 보고, 5톤이하 → 월별로 시군구청장에게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과 인접국간의어업협정에 의한 인접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는 당해 협정이 정하는 보고방법 및 보고시기에 따라 관할 어업무선국장에게 어획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어업무선국장은 보고받은 어획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제6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7조
	- (보고서의 용도)이 규칙에 의한 보고서는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제8조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 현황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함 ②수산업법에 의하여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8조

2) 이행상황 분석

IPOA 제45조 및 제46조에서의 어업허가장 소지의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존에 어업허가장 소지의무가 있었으나, 동 의무가 규제정비계획 차원에서 폐지되었다(99.4). 따라서 동 사안과 관련하여 연근해 연근해어선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불법어선의 단속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함으로 이를 다시 부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는 비록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으로 소지의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업국의 입장에서는 연안국의 EEZ입어시,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 조업시, 향후 공해상 등에서 어업허가장의 소지를 요구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큼으로 어업허가장 소지의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업허가장 발급조건 관련 우리나라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IPOA 제47조 제8항 및 제10항에 언급되어 있는 FAO 표준 어선표시와 국제적으로 확인된 번호의 경우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추진중(2003.3.1시행)이나,⁵³⁾ 그 이외의 대부분 조항들은 어업허가장 발급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 특히 허가장 발급시 조건들중에서 ①VMS ②어획보고조건 ③전재가 허용된 경우 전재보고 및 다른 조건 ④옹저버의 수행사항 ⑤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 중에서 허가장 발급 조건과 별도로 일부 추진중인 것도 있으나, 허가장 발급시 조건에 이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업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양어업부터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난 이후,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TAC제도의 정착,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감척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중장기적으로 어업이 선진화되는 단계에서 도입해야 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POA 제48조 및 제49조의 IUU 어선에 재공급/전재 금지율 보장하는 법제도적인 장치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어업여건상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IPOA 제50조의 어획/전재 정보와 관련해서는 현행

53) 원양어선표시크기및표시방법등에관한고시제정(2002.11.15),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88호

국내 규정이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표 5-76> 어업허가 관련 이행상황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45조 ~제46조	어업허가장 소지 의무	- 어업허가장 소지의무 폐지됨 - 원양어업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제47조	어업허가장 발급조건	- FAO표준어선 표시 : 509척 360척 부착 (약 71% 완료) - 2003.3.1부터 시행(원양어선표지규격 및 부착요령에 대해서는 “어선표지판규격 및부착요령”에 반영)	-	○
제48조 ~제49조	IUU어선 재 공급/해상전 재 제한	-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
제50조	어획/전재 정보	- 국내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어 개선 필요	-	○

3. 연안국의 조치

IPOA 제51조에서는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안국이 국내법규 및 국제법과 일치하게 검토하여야 할 조치 중에는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① EEZ내 MCS ② 타국/지역수산관리 기구와 정보 교환 및 협력 ③ 어업허가증 소지 조업 ④ 기록사항 기입한 후 어업허가증 발급 ⑤ 조업일지를 유지 ⑥ 어류제품을 전재/가공 연안국의 허가, 적절한 관리규정 적용 ⑦ IUU어업 방지 자국수역의 입어를 규정 ⑧ 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자국수역입어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EEZ내에서의 MCS 문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⁵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시행중에 있다. 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정보의 교환 및 협력 문제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일본, 중국과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떠한 선박도 연안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증 없이 자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우리측 EEZ에서의 조업은 사전 입어어선 통보 등을 통하여 해당국에서 통보한 합법적인 어선만 조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어선의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한·일, 한·중 어업협정서에 의하여, 일본어선이나 중국어선의 경우 우리측 EEZ에서의 조업시 조업일지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반대로 우리측 어선이 일본이나 중국측 EEZ 수역에서 조업시도 마찬가지로이다. EEZ에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을 전채 및 가공할 경우, 우리측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관리규정과 일치하여 행해짐을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측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일본과 중국어선 뿐이고, 우리측 어선도 이들 국가 EEZ에 상호 입어하고 있으므로, EEZ내 전채 및 가공 문제에 대해한중일간 상호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UU어업 전력(前歴) 어선의 자국수역입어 금지도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현재 3국간 상호 입어증임으로 우리측에서 IUU어선 입어금지시, 일본이나 중국측에서도 똑같이 할 경우 어느것이 실익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4. 항구국의 조치

IPOA 제54조~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구국의 조치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행하고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조업국의 입

54) 제5장 제2절중 1. 모든 국가의 책임(감시/감독/통제(MCS)) 참조

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항구국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스페인의 경우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리스트에 오른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EU는 어선에 의한 항구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항구국의 권리 및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개발할 국제회의 개최를 추진중에 있다.

다음으로 호주는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개발을 주도한 나라로 이미 기존의 법제에 행동계획의 많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즉 Risk-based 어업감시 및 이행 체제를 개발하여 육상과 상공에서의 검색, 항구에서의 어획량 하역 감시, VMS와 같은 기술적 장치와 어획량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검사 등을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항구에 입항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정책지침을 마련하였고, 호주 어업관리당국은 입항어선에 대하여 허가장을 줄 수 있으며, IUU어선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국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칠레는 조업한 수산물의 환적 또는 수산물 수입을 위해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입항통제를 비롯하여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된 어종만 입항하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어선이나 중국어선이 입항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도 양자간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시 긴급피난 등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안국의 EEZ 및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 등에서 조업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항구국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보다는 원양어선들의 조업국 입장에서 외국의 항구국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시장관련 조치

IPOA 제66조~제74조는 관련 지역수산물 관리 관할수역에서 IUU어선 어획물에 대하여 어획부터 판매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수입/유통을 금지시키자는 광범위한 조치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관련 조치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동의한 조치도 국내고시 등에 반영이 되어있다. 예를 들면 CCAMLR에서 2000. 5. 7 채택한 보존조치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에 따르면 이빨고기의 어획과정에서 소비까지 모든 경로마다 일정한 서식(어획증명서)에 기록·확인하여 그 사본을 위원회 사무국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선적국이 발행한 어획증명서 미첨부시 동 기구 회원국은 이빨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방참다랑어위원회(CCSBT)에서는 '99. 11월 제6차 연례회의에서 “무역정보제도(Trade Information System)”을 채택하였다. 2000. 6. 1부터 남방참다랑어를 수입하는 CCSBT 회원국은 CCSBT 사무국에 등록된 통계서류 및 재수출 증명서를 첨부한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시키기로 결의함에 따라 남방참다랑어 어획물의 전량을 CCSBT 회원국인 일본에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통계서류를 미부착한 제품은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 국내조치로서 이와 같은 사항을 “국제수산물기구의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에 반영하여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EU는 국제어업협정을 위반하여 어획된 수산물의 교역을 금지하고 IUU 어획물을 불법화하는 조치 채택, IUU어업에 대한 일반인, 소비자, 업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는 노력 등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장관련 조치는 다른 조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조치임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관련된 인프라(국내외 포함)를 구축한 이후에 국내제도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지역수산물관리기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조치는 원양어선들이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다.

예를 들면 CCAMLR(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 수역에서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협약수역내에서의 IUU어업과 관련하여, 이빨고기 조업선 VMS설치하여 조업하고 있다. 또한 관련 지역 수산물관리기구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국별 종별 FAO 해구별 어획량(Nominal Catch : NC) 및 해구별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Catch and Effort : CE)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양 다랑어위원회(IOTC),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SCTB(다랑어류 및 새치류 상임위원회)에 다랑어 연승어업 및 선망어업 관련 자료(어획량, 노력량, 생물학적 자료 및 조업선 자료 등), CCAMLR 및 CBSPC(중부베링해 명태자원 보존협약)에 남극 파타고니아 이빨고기, 베링해 명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동 IPOA의 내용들은 먼저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회원국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난 이후 회원국들에게 요구할 사안들이지, 개별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추가로 합의된다면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안)

제1절 계획수립의 목적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제25조에서는 각 국가들은 국제행동계획의 채택 후 적어도 3년 이내에 국제행동계획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국별 행동계획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는 IPOA의 채택한 후 3년 이내에 IPOA의 목표를 더 성취하기 위해 국별 행동계획들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각 국가들은 이 기간 내에 국제행동계획의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 국가들이 이러한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조치를 위한 이행하기 위한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제26조에서는 국별 행동계획의 채택 후 매 4년마다 국가들은 이러한 국별 계획의 이행을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최소한 국별행동계획의 채택 4년후에 국가는 계획의 경제적인 전략을 확인하고, 동 IPOA 제6부상에 FAO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계획의 이행을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제87조에서는 각 국가들은 FAO의 책임있는 수산업을 위한 규범에 관하여 매 2년마다 FAO에 보고하는 것의 일부분으로서 IUU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사항을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이러한 각국의 FAO에 대한 보고는 FAO에 의하여 발간된다.

마지막으로 제93조에서는 FAO 수산위원회가 사무국에 의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IPOA의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2년마다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6-1> FAO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이행/점검

주요내용	기간	비고
국별 행동계획 개발 및 이행 (동 계획 채택후 3년이내)	2004년 2월이내	IUU국제행동계획 2001년3월 채택 (제25조)
국별 계획의 이행/재검토	2005년 2월(1차) (채택후 적어도 4년 마다)	제26조
FAO에 2년단위 보고의 일부분 으로서 FAO에 보고	2년단위 보고	제87조
FAO수산위원회 분석	2년마다 평가	제93조

이와 같이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은 2004년 2월이내에 우리나라의 행동계획을 마련해 이행하여야 하고, 채택 후 4년마다 우리나라의 계획에 대해 이행 및 점검, FAO에 2년 단위 보고의 일부분으로서 IUU어업방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행동계획의 이행사항 FAO에 보고 등 동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 연구에서는 그 첫번째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의 행동계획에 대한 개발/이행, 국제행동계획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가 되도록 조정, 각 국가들이 이러한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실천(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내행동계획(안)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비단 그것이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시각을 좀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UU어업 규제에 동참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조업활동 위축 방지할 수 있고 둘째, 국제행동계획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회피가 가능하여 지며 셋째,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고 넷째,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추세를 계기로 하여 국내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절 국제행동계획 세부 실천(안)

본 절에서는 제5장2절을 통하여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중 모든 국가의 책임, 기국의 책임, 연안국 조치, 항구국 조치, 시장관련조치,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분석한 기초에 근거하여 접근하였다.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제16조~제19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제20조), 제재조치(제21조), 비협력국(제22조), 경제적 유인(제23조), MCS 운영 및 기획(제24조제6항), MCS 업계의 이해 및 참여(제24조제6항), 지역수산물기구(제78조~제82조) 등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제11조(지역수산물기구 가입), VMS이행(제24조제3항), 읍저버 프로그램(제24조제4항), MCS D/B 구축(제24조제9항), 자국어 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제34조~제36조),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 기능 상호보장(제40조), 어선의 기록(제42조), 어업허가장 소지의무(제45조~제46조), 어업허가장 발급 조건(제47조), IUU어선 재공급/해상전재 제한(제48조~제49조), 어획전재/정보(제50조), 항구국의 조치(제53조~제63조), 시장관련 조치(제66조~제74조) 등은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6-2 참조).

참고로 동 연구에서는 보고서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미 법적 준비를 마쳐 추진 중인 것도 포함하여 가능한 많은 내용을 분석코자 노력하였다.

세부실천계획 수립 절차는 먼저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이행 및 정비근거,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이행 및 정비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정비내용 및 추진일정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실천(안)을 제시하였다.

<표 6-2> IPOA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이행 상황 분석 및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여부	
			불필요	필요
제11조	-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 96.1 가입	○	-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가입	- 미가입	-	○
	- 편의국적금지협정 가입	- 미가입	-	○
제12조	-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 대부분 준수하고 있으나 어업 통계자료 일부 미비	-	△
제16조 ~ 제19조	법규 및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 불법어업에 대한 법적인 통제는 잘 되어 있음	○	-
제20조	공해상 IUU어업관련 무국적 선박	- 어선의 등록 및 허가를 득해야만 공해상 출어가 가능	○	-
제21조	제재조치	- 사법처벌(법무부), 행정처분병행 등 매우 강력한 제도시행	○	-
제22조	비협력국	- 미가입 지역수산기구라도 협력하고 있음	○	-
제23조	경제적유인 (보조금지원회피)	- 불법어업자 각종 지원(면세유류, 영어자금 해외생산지원자금 등) 배제 제도 시행중	○	-
제24조제1항	어업허가제도개발	- 불법어구 및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	○
제24조제3항	VMS 이행	- 원양어업 : VMS 58%장착 완료(01기준) - 연근해어업 : VMS 장착 전무	-	○
제24조제4항	옵저버 프로그램	- 원양어업 : 필요시 운영 중 - 연근해 : TAC제도시행을 위한 초기 단계(9명)	-	○
제24조제5항	MCS 운영 및 기획	- 해수부/국방부/검찰청/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관계부처간에 공조체제 구축, 육상/해상/공중을 연계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주요골자로 하는 「어업질서확립대책」을 수립/법정부적 차원 적극 추진 중	○	-
	MCS기금 조성	- 어업질서확립자금 운용중 - 어구 반납/폐기/소각함으로써, 당사자/동종 어업인들에게 소형기선저인망의 위법성/정부 근절대책에 폭 넓은 공감대 형성 및 자원보호 필요성 제고 기여 - 일부 운영상 문제점	-	△ (문제점 보완)

<표 계속> IPOA의 우리나라 이행 상황 분석 및 평가(계속)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여부	
			불필요	필요
제24조제7항	MCS 업계이해 및 참여	- 수협중앙회에서 매년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 자체 수립 관계 기관의 협조하에 추진중	○	-
제24조제9항	MCS D/B체계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별로 불법어업자 대장은 별도로 있으나 D/B는 미구축		○
제34조 ~ 제36조	자국어선 IUU어업 종사 및 지원 회피	-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함	-	○
제37조 ~ 제39조	용선어선(또는 FOC)의 IUU어업종사 금지 보장 등	-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 국적취득 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허가 → 용선기간 5년 고려, 2007년 이후 용선어선이 없어짐	-	○ (추진중)
제40조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상호보장	○ 연안 및 구획어업 : 등록/허가 동일 ○ 어업허가 : 근해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 - 원양어업 :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 → 등록 및 허가의 통합필요	-	○
제42조	어선의 기록	○ 어선의 사진 등은 보완이 필요	-	○
제45조 ~ 제46조	어업허가장 소지의무	- 어업허가장 소지의무 폐지됨 - 원양어업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제47조	어업허가장 발급조건	- FAO표준어선 표시 : 509척 360척 부착(약 71% 완료) - 2003.3.1부터 시행(원양어선표지규격 및 부착요령에 대해서는 “어선표지판규격및부착요령”에 반영)	-	○
제48조 ~ 제49조	IUU어선 재공급/해상전재 제한	-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없음	-	○
제50조	어획/전재 정보	- 국내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용도이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개선 필요	-	○

<표 계속> IPOA의 우리나라 이행 상황 분석 및 평가

IPOA	조 문 내 용	이행상황	추가조치 여부	
			불필요	필요
제53조 ~제63조	항구국의 조치	- 조업국의 입장에서 연안국의 동향 파악 어업인 통보 등 필요	-	○
제66조 ~제74조	시장관련조치	- IUU어선 어획물 시장관련조치 및 수출입 금지 문제 검토 필요	-	○
제78조 ~제82조	지역수산기구	- 지역수산기구에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합의 때는 이를 준수하면 됨	○	-

1. 모든 국가의 책임

가. 국제제도 적용

유엔공해어족협정(95) 및 FAO 이행협정(93) 가입 장려

1)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 가입 추진

○ 가입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12조

-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에 가입토록 되어 있음

○ 가입의 필요성

- 향후 동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의 비준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그 이유는 2001년 11월, 제56차 유엔총회시 동 협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고,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WCPFC)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동 협정 가입에 대한 압력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임

※ 2001년 11월 11일 몰타가 가입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협정의 규정에 따라 한달 후인 2001년 12월 11일자로 협정이 발효(가입당사국에 대하여만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서명만 함(미비준 상태임)

○ 가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동 협정은 승선검색이라는 강력한 자원보존관리조치 집행수단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큼. 즉 공해상에서의 승선 검색 규정이 남용될 경우 우리 원양어선 조업에 막대한 지장 및 조업 위축이 우려됨
- 따라서 국제동향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비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준시기는 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 가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비준 불가임

○ 추진 일정

- WCPFC(중서태평양고도회유성어족보존협약)의 개선추진과 연계 및 일본, 중국 등 여타 조업국은 현재 비준불가 입장이므로 이들 조업국과도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가 있음

2) 편의국적금지협정 가입 추진

○ 가입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12조

- 편의국적금지협정(FOC)에 가입토록 되어 있음

○ 가입의 필요성

- 우리의 원양어업이 안정적인 조업어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는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어업자원관리에 관한 국제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함. 특히 발효요건인 25번째 국가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어업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하여 국제신인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편의국적 어선이 많은 후발 원양조업국(대만, 중국)의 FOC 어선이 규제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통한 반사이익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어업질서에 부응하면서 안정적인 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 동 협정은 23개국이 수락을 하고 있어, 향후 추가로 2개국이 수락하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2002.12월 기준)

○ 가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우리나라는 공해상 편의국적어선의 국적화 조치를 완료('99)하였음. 따라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진 일정

- 2003년 상반기 중으로 가입 추진

□ 수산통계자료 지역수산기구 제공시 일관성 유지

○ 이행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12조

- 국가는 비준/수락·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수산관련 주요국제기구 비준/수락 및 가입 현황은 가입 13, 가입추진 3, 미가입 5 등임
- 우리나라는 직접 FAO에 해구별/어종별/어획량을, 지역수산기구에도 통계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동 자료들은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행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집하고 있는 어획량 및 노력량 자료는 어기 종료가 아닌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번씩 운반선사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강구. 이를 위해 운반선 및 조업선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충분한 홍보와 협조시 다양한 Incentive 강구
- 종 분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선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현장지침서의 제작/배부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어획자료 수집체제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어황예측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즉 수집자료의 신뢰성 확인 및 자료수집 방법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과학오퍼저버 승선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모든 국제수산기구가 신뢰성 있는 과학조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오퍼저버기구의 운영을 고려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됨

○ 추진 일정

-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홍보 : 2003년
- 운반선 및 조업선의 협조 실태 파악 : 2004년
-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지원 법제도 검토 : 2005년
-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지원제도 시행 : 2005년
- 종 분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지침서 제작/배부 : 2003년
- 자료수집 방법개선을 위한 오퍼저버기구의 운영 : 2010년 이후

나. 국가의 법규 적용

□ 어구실명제 도입을 통한 불법어구 제거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1항

- 국가는 어업허가제도를 포함하여 자국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행정관청이 명하는 경우에 어구 등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그 표지에 대하여 손괴·변조 등을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연안개발안강망·근해자망·구획어업 등 일부업종에 사용되는 망어구만 어구표지를 하도록 허가의 제한조건으로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 경쟁적으로 어구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어장환경오염 및 어장선점 등으로 인한 어업자간 분쟁이 야기되고 있고, 통발·자망은 지나치게 과다한 어구를 사용하고, 폐어구가 어장에 방치됨에 따라 수산동식물의 산란·서식장을 훼손시키고 있음
- 불법어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으므로 불법어업 행위의 사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행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표지판의 재질, 표시위치, 부착요령 등 세부사항에 대해 어업인 및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제도화 필요
- 이동하면서 어획하는 어업들(저인망, 선망 등)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4조(허가의 제한 및 조건) 및 별표 9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기초조사 및 표지판 모델·부착방법 등 연구개발 : 2003년
-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개정 : 2004년
- 어업별 시험부착 및 본격추진 : 2004년 이후

□ 어업인에 의한 자율관리어업 확산으로 불법어업 예방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1항

- 국가는 어업허가제도를 포함하여 자국 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지역별, 어종별,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어업관리를 유도하여 어장환경 개선, 불법어업 예방, 어획강도 감축, 수산자원 조성 등이 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2002년도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자율관리어업은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
-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하여 어획강도 감축, 수산자원조성 뿐만 아니라 불법어업이 근절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없음
- 수산업법에 자율관리어업 관련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근거 규정 수산업법에 포함 : 2004년 이후 추진
- 자율관리 현행 79개소 → 2010년까지 500개소로 확대

□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제3항, 제47조

- 국가는 선박감시체계(VMS)의 이행을 포함하여 자국 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제24제3항)
- 허가장이 발급된 조건들 중 VMS장착 포함(제47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FAO는 수산자원의 보존관리와 관련하여 조업선박의 감시를 위하여 선박위치의 자동과악이 가능토록 VMS체제를 의무화, 일부 지역적 차원의 수산기구도 관할수역내 조업어선의 감시를 위하여 VMS체제의 의무화를 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CCAMLR 수역, 참치관련 공해조업선, 러시아 수역 조업선 등에서만 VMS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2001.12월 기준 507척중 294척만 장착), 전 원양어선으로 확대 추진 필요
- 우리나라 연근해수역 뿐만 아니라 중·일 상대국 EEZ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도 조업구역 및 시기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기동성이 좋은 대형어선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함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및 연안어선과의 어장분쟁 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연근해어업도 금지구역 위반조업의 차단 및 불법어업 사전예방을 위하여 VMS의 장착이 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원양어업의 경우는 각종 수산관련 국제회의시 VMS관련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 선박조업위치 등이 공개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선박위치 정보제공으로 우리 어선들의 조업위치 유출시 어업정보 제공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를 감안한 사항임으로 충분한 검토 필요
- 또한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으로 사전 충분한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8호(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업에 관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
-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어선의 설비, 어선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않으면 어업에 사용할 수 없음) : 연근해어업 해당
-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제5호(외국 또는 국제기구 관할 수역에서 조업의 조정 또는 제한) : 원양어업 해당
-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제6조 : 원양어업 해당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원양어업 >

- 업계 의견 수렴 : 2004년
- 수산업법 제52조제1항제8호,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제5호,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관한고시 제6조 등 확대 추진 근거 규정 마련 : 2005년

< 연근해어업>

-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및 관련법에 근거규정 마련 : 2004년
- 근해어업중 어획강도가 높고 조업구역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위치발신기를 부착하는 방안 모색 : 2004년 ~2010년
 - (1단계) 대형선망 · 대형트롤 · 대형기저 → (2단계) 중형기저 · 동해트롤 · 기선권현망 → (3단계) 근해자망 · 근해통발 등 전 근해업종
- 연안어업은 근해어업의 부착효과를 평가한 후 단계적 도입 : 2010년 이후

□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표준에 따른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4항

- 국가는 국가적/지역적/국제적 표준에 따른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이행을 포함하여 자국 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에서 국제기준의 읍저버프로그램 개발 등에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불법어업 감시, 자원관리를 위해 TAC 소진상태 및 어획상황의 파악·보고, 수산자원의 평가와 어획특성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등에서 필요함
- 따라서 과학읍저버 인력확보 및 훈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과학읍저버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원양어업 : 연안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따른 읍저버 신분 및 비용, 읍저버 사후관리 문제 등
- 연근해어업 : 읍저버 신분과 역할의 불안정, 읍저버 운영주체와 업계의 상충 문제, 읍저버제도 운영비용, 읍저버 운영제도상의 문제, 읍저버 적정요원 배치 문제, 읍저버 사후관리 문제 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 예산확보 및 동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연구 등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강구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음

○ 추진 일정

-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수렴 : 2008년
- 원양 및 연근해 읍저버 제도화 추진 계획 수립 및 법제화 : 2009년
- 원양 및 연근해 읍저버 제도 본격 추진 : 2010년

□ IUU어업방지를 위한 기금조성 운영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 제6항

- 국가는 MCS 운영계획 수립실시 및 기금조성을 포함하여 자국 어업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정부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불법어업자들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1996년부터 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어업질서확립자금」임
- 1996~1999년까지 4년 동안 모두 2,863척에 대해 280억원의 자금이 배정
- 그러나 사업시행 주체의 2원화(수협/지방행정관청(수산과)), 지원규모의 미약(1년 거치 4년 상환, 영어자금보다 금리(5%)가 높음, 1인당 지원액 상향 조정 등), 사후 관리감독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주체의 일원화, 지원규모 확대, 사후관리 철저 등의 대책 강구가 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예산확보 및 어업자들의 특성상 타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전업자의 실업문제 등이 우려됨.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전업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직업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일부 연승어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소형기선저인망으로 조업하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충분히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기금의 용도)

○ 추진 일정 및 대책

- 생계형 소형기선저인망 전업 추진(2002~2006)
 - 매년 150여척을 대상으로 용자 지원
- 지원조건 개선 추진
 - 적당 용자한도를 현재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 용자 상환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연장
- 전업자 사후관리 강화
 - 전업어가 관리담당공무원 지정으로 불법어업 복귀 방지

□ 불법어업자들에 대한 D/B 구축 등 관리 강화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4조제9항, 제36조, 제42조

- 국가는 보안성 요건 고려, MCS 데이터의 획득/저장/분배를 위한 체계의 설립/유지를 포함하여 자국 어선에 대해 시작/양육지점/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효과적인 감시/통제/검색하여야 함(제24조)
-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함(제36조)
- 각 기국은 자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제42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국내 연근해어업의 불법어업의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문제, 자원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 책임있는 어업질서 실현, 합법적인 어업자 보호 등을 위해 동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또한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불법어업자 관리 및 정부의 각종 제재조치와 연계하여 추진 필요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어업자들의 신상 공개 등으로 인한 반발이 예상되나 충분한 취지 설명 및 홍보를 통한 문제해결. 정부의 강력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일환으로 동 제도 추진시 합법적인 다수의 많은 어업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의 전산망 및 해수부 자체 구축된 어선관리 D/B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불법어업자 D/B 구축을 위한 사전 조사 : 2004년
- 수협관계자, 어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2005년
- 불법어업자 D/B 구축 법제화 : 2006년
- 불법어업자 공개여부 검토 등 : 2007년 이후

다. 국가간의 협력

□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협력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28조, 제50조, 제51조, 제72조, 제81조

-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기구와 IUU어업방지를 위하여 협력(제28조)
- 기국은 어획/전체보고로 부터의 정보를 수역/어종별로 누적하여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지역/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제50조)
- 연안국이 국내법규 및 국제법과 일치하게 검토하여야 할 조치 중에는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 정보교환 및 협력 등(제51조)
- 특정 국가의 관할하에서 불법적으로 어획된 어류/어류제품의 교역을 막는데 있어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국가를 지원하여야 함(제72조)
- 모든 국가는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IUU어업방지와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적기에, 적어도 매년 다른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FAO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81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충분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임으로서 국제적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관련 양자간 협력의 경우 관련 당사국간 상호 협의하여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시키면 될 것이고, 지역수산기구와 협력은 지역 수산기구에서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의 규정을 지키면 됨으로 국내제도로의 도입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향후 양국간 상호합의하에 IUU어업방지를 위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근거 및 일부 조문 보완이 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국가간 협력에 있어서는 러시아수역 입어관련은 한러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위치보고 및 어획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최근에는 러시아측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수역에서 어획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어선 및 운반선 현황에 대한 통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동 문제는 관세 문제(관세청)와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일 및 한중간에는 상대국 EEZ입어 척수 및 어획실적 등을 어업협정서에 합의된 범위내에서 상대국에 통보해 주고 있음. 따라서 상호 협의하여 IUU어업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협력을 강화시키면 됨
-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정보교환 문제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경우 지역수산기구 관할수역에 입어시에는 동 기국에서 원하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 야만 입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고 있음. 향후 추가적으로 지역수산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은 계속 준수하면 될 것임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미국과 칠레가 주도하고 있는 MCS 국제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협력 방안은 중장기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7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종합하여 매년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종합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8조(보고서의 용도) : 이 규칙에 의한 보고서는 연근해어업 및 원양어업의 수산자원평가 및 수산정책에 관한 자료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정비내용 : 향후 양국간 IUU어업방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연근해어업및원양어업의조업상황등의보고에관한규칙 제8조의 수정이 필요함
-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MCS 국제네트워크 참여할 필요가 있음

2. 기국의 책임

가. 어선의 등록

□ IUU 전력(前歷) 어선 자국적 부여 회피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36조**

-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 전력(前歷)을 가진 선박의 국적 부여 회피를 통하여 원천적으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어업자들의 반발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당장 도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충분한 여론수렴 및 여건조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선법 제13조, 어선법 시행규칙 제21조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용선어선의 IUU어업종사 금지 보장**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37조, 제38조, 제39조**

- 용선약정을 인정하는 기국/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용선약정에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그들 각각의 관할 범위내에서 용선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7조)
- 선박이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자원보존관리조치/규정의 불이행 목적의 국적 변경을 막아야 함(제38조)
-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을 회피/규정의 불이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국적의 반복적인 잦은 변경(Flag hopping)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자국국적부여의 거절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9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용선의 경우는 우리나라 수산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어업의 경우에 관리 및 단속근거가 없어 관리, 감독상 애로가 있으며, 불법어업의 경우에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불법조업의 방치로 인한 국제적 비난 가능성 및 국제 신인도 하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이 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이미 용선어선 문제는 동 제도가 폐지됨.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일부 용선어선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99.2.8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어선법 개정으로 용선제도 폐지('99.5.24)
- ※ 어선법 제34조(외국인에 대한 어선의 양도등 허가제도) 및 어선 양도등의 허가요령 폐지됨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정비내용 : 이미 용선에 관한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별도의 정비는 필요없음. 즉, 용선선박으로서 허가기간 만료 어선은 2001.12.31 이후부터는 국적취득어선에 한하여 원양어업 허가를 해주고 있음
- 추진일정 : 기존의 용선어선들의 용선 기간이 5년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200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용선어선은 없어짐

□ **선박등록/허가장의 발급기능 통합**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0조**

- 비록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호간에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들(어업허가/자국 국적 부여 거절 등)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선박등록부의 운영과 국가가 유지하는 어선기록사이에 연관성 보장
- 그러한 기능이 한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는 동 기능에 책임있는 기관들간의 충분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보장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이 통합된다면, 통합된 어선 관련 업무의 추진을 통하여 어선의 관리 강화 및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우리나라는 연안 및 구획어업의 경우는 등록/허가 동일(시/군/구), 근해 어업의 경우는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시·도지사임. 또한 원양 어업의 경우는 등록은 선적항 시/군/구, 허가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어선의 등록 및 허가 업무가 구분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음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접근이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선등록 관련 : 어선법 제13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1조
- 어선허가 관련 : 수산업법 제41조,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43조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중장기적인 검토과제

나. 어선의 기록

□ 어선의 기록 유지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2조 및 제43조

- 각 기국은 자국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어선에 대한 각 기국의 기록은 공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1993 FAO 이행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

- ①이전 선박의 이름 ②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③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④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⑤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

/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의 그 선박에 의한 비이행 기록 ⑥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①이전 선박의 이름 ②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③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④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⑤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규정에 의한 그 선박에 의한 비이행(non-compliance) 기록 등에 대해서는 선박등기부등본이나 어선원부, 정부의 행정처분자료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⑥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보완 필요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어업인들의 추가적인 서류제출로 인한 번거로움 및 외국에서의 수리시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으나 업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어선법시행규칙 제23조(어선의 등록 사항)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업계여론 수렴 : 2004년도
- 어선법시행규칙 등에 '선박사진 추가 기록유지' 내용 추가 개정 : 2005년도
- 시행 : 2006년도

□ IUU어업방지를 위한 어업허가장 소지 문제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5조 및 46조

- 기국은 선적을 부여한 자국 국적의 선박이 유효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연안국이 선박에 대하여 어업허가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자국수역의 어떠한 어업도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발급된 어업허가장 없이는 조업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제45조)
- 선박은 어업허가장이 선상에 소지하도록 요청된 장소에서는 그 허가장을 소지하여야 함. 다음 사항 포함 ① 선명/적절한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연인/법인의 이름 ② 어업허가/수역/범위와 기간 ③ 어종/허가받은 어구/적절한 경우 다른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제46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연근해어선의 경우는 불법어업을 단속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업허가장의 확인 없이도 다른 방법으로 가능함(어선등록증, 전화(무선전화), FAX 등). 또한 어업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행정규제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업허가장 소지의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연근해어업의 허가장 소지 의무는 추진상의 한계로 인하여 현행대로 유지가 바람직함
- 그러나 원양어업의 경우는 비록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으로 소지의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조업국의 입장에서는 연안국의 EEZ입어시, 지역수산기구 관할 수역 조업시, 향후 공해상 등에서 어업허가장의 소지를 요구하고 있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원양어선의 경우는 어업허가장 소지를 의무화하여, 타국 및 타 해역에서의 조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원양어업에서의 국제수산기구들의 압력과 EEZ내에서의 MCS를 위해서는

허가장 소지 의무가 필요하다는 논리 개발로 관계당국 설득 필요

- 즉 허가장 소지 의무는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합의사항이므로 우리나라는 이를 지킬 필요가 있음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제52조제1항10호 및 수산자원보호령제25조(면허/허가등에 관한 증서 휴대 의무,96.12.31법령공포일)가 1999.04.15 해양수산부 '98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관련근거 및 규정이 폐지됨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고려, 관련어업인들의 의견 수렴 이후 검토
: 중장기 과제

□ **국제적 기준의 어선 표시**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7조제8항**

- 허가장이 발급된 조건들 중 어선의 표시/확인을 위한 FAO 표준상세/지침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서 어선에 표시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국제행동계획 뿐만 아니라 각 국제수산기구의 어선표시 사항은 현 시점에서 이행의무는 없으나 앞으로 동 사항 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임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어선표시는 어선수리시 하여야 하므로 어선수리 시기 등 감안 필요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 제59조(표지의 설치·보호) : 어선표지 설치 명령
- 수산업법 시행령 제51조(표지의 설치)
 - 어선표지 설치 명령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어선 식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어선 표지규격 및 형태와 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3.3.1부터 시행)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어선 표지규격 및 형태와 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2003년 3.1 이전까지 모든 원양어선이 국제적 기준 어선표지 부착을 의무화하여야 함
- 따라서 적어도 2003년 3월 이후에는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들이 국제기준의 어선표시가 완료될 것임

□ IUU어선 재공급/전재에 대한 제한 문제

○ 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48조~제50조

- 기국은 자국의 어떠한 선박도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전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제48조)
- 기국은 해상 전재에 관련된 모든 자국의 조업/운반/지원선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전재를 위한 사전 허가증을 소지하고 국가수산기관/기타 지정된 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 ①해상에서 모든 어류전재의 일자/위치 ②전재된 어획물의 어종별/포획수역별 중량 ③ 선명/선박의 등록/국적/전재와 관련된 선박들의 확인과 연관된 기타 정보 ④전재된 어획물의 양륙항 등 (제49조)
- 기국은 어획/전재보고로부터의 정보를 수역/어종별로 누적하여 완전하고,

시기 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지역/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함(제50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re-supply)/전재 제한을 통하여 원활한 어로작업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동 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우리나라의 어업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IUU어업자들에 대한 Data-Base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완전 가동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상황에서 IUU 어선의 재공급/전재 여부가 IUU어업 방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지의 문제는 이를 제한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업법 제47조(어획물 운반업의 제한·정지 또는 취소)
 -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사항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 : 조업선박이 어획한 이빨고기류를 양륙하거나 전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이빨고기어획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 수산자원보호령제27조 제3항
 - : 외국과의 어업협정 및 어업협력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어획물과 그 제품을 운반 또는 양륙하거나 옮겨 싣는 것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IUU 어선에 대한 인프라(국내외 포함)가 구축된 이후 도입 검토 : 중장기 과제

3. 연안국의 조치

□ **IUU 어선의 EEZ수역 입어 금지**

○ **정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51조**

- 연안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과 일치하여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 전력(前歷) 어선의 우리나라 EEZ수역 입어금지를 통하여 합리적인 자원관리 및 지속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즉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을 통하여 우리어선 조업보호 및 합리적인 자원관리 추진 가능
- 그러나 동 사안은 양국간(한·일, 한·중)에 어업협정에 기초한 상호 협의를 통하여 IUU어업의 근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도입은 필요치 않음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현재 한·일, 한·중간에는 상대방 국가의 EEZ에 상호 입어 중임으로 우리측에서 IUU어선 입어금지시, 일본이나 중국측에서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시 우리측의 실익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중국측에 대해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그 반대임)
- 또한 상대국들도 IUU어선에 대한 기록 등이 상대국에 완전히 통보되는 전제하에 추진이 가능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관련 규정 및 근거 마련 필요 없음

○ 정비내용 및 추진 일정

- 한·일, 한·중간 상호 협의하에 IUU어선 근절과 관련하여 문제 해결 가능

4. 항구국의 조치

□ IUU어업방지를 위한 항구국의 조치

○ 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53조 ~ 64조

- IUU어업방지를 위해 어선의 항구국 통제조치를 사용해야 함 항구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투명/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함
- 항구접근이라 함은 자국의 법률/유엔해양법협약(82) 제25조 제2항/다른 관련 국제법에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재공급/재공급/전재/양육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연안에서 떨어진 부두로 입항함을 의미함

- 불가항력적 원인/위험 또는 위기에 처한 사람/선박/항공기에 원조를 주기 위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선박의 항구 접근이 허용
-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국가는 항구로 입항하기를 원하는 어선/어업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 보안성 유지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들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장의 사본/조업일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
- 자국의 항구입항을 허용하였던 어느 선박이 IUU어업활동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항구국은 그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 양육 또는 전채를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문제를 해당 선박 기국 통보
- 국가는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항구들은 검사를 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함
- 어선을 검사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항구국은 다음정보를 수집하여 기국에,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에 송부하여야 함. ①어선의 기국 및 확인 상세내용 ②선장/어로장의 이름/국적/자격증 ③어구 ④원산지/어종/가공형태/어획량을 포함한 선상 어획량 ⑤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요구된 기타 정보 ⑥총양륙 및 전채량 등
- 만일 검사도중에 그 선박이 항구국의 관할을 넘은 수역에서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항구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 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함. 항구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항구국은 통제관의 훈련/기술적 지원/자격요건과 일반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어업/관련활동에 연관된 선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적인 전략/절차를 수립/공개하여야 함
- 모든 국가는 양자간/다자간 그리고 관련 지역수산기구내에서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의 일관성 있는 조치를 개발하도록 협력하여야 함
- 그러한 조치는 항구국이 수집할 정보/정보수집 절차 그리고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체제하에서 선박에 의한 침해혐의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국가들은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의 비당사국이면서 그 지역수산기구의 비협력

국이 그 기구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선은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정하에 항구국 조치의 개발을 고려하여야 함

- 그러한 항구국 조치는 그 확인된 선박의 어획량이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어획물의 양육과 전채를 금지시킬 수 있음
-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한 IUU 선박의 확인은 공정/투명/비차별적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국가는 관련정보의 유통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지역수산물기구/국가들간의 항구국 통제에 관하여 협력을 증진시켜야 함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원양어업 경우는 대부분 조업국의 입장이고, 연근해어업의 경우는 한·일 및 한·중어업협정에 의하여 일본어선이나 중국어선이 입항할 경우가 발생함. 이 경우도 양자간어업협정에 따라 조업시 긴급피난 등은 국제적 합의에 따라 협정 당사국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항구국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원양어선들의 조업국 입장에서 외국의 항구국 조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므로 국내제도로의 도입이 불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최근의 주요 연안국들의 항구국 입장들을 살펴보면, 스페인의 경우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의 IUU어업 List에 등재되어 있는 선박의 스페인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며, 호주의 경우도 IUU어선에 대하여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구 입항을 거부하는 등 국제법에 따를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주요 연안국의 항구국 조치에 대하여 수시로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업계에 통보해 주어서 원양어선들의 타국 입항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사전에 차단하는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국내관련 규정 및 근거 없음

○ 정비내용 및 행정적 조치

- 국내제도로의 도입이 필요치 않음으로 정비 내용도 없음
- 주요 연안국들의 항구국조치 현황 파악 및 업계통보 : 향후 지속적

5. 시장관련 조치

□ IUU어선에 의한 어획물 수출/입 금지 조치

○ 추진 근거 : 국제행동계획 제66조 및 69조

-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IUU 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가 자국의 영토안에서 수입/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제66조)
- IUU어업으로부터의 어류/어류제품의 교역을 감소/근절하기 위한 교역관련조치는 수출입 금지/통제와 이외에도 다자간 어획기록 및 증명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음. 그러한 다자간 조치가 채택될 때 각 국가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해야 함(제69조)

○ 국내제도로 도입의 필요성

-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한 IUU 어선의 어획물 수입 유통 금지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선도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 측면을 고려하여 도입이 필요함

○ 추진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대책

- 주요 지역수산기구에서 추진중인 CCAMLR의 “어획증명제도(Catch Documentation Scheme)” 및 CCSBT의 “무역정보제도(Trade Information System)” 등은 이미 국내고시에 반영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지역수산기구의 합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음
- 그러나 IUU어업 근절을 위한 시장관련 조치는 다른 조치가 효과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조치임을 감안 할 때, 기존의 제도에 문제에 문제가 많다고 인정되고, 관련된 인프라(국내외 포함)가 구축된 이후 국내제도로 도입이 추진 바람직함

○ 국내법상 관련 규정 및 근거

-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원산지 표시)
- 대외무역법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등 특별조치), 제2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표시), 제25조(수입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제39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등

○ 정비내용 및 추진일정

- 수입국 및 지역수산기구의 관련동향 자료 수집 및 업계통보 : 수시
- IUU어획물 시장관련조치 : 장기적 과제

제7장 결 론

IUU어업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합법적인 어업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이러한 IUU어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적인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초래된 것이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에 이용가능한 자원은 감소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IUU어업, 특히 편의국적선(FOC)에 의한 어업활동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연근해어업의 경우도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자원관리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고, 자원조성사업(치어방류사업)의 효과 반감, 합법적인 어업자들의 불만, 자원고갈의 원인 등 많은 폐해가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FAO에서 IUU어업방지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행동계획은 2004년 2월이내에 개발 및 이행, 이행사항 FAO에 보고 등 동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동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행동계획에 대한 개발/이행, 국제행동계획 각 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가 되도록 조정, 각 국가들이 이러한 이행을 함에 있어서는 각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세부 실천(안)을 마련하였다.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내행동계획(안)을 세우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국제행동계획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좀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IUU어업 규제에 동참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동참하는 것이다. 또한 IUU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충분하고 투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

임으로서 국제적 신인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원양어업에 있어서의 조업활동 위축 방지, 국제행동계획불이행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부터 회피 가능, 수산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의 지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IUU어업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추세를 계기로 국내어업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IPOA의 이행상황 내용중 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의 각 조문별 해설을 하였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우리나라 법령에 기히 정비된 사항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따라서 IPOA의 우리나라 이행상황 분석 및 평가와 세부실천(안)들은 향후 FAO에 제출하는 우리나라의 이행현황 자료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방향의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FAO에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본 연구의 내용을 기초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되는 타국의 행동계획 제출 내용도 고려하여 내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끝으로 IUU어업을 방지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연구 및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IUU어업의 방지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선표 외, 「유엔해양법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성격 연구」, KMI, 2000.
- 김선표·이형기, “유엔공해어업협정 가까운 시일내 발효 예상”, 「해양수산 동향」, KMI, 2001.8.18.
- 김선표·이형기,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근절을 위한 국제행동계획과 국내적 이행방안 연구」, KMI, 2001.12.
- 유동운·이광남외, 「유엔해양법 협약과 어업」,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1997.9.
- 정도훈,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불법어업 방지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경대 석사학위논문, 2002.8
- 원양어업협회, 「원양어업 30년사」, 1996년.
- 한국원양협회, 원양어업통계연보, 각년도.
- 한국원양협회, 원양어업 제900호,
- 최종화, 「국제해양법강의」, 태화문화사, 1998.
- 최종화, 「현대국제해양법」, 세종출판사, 2000.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EEZ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2.7.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선박안전조업 입법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 2002.7.
-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한 감시·감독체계구축 및 읍저버 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2.9
- 한국해양연구소, 「유엔해양법협약(韓英對譯)」, 1990.9.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WTO와 한국해양수산업의 미래」, 해양수산심포지움, 2002.9.
- 해양수산부·KMI, 「FAO 수산위원회 관련회의 결과보고서(2001..22-3.2, 로마)」, 2001.
- 해양수산부·KMI, 「FAO 어업동향·정보개선을 위한 기술회의 보고서」, 2002.3.

- 해양수산부, 「최근 수산기구동향 및 원양어업환경」, 2001.5.
- 해양수산부/어업지도선관리소, 「21세기 어업질서확립 세미나」, 2002.9
-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 「원양어업자료 종합분석 보고서」, 2000~2002.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과, 내부자료
- AJ Press, *Australia's approach to developing a 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11.
- Balton, D. A. "Strengthening the Law of the Sea: The New Agreement on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27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996.
- Balton, David A., *IUU Fishing and State Control over National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11.
- Brown, E. D.,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Dartmouth, 1994.
- Burke, W. T., "Importance of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its Future Development", *27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997.
- Hon. Dr. A. Lyambo, *Combating IUU: the Namibian experi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11.
- Inchiro Nomura, *The Need for Concer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dres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UU Fishing(FAO), Santiago Spain, 2002. 11.
- Juda, L., "The 1995 United Nations Agreement on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 Critique", *28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997.
- Nordquist, H. Myron and John Norton Moore, *Current Fisheries Issues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0.
- O. S. Stockke, F. O., *Governing High Seas Fisheries*, Oxford University

- Press, 2001.5.
- Pfirter, F. M., "Straddling Stocks and Highly Migratory Stocks in Latin American Practice and Legislation: New Perspective in Light of Current International Negotiations", *26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995.
 - Tahindro, A,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Comments in the Light of the Adoption of the 1995 Agreement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28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1997.
 - UN, *Earth Summit: Agreement on High Seas Fishing*, 1995.
 - Vicuna, F. O., *The Changing International Law of High Seas Fisher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부록 1 : IUU어업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결과

I. 회의개요

- 주관 : 스페인 농수산식품부(후원 EU 및 FAO)
- 기간 : 2002. 11. 25 - 26
- 장소 : 스페인 산티아고 (호텔 Puerta Del Camino)
- 참석 : 43개국, FAO, OECD, 지역수산기구, NGO, 관련업계 등 약 270명 참석

- 주요회의결과
 - FAO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 설명
 - 각국(스페인, EU, 호주, 미국 등)의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의 국내이행상황 발표 및 토의
 -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향후 조치(회의결론) 채택
 -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기능 강화
 -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IUU 어선에 대한 목록(Positive/Negative) 유지
 - 지역수산관리기구간 어획증명 또는 통계 제도의 조화
 - 각국의 EEZ내에서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채택
 - IUU어획물에 대하여는 시장진입금지, 수입금지, 양륙 및 전채 금지와 같은 항구국과 시장국의 조치 이용
 - 항구국 책임에 관한 최소지침 개발

- 회의진행 경과
 - 동 회의는 개회식에 이어 스페인 Coruna 대학 공법교수 Mr. Jose

Manuel Sobrino 의 사회로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 세미나 형식으로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회의의 내용을 요약한 "회의결론(Conclusion)"을 채택하고 종료함

II. 회의 결론

1. IUU어업의 폐해

- IUU어업은 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 및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합법적인 어업자의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 FOC/IUU 어선은 규제받지 않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항행상 안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선원의 안전을 위협함
- 이러한 IUU어업의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적인 어업활동의 증가에 따라 초래된 것이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증대되는 반면, 이용 가능한 자원은 감소하고, 해양자원에 대한 규제 강화로 IUU어업, 특히 편의국적선에 의한 어업활동이 초래된 것임

2. IUU어업의 발생원인

-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의 부족 및 제도적 미비
- 기국, 특히 FOC 국가의 자국어선에 대한 비효율적인 통제
- 각국의 통일된 노력 부족 및 현재의 보존관리조치를 이행할 각국의 능력의 차이
- 일부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IUU어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 합의되고, 효과적이고, 엄격한 항구국의 통제 미흡
- 편의국적 어선과 지역수산기구 비회원이면서 비협력국 그리고 회원국

어선의 보존조치 미준수

-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간 권한의 차이에 따른 부적절한 협력
 - ※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수산업을 성취하기 위한 조치, 특히 어획능력을 관리하기 조치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3. 향후 과제

- 어업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관련된 정부, 과학자, 업계대표, NGOs가 함께 IUU어업을 논의하는 주요 장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기능 강화
- IUU 어선, 특히 FOC 선박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서 IUU 어선에 대한 목록(Positive/Negative) 유지
-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국가 및 영토에 대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IUU 어선을 예방, 제거하기 위하여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조치의 채택
-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간의 어획증명 또는 통계 제도의 조화
- 각국의 EEZ내에서 자국의 국민 또는 회사가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채택
- IUU어획물에 대하여는 시장진입금지, 수입금지, 양륙 및 전재 금지와 같은 항구국과 시장국의 조치 이용
- 항구국 책임에 관한 최소지침 개발

4. 회의결론의 활용

- 동회의의 결론을 각국, 지역수산물관리기구, FAO 및 IMO 등 관련 국제기구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검토 활용키로 함

IV. 기타사항

- FAO 수산부장 노무라는 우리 대표단에게 우리부 인력의 FAO 파견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APO(Associate Professional Officer) 및 프로젝트에 의한 파견 등 관련 제도를 설명함
- 미국 NOAA의 MCS 네트워크 책임자인 Ms.Michele Kuruc은 MCS 네트워크 관련 약정을 배부하면서 한국의 MCS 네트워크 가입을 권장함. 관련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imcsnet.org>(username : mcs, password : mcsnet)에서 얻을 수 있음

V. 관찰 및 평가

- 금번회의는 2001. 3월 FAO 제24차 수산위원회에서 채택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IUU어업 방지에 관한 국제적 캠페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EU 최대의 원양어업국인 스페인에서 동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IUU 원양어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IUU어업은 국가의 EEZ 및 공해에 걸쳐 일어나나, 동 회의는 공해상 IUU어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으며, 호주, IUCN 등은 공해에서 MPA의 설정, 오렌지 러피 등 UNFSA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어종에 대한 관리강화 등을 주장함으로써 향후 공해에서의 어업규제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금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FOC/IUU 어선에 대한 조치는 어선과 실소유 선주와의 관계(Genuine/Substantial Link), FOC의 정의 규명을 위한 국제협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최근 스페인 근해에서 대규모 유류오염사고를 일으킨 프레스티지호가 FOC 선박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FOC 어선도 안전성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IMO 등 관련 기구에서 어선에 대한 항구국 통제와 같은 조치가 개발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IUU어업방지의 1차적 책임은 기국(Flag State)에 있으나 항구국

(Port State) 및 시장국(Market State)의 조치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IUU어업을 방지하는데 있어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음

- 우리나라는 동 회의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나라의 IUU어업방지 세부 실천계획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동 IUU어업관련 사항은 2003. 3월에 개최되는 FAO 제25차 수산위원회에서 핵심의제로 논의될 것인바, 우리나라의 IUU어업방지 이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정리 발표하여 우리나라가 IUU어업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APENDIX II :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s approved by the 24th Session of COFI Subject to endorsement of
FAO Council/Conference)**

Introduction

1. In the context of 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nd its overall objective of sustainable fisheries, the issue of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in world fisheries is of serious and increasing concern. IUU fishing undermines efforts to conserve and manage fish stocks in all capture fisheries. When confronted with IUU fishing, nation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can fail to achieve management goals. This situation leads to the loss of both short and long-term soci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and to negative effects on food securi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UU fishing can lead to the collapse of a fishery or seriously impair efforts to rebuild stocks that have already been depleted. Existing international instruments addressing IUU fishing have not been effective due to a lack of political will, priority, capacity and resources to ratify or accede to and implement them.

2. The Twenty-third Session of the FAO Committee on Fisheries (COFI) in February 1999 addressed the need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The Committee was concerned about information presented indicating increases in IUU fishing, including fishing vessels flying flags of convenience . Shortly afterwards, an FAO Ministerial Meeting on Fisheries in March 1999 declared that,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FAO will develop a global plan of action to deal effectively with all forms of 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fishing including fishing vessels flying flags of convenience through coordinated efforts by States, FAO,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bodies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s provided in Article IV of the Code of Conduct. The Government of Australia, in cooperation with FAO, organized an Expert Consulta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n Sydney, Australia, from 15 to 19 May 2000. Subsequently, an FAO Technical Consultation on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was held in Rome

부록 2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2001. 3. 2 제24차 FAO 수산위원회에서 승인)

서론

1.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이라는 이 규범의 전반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세계 수산업에 있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IUU어업은 모든 포획어업에 있어 어족자원을 보존관리하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단기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식량안보와 환경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IUU어업은 수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미 고갈된 자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IUU어업에 대응하는 현재의 국제적 문건들은 그것들을 비준 또는 가입·이행하려는 정치적 의지, 시급성 인식, 역량과 그리고 재원의 결핍으로 비효과적이었다.
2. 1999년 2월에 개최된 FAO의 수산위원회(COFI)에서는 IUU어업을 예방·방지·근절 할 필요성이 논의되어졌다. 이 위원회는 편의치적(flags of convenience)어선 및 IUU어업의 증가를 보여주는 정보에 관하여 우려했다. 바로 이어 1999년 3월에 수산업에 관한 FAO 각료급회의는 국제법상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FAO가 행동규범 제4조에 규정된 대로 각국, FAO, 지역수산관리기구 및 IMO와 같은 다른 관련국제기구와의 조화된 노력을 통하여 “편의치적” 어선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다룰 국제행동계획(IPOA)을 성안할 것을 선언했다. 호주정부는 FAO와 협력하여 2000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IUU어업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이어서 IUU어업에 관한 FAO 기술협의회가 2000년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from 2 to 6 October 2000 and a further Technical Consultation was held in Rome from 22 to 23 February 2001. The draft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was adopted by the Consultation on 23 February 2001 with a request that the report be submitted to the Twenty-fourth Session of COFI for consideration and eventual adoption. COFI approve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by consensus, on 2 March 2001. In doing so, the Committee urged all Members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NATURE AND SCOPE OF IUU FISHING AND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n this document:

3.1 Illegal fishing refers to activities:

3.1.1 conducted by national or foreign vessels in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at State, or in contravention of its laws and regulations;

3.1.2 conducted by vessels flying the flag of States that are parti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but operate in contraventio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dopted by that organization and by which the States are bound, or relevant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or

3.1.3 in violation of national laws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including those undertaken by cooperating Stat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3.2 Unrepor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3.2.1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to the relevant national authority, in contravention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3.2.2 undertaken in the area of competence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or have been misreported, in contravention of the reporting procedures of that organization.

추가 기술협의회가 2001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로마에서 개최되었다. IUU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국제행동계획초안이 2001년 2월 23일 이 기술협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회의는 또한 이 보고서의 검토 및 최종적 채택을 위하여 제24차 수산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수산위원회는 2001년 3월 2일 컨센서스로 승인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국제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였다.

IUU어업 및 국제행동계획의 성격과 범위

3. 이 문서에서

3.1 불법어업이라함은 다음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3.1.1 국가의 허가 없이 또는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그 국가의 관할수역에서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3.1.2 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의 국적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행하지만 그 기구에 의해 채택되고 그 국가를 구속하는 보존관리조치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어업활동

3.1.3 국가 법률을 위반한 어업활동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 대한 협력국이 약속한 의무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어업활동

3.2 비보고어업이라함은 다음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3.2.1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국가의 당국에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보고를 하는 어업활동

3.2.2 수산기구의 관할 수역에서 그 기구의 보고절차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고하는 어업활동

3.3 Unregulated fishing refers to fishing activities:

3.3.1 in the area of application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are conducted by vessels without nationality, or by those flying the flag of a State not party to that organization, or by a fishing entity, in a manner that is not consistent with or contravenes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f that organization; or

3.3.2 in areas or for fish stocks in relation to which there are no applicable conservation or management measures and where such fishing activities are conducted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State responsibilities for the conservation of living marine resources under international law.

3.4 Notwithstanding paragraph 3.3, certain unregulated fishing may take place in a manner which is not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and may not require the application of measures envisaged under 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IPOA).

4. The IPOA is voluntary. It has been elabora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as envisaged by Article 2 (d).

5.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in particular Articles 1.1, 1.2, 3.1, and 3.2 applies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is IPOA and its relationship with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IPOA is also directed as appropriate towards fishing entities as referred to in the Code of Conduct. The IPOA responds to fisheries specific issues and nothing in it prejudices the positions of States in other fora.

6. In this document:

- (a) the reference to States includ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s in matters within their competence;
- (b) the term "regional" includes sub-regional, as appropriate;
- (c) the term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means an intergovernmental fisheries organization or arrangement, as appropriate, that has the competence to establish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3.3 비규제어업이라 함은 다음의 어업활동을 말한다.

3.3.1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적용수역에서 무국적어선에 의하여 행해지는 어업활동 또는 그 기구의 비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 또는 조업실체에 의하여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어업활동

3.3.2 적용가능한 보존관리조치가 없는 수역이나 또는 어족을 대상으로하여 국제법상의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해지는 어업활동

3.4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규제 어업이 적용가능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이 국제행동계획하에 포함된 조치의 적용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4. IPOA는 자발적이다. 이 IPOA는 행동규범 제2조 d항에 규정된 대로 행동규범의 범위내에서 성안되었다.

5. 행동규범, 특히 제1.1, 1.2, 1.3 및 3.2조는 IPOA의 해석과 적용 및 다른 국제제도들과의 관계에 적용한다. 이 IPOA는 적절한 경우 행동규범에 언급된 대로 어업실체에 대하여도 지침이 된다. 이 국제행동계획은 수산업의 특정문제에 대하여 대응하며, 어떠한 내용도 다른 포럼에서 국가의 입장을 침해하지 않는다.

6. 이 문서에서

(a) 국가라 함은 관련 권한범위내에서 지역경제통합조직을 포함한다.

(b) “지역”이라 함은 적절한 경우 소지역을 포함한다.

(c) “지역수산물관리기구”라 함은 정부간 수산기구 또는 적절한 경우 어업보존관리조치를 수립할 권한을 가진 약정을 포함한다.

(d) the ter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means measures to conserve one or more species of living marine resources that are adopted and applied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e) the term 1982 UN Convention refer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f) the term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refers to the Agreement to Promo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by Fishing Vessels on the High Seas, approved by the FAO Conference on 24 November 1993.

(g) the term 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refers to the 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s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 and

(h) the term Code of Conduct refers to the FAO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

7. This document is a further commitment by all States to implement the Code of Conduct.

OBJECTIVE AND PRINCIPLES

8. The objective of the IPOA i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by providing all States with comprehensive, effective and transparent measures by which to act, including through appropriat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9. The IPOA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corporates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strategies.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Code of Conduct.

9.1 Participation and coordination: To be fully effective, the IPOA should be implemented by all States either directly,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or indirectly through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r through FAO and other appropriat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 important element in successful implementation will be close and effective coordination and consultation, a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to reduce the incidence of IUU fishing, among States and relevant regional and global organizations. The full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combating IUU fishing, including industry, fishing commun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 (d) “보존관리조치”라 함은 국제법의 관련규칙과 일치하여 채택되고 적용된 하나 또는 그이상의 해양생물자원의 종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e) 1982 유엔협약이라 함은 1982. 12. 10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 (f) 1993 FAO 이행협정이라 함은 1993. 11. 24 FAO 총회에서 승인된 공해어선의 국제보존관리조치이행증진협정을 말한다.
- (g) 1995 유엔어족협정이라 함은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관리와 관련한 1982 12. 10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의 이행협정을 말한다.
- (h) “행동규범”이라 함은 FAO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을 말한다.

7. 이 문서는 책임수산업행동규범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국가에 의한 또 하나의 약속이다.

목표 및 원칙

- 8. IPOA의 목표는 국제법에 따라 설립된 적절한 지역수산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들에 포괄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는 것이다.
- 9.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IPOA는 다음의 원칙과 전략을 활용한다. 행동규범 제5조에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 9.1 참여와 조정: 완전히 효과적이기 위하여 IPOA는 직접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FAO 및 다른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모든 국가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성공적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밀접하고 효과적인 조정과 협의, 그리고 IUU어업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가, 관련 지역수산기구 및 범세계적 기구간의 정보의 공유이다. IUU어업을 타도하는데 있어 업계, 어업공동체, 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가 장려되어야 한다.

- 9.2 Phased 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should be based on the earliest possible phase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of action, and regional and global 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IPOA.
- 9.3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should address factors affecting all capture fisheries. In taking such an approach, States should embrace measures building on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flag State and using all available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ort State measures, coastal State measures, market-related measures and measures to ensure that nationals do not support or engage in IUU fishing. States are encouraged to use all these measures, where appropriate, and to cooperate in order to ensure that measures are applied in an integrated manner. The action plan should address al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IUU fishing .
- 9.4 Conservation: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nservation and long-term sustainable use of fish stocks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9.5 Transparency: The IPOA should be implemented in a transparent mann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3 of the Code of Conduct.
- 9.6 Non-discrimination: The IPOA should be developed and applied without discrimination in form or in fact against any State or its fishing vessels.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LL STATE RESPONSIBILITIES

International Instruments

10. States should give full effect to relevant norms of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as reflected in the 1982 UN Convention, in order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11. States are encouraged, as a matter of priority, to ratify, accept or accede to, as appropriate, the 1982 UN Convention, the 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and the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Those States that have not ratified, accepted or acceded to thes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should not act in a manner inconsistent with these instruments.

- 9.2 단계적 이행: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조치는 이 IPOA에 따라서 국가의 행동계획 그리고 지역적 범세계적 조치의 가능한 가장 빠른 이행에 기초하여야 한다.
- 9.3 포괄적·종합적 접근: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조치는 모든 포획어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국가는 항만국 조치, 연안국조치, 시장관련조치 및 국민이 IUU어업을 지지하거나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기국의 우선적 책임을 설정하고 국제법에 따라서 모든 가능한 관할권을 사용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사용하도록 장려되며, 또한 적절한 경우 이들 조치들이 종합적 방법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도록 장려된다.
- 9.4 보존: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조치는 어족자원의 보존 및 장기 지속적 이용과 그리고 환경의 보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9.5 투명성: IPOA는 행동규범 제6.13조에 따라서 투명한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 9.6 무차별: IPOA는 어떤 국가 또는 그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 형식상 또는 사실상 차별없이 개발 및 적용되어야 한다.

IUU어업을 예방·방지·근절하기 위한 이행조치

모든 국가의 책임

국제 제도들

10. 국가는 특히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1982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의 관련규정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11. 국가는 우선적 문제로서 적절한 경우 1982 유엔해양법협약, 1995 유엔공해어족협정 그리고 1993 FAO 이행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도록 장려된다. 이들 관련 국제제도들을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이들 제도들과 불일치한 방법으로 행동하여서는 아니된다.

12. States should implement fully and effectively all relevant international fisheries instruments which they have ratified, accepted or acceded to.

13. Nothing in the IPOA affects, or should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Nothing in the IPOA affects, or should be interpreted as affec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and the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for States parties to those instruments.

14. States should fully and effectively implement the Code of Conduct and its associated International Plans of Action.

15. States whose nationals fish on the high seas in fisheries not regulated by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fully implement their obligations under Part VII of the 1982 UN Convention to take measures with respect to their national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National Legislation

Legislation

16. National legislation should address in an effective manner all aspects of IUU fishing.

17. National legislation should address, *inter alia*, evidentiary standards and admissibility including, as appropriate, the use of electronic evidence and new technologies.

State Control over Nationals

18. In the light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1982 UN Convention, and without prejudice to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the flag State on the high seas, each State shoul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take measures or cooperate to ensure that nationals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do not support or engage in IUU fishing. All States should cooperate to identify those nationals who are the operators or beneficial owners of vessels involved in IUU fishing.

12. 국가는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한 모든 관련 국제수산제도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3. 이 IPOA는 이들 제도들의 당사국에 대하여 1995 유엔공해어족협정 및 1993 FAO 이행협정에 포함된 의무를 대체하지 않는다.
14. 국가는 행동규범과 이와 연관된 국제행동계획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5. 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는 공해에서 자국의 국민이 조업하는 국가는 공해의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자국민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1982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규

법규

16. 국가의 법규는 IUU어업의 모든 측면을 효과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7. 국가의 법규는 적절한 경우 電子的 證據 및 새로운 기술의 이용을 포함하여 무엇보다도 증거능력의 기준과 증거력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

18. 1982 유엔협약의 관련조항에 비추어 그리고 공해에서 기국의 우선적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국은 가능한 최대한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국민들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종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는 IUU어업에 연관된 선박의 운전자 또는 수혜적 소유자인 국민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19. States should discourage their nationals from flagging fishing vessels under the jurisdiction of a State that does not meet its flag State responsibilities.

Vessels without Nationality

20. States should take measur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vessels without nationality on the high seas involved in IUU fishing.

Sanctions

21. States should ensure that sanctions for IUU fishing by vessels an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nationals under its jurisdiction are of sufficient severity to effectively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to deprive offenders of the benefits accruing from such fishing. This may include the adoption of a civil sanction regime based on an administrative penalty scheme. States should ensure the consistent and transparent application of sanctions.

Non Cooperating States

22. All possible steps should be taken,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the activities of non-cooperating States to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engage in IUU fishing.

Economic Incentives

23. States should, to the extent possible in their national law, avoid conferring economic support, including subsidies, to companies, vessels or persons that are involved in IUU fishing.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24. States should undertak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MCS) of fishing from its commencement, through the point of landing, to final destination, including by:

24.1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chemes for access to waters and resources, including authorization schemes for vessels;

19. 국가는 자국의 국민들이 기국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의 관할하에 있는 어선에 국기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국적 선박

20. 국가는 공해에서 IUU어업에 관련된 무국적 선박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일치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재조치

21. 국가는 선박에 의한 그리고 최고로 가능한 정도까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국민에 의한 IUU어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IUU어업을 효과적으로 예방·방지·근절하고 그리고 위반자들로부터 그러한 어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할 만큼 충분히 엄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행정벌 제도에 기초한 민사제재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국가는 제재조치의 일관되고 투명한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비협력국

22. IUU어업에 종사하는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비협력국의 활동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일치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경제적 유인

23. 국가는 자국법에서 가능한 정도까지 IUU어업에 관련된 회사, 선박, 또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을 주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감시, 통제 및 검색(MCS)

24. 국가는 다음을 포함하여 어업에 대하여 그 시작부터, 양육지점과 최종 목적지까지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통제 및 검색을 한다.
- 24.1 선박에 대한 허가제도를 포함하여 수역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제도들의 개발 및 이행

- 24.2 maintaining records of all vessels and their current owners and operators authorized to undertake fishing subject to their jurisdiction;
- 24.3 implementing, where appropriate, a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requirement for vessel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carry VMS on board;
- 24.4 implementing, where appropriate, observer programm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the requirement for vessels under their jurisdiction to carry observers on board;
- 24.5 providing training and education to all persons involved in MCS operations;
- 24.6 planning, funding and undertaking MCS operations in a manner that will maximize their ability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 24.7 promoting industr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and their cooperative participation in, MCS activiti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 24.8 promoting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MCS issues within national judicial systems;
- 24.9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systems for the acquisition, storage and dissemination of MCS data,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 24.10 ensur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where appropriate, internationally agreed boarding and inspection regim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recogniz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sters and of inspection officers, and noting that such regimes are provided for in certain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1995 UN Fish Stocks Agreement, and only apply to the parties to those agreements.

National Plans of Action

25. States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three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IPOA, national plans of action to further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IPOA and give full effect to its provisions as an integral part of their fisheries management programmes and budgets. These plans should also include, as appropriate, actions to implement initiatives adopted by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 doing so, States should encourage the full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of all interested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fishing communitie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24.2 모든 선박의 기록 및 선박에 대한 관할에 따라 어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현재의 소유자 및 운영자에 대한 기록의 유지
- 24.3 자국 관할하에 있는 선박의 선박감시체제(VMS)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따라서 적절한 경우 선박감시체제(VMS)를 이행
- 24.4 자국 관할하에 있는 선박에 대한 읍저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표준에 따라서 적절한 경우 읍저버 프로그램을 이행을 이행
- 24.5 MCS 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실시
- 24.6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 할 능력을 최대화 하는 방법으로 MCS 운영을 계획, 기금조성 및 실시
- 24.7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MCS 활동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지식 및 이해와 그들의 협력적 참여를 증진
- 24.8 국가의 사법체계내에서 MCS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
- 24.9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MCS 데이터의 획득, 저장 및 분배를 위한 체계의 확립 및 유지
- 24.10 국별 승선검색체계 및 적절한 경우 국제적으로 국제법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된 승선검색체제를 선장과 검색관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되, 그러한 체제가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과 같은 일부 국제협정에 규정되어있고, 그러한 체제가 오직 그들 협정의 당사자에게만 적용됨을 주목함.

국가 행동계획

- 25. 국가는 IPOA의 채택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3년이내에 IPOA의 목표를 더 성취하기위해 국별 행동계획들을 개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행동계획의 각조항들이 자국의 수산업관리 프로그램과 예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들은 적절한 경우 또한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해 관련 지역수산기구에 의해 채택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26. At least every four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ir national plans of action, States should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lans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cost-effective strategies to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and to take into account their reporting obligations to FAO under Part VI of the IPOA.

27. States should ensure that national effort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re internally coordinated.

Cooperation between States

28. States should coordinate their activities and cooperate directly, and as appropriate through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 preventing, deterring and eliminating IUU fishing. In particular, States should:

- 28.1 exchange data or information, preferably in standardized format, from records of vessels authorized by them to fish,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 28.2 cooperate in effective acquisition, management and verification of all relevant data and information from fishing;
- 28.3 allow and enable their respective MCS practitioners or enforcement personnel to cooperate in the investigation of IUU fishing, and to this end States should collect and maintain 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such fishing;
- 28.4 cooperate in transferring expertise and technology;
- 28.5 cooperate to make policies and measures compatible;
- 28.6 develop cooperative mechanisms that allow, *inter alia*, rapid responses to IUU fishing; and
- 28.7 cooperate in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including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29. In the light of Article VI of the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flag States should make available to FAO and, as appropriate, to other States and relevant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formation about vessels deleted from their records or whose authorization to fish has been cancelled and to the extent possible, the reasons therefor.

26. 최소한 국별행동계획의 채택 4년후에 국가는 계획의 경제적인 전략을 확인하고, 이 IPOA 제6부상에 FAO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계획의 이행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27. 각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자국 내부에서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간 협력

28.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는 데 있어 직접 그리고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기구를 통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28.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록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형태로, 그리고 적용가능한 보안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료와 정보를 교환
 - 28.2 조업에 관한 모든 관련자료 및 정보의 효과적인 획득, 관리 및 입증에 협력
 - 28.3 각각의 MCS 실시자 및 집행자로 하여금 IUU어업에 관한 수사에 협력하고 이를 목적으로 그러한 어업에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및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가능하게 하는 것
 - 28.4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데 있어 협력
 - 28.5 정책과 조치들이 연관성 있도록 협력
 - 28.6 무엇보다도 IUU어업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협력적 체계 개발
 - 28.7 국제협정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MCS에 있어서 협력
29. 1993 FAO이행협정에 따라서 기국은 FAO, 적절한 경우 다른 국가 그리고 관련 지역적 또는 국제적 기구가 자국의 기록으로부터 삭제된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된 선박에 관한 정보와 가능한 정도까지 그에 따른 이유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0.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each State and regional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nominate and publicize initial formal contact points.

31. Flag States should consider entering into agreements or arrangements with other States and otherwise cooperate for the enforcement of applicable laws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provisions adopted at a national, regional or global level.

Publicity

32. States should publicize widely, including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full details of IUU fishing and actions taken to eliminate i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echnical Capacity and Resources

33. States should endeavour to make available the technical capacity and resources which are needed to implement the IPOA. This should include, where appropriate,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funds at the national, regional or global level. In this respect,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FLAG STATE RESPONSIBILITIES

Fishing Vessel Registration

34. States should ensure that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their flag do not engage in or support IUU fishing.

35. A flag State should ensure, before it registers a fishing vessel, that it can exercise its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vessel does not engage in IUU fishing.

30. 정보의 교환 및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국 및 지역 또는 국제기구는 최초의 공식 접촉창구를 지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31. 기국은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적용 가능한 법률과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들을 집행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집행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공개성

32. 국가는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것을 포함하여 IUU어업의 상세내용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가능한 한 보안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널리 공개하여야 한다.

기술적 능력 및 자원

33. 국가는 적절한 경우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특별기금의 설립을 포함하여 IPOA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능력과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기국의 책임

어선의 등록

34. 국가는 자국 국적을 가진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5. 기국은 어선을 등록하기에 앞서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할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36. Flag States should avoid flagging vessels with a history of non-compliance except where:

36.1 the ownership of the vessel has subsequently changed and the new owner has provided sufficient evidence demonstrating that the previous owner or operator has no further legal, beneficial or financial interest in, or control of, the vessel; or

36.2 having taken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s, the flag State determines that flagging the vessel would not result in IUU fishing.

37. All States involved in a chartering arrangement, including flag States and other States that accept such an arrangement, should, within the limits of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chartered vessels do not engage in IUU fishing.

38. Flag States should deter vessels from reflagging for the purposes of non-compliance wit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provisions adopted at a national, regional or global level. To the extent practicable, the actions and standards flag States adopt should be uniform to avoid creating incentives for vessel owners to reflag their vessels to other States.

39. States should take all practicable steps, including denial to a vessel of an authorization to fish and the entitlement to fly that States flag, to prevent flag hopping ; that is to say, the practice of repeated and rapid changes of a vessels flag for the purposes of circumventing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provisions adopted at a national, regional or global level or of facilitating non-compliance with such measures or provisions.

40. Although the functions of registration of a vessel and issuing of an authorization to fish are separate, flag States should consider conducting these functions in a manner which ensures each gives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the other. Flag States should ensure appropriate links between the operation of their vessel registers and the record those States keep of their fishing vessels. Where such functions are not undertaken by one agency, States should ensure sufficient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between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those functions.

36. 기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불이행의 기록을 가진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하여야 한다.
 - 36.1 선박의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 새로운 소유자가 전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더 이상 그 선박에 대하여 법적인, 수익적인, 재정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며 또한 통제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 36.2 모든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기국이 선박에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IUU어업을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결정한 경우

37. 용선약정을 인정하는 기국 및 다른 국가를 포함하여 용선약정에 관련된 모든 국가는, 그들 각각의 관할 범위내에서 용선 어선이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기국은 선박이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자원보존관리 조치 또는 규정의 불이행을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국이 채택한 조치와 기준은 선주가 선박의 국적을 다른 국가에 이전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정도까지 통일되어야 한다.

39. 국가는 "flag hopping", 즉,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 또는 규정의 불이행을 쉽게 할 목적으로 국적의 반복적인 잦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및 자국국적부여의 거절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0. 비록 선박등록과 어업허가장의 발급 기능이 분리되어있다 할지라도 기국은 상호간에 적절한 고려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국은 선박등록부의 운영과 국가가 유지하는 어선기록사이에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능이 한 기관에 의해 담당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가는 그러한 기능에 책임있는 기관들간의 충분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41. A Flag State should consider making its decision to register a fishing vessel conditional upon its being prepared to provide to the vessel an authorization to fish in waters under its jurisdiction, or on the high seas, or conditional upon an authorization to fish being issued by a coastal State to the vessel when it is under the control of that flag State.

Record of Fishing Vessels

42. Each flag State should maintain a record of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Each flag State's record of fishing vessels should include, for vessels authorized to fish on the high seas, all the information set out in paragraphs 1 and 2 of Article VI of the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and may also include, *inter alia*:

- 42.1 the previous names, if any and if known;
- 42.2 name, address and nationality of the natural or legal person in whose name the vessel is registered ;
- 42.3 name, street address, mailing address and nationality of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operations of the vessel;
- 42.4 name, street address, mailing address and nationality of natural or legal persons with beneficial ownership of the vessel;
- 42.5 name and ownership history of the vessel, and, where this is known, the history of non-compliance by that vessel,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s, wit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provisions adopted at a national, regional or global level; and
- 42.6 vessel dimensions, and where appropriate, a photograph, taken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r at the conclusion of any more recent structural alterations, showing a side profile view of the vessel.

43. Flag States may also require the inclusion of the information in paragraph 42 in their record of fishing vessels that are not authorized to fish on the high seas.

Authorization to Fish

44. States should adopt measures to ensure that no vessel be allowed to fish unless so authoriz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for the high seas , in particular the rights and duties set out in articles 116 and 117 of the 1982 UN Convention, or in conformity with national legislation within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41. 기국은 어떤 어선을 자국에 등록시킬 때, 자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자국의 관할수역 또는 공해에서의 어업 허가장을 발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관련 연안국이 그 어선에 대하여 입어허가를 발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어선의 기록

42. 각 기국은 자국국적을 부여한 어선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어선에 대한 각 기국의 기록은 공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는 어선에 대하여는 1993 FAO 이행협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설정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도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42.1 만일 있고 그리고 알려져 있다면 이전 선박의 이름
 - 42.2 선박의 등록명의인인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국적
 - 42.3 선박운영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 42.4 선박의 수익적 소유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주소, 우편주소와 국적
 - 42.5 선박의 이름 및 소유권 변경내역, 국가적, 지역적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의 그 선박에 의한 불이행 기록
 - 42.6 선박 크기, 적절한 경우 등록 당시에 찍었거나 또는 최근의 구조변경시 찍은 선박의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
43. 기국은 또한 공해상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의 기록에 대하여도 제 34조의 정보의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어업허가

44. 국가는 공해에 관한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제116조 및 제11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또는 국가 관할 수역에서 국가의 법률과 일치하여 허가받지 않았다면 어떠한 선박도 어업을 허용하지 않도록 보장할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45. A flag State should ensure that each of the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fishing in waters outside its sovereignty or jurisdiction holds a valid authorization to fish issued by that flag State. Where a coastal State issues an authorization to fish to a vessel, that coastal State should ensure that no fishing in its waters occurs without an authorization to fish issued by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46. Vessels should have an authorization to fish and where required carry it on board. Each States authorization should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 46.1 the name of the vessel, and, where appropriate, the natural or legal person authorized to fish;
- 46.2 the areas, scope and duration of the authorization to fish; and
- 46.3 the species, fishing gear authorized, and where appropriate, other applicable management measures.

47. Conditions under which an authorization is issued may also include, where required:

- 47.1 vessel monitoring systems;
- 47.2 catch reporting conditions, such as:
 - 47.2.1 time series of catch and effort statistics by vessel;
 - 47.2.2 total catch in number, nominal weight, or both, by species (both target and non-target) as is appropriate to each fishery period (nominal weight is defined as the live weight equivalent of the catch);
 - 47.2.3 discard statistics, including estimates where necessary, reported as number or nominal weight by species, as is appropriate to each fishery;
 - 47.2.4 effort statistics appropriate to each fishing method; and
 - 47.2.5 fishing location, date and time fished and other statistics on fishing operations.
- 47.3 reporting and other conditions for transshipping, where transshipping is permitted;
- 47.4 observer coverage;
- 47.5 maintenance of fishing and related log books;
- 47.6 navigational equipment to ensure compliance with boundaries and in relation to restricted areas;
- 47.7 compli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n relation to maritime safety,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or provisions adopted at a national, regional or global level;

45. 기국은 자국의 주권 또는 관할 밖의 수역에서 선적을 부여한 자국 국적의 각 선박이 자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장을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연안국이 선박에 대하여 어업허가장을 발급하는 경우 그 연안국은 자국수역의 어떠한 어업도 그 선박의 기국에 의해 발급된 어업허가장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46. 선박은 어업허가장을 선상에 소지하도록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허가장을 소지하여야 한다. 각국의 허가장은 다음을 포함하여야 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아도 된다.
- 46.1 선명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의 이름
 - 46.2 어업허가 수역, 범위와 기간
 - 46.3 어종, 허가받은 어구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적용 가능한 관리조치
47. 또한 필요한 경우 허가장이 발급된 조건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47.1 VMS
 - 47.2 다음과 같은 어획보고조건
 - 47.2.1 선박별 시간별 어획 및 노력 통계
 - 47.2.2 각 어기별로 어종별(목표어종 및 비목표어종) 실질 또는 명목적 총어획량(명목어획량은 어획한 어류의 생체중량으로 정의된다)
 - 47.2.3 각 업종별 투기된 어류의 양 또는 명목중량의 통계, 필요한 경우 추정치로 계산함.
 - 47.2.4 각 어법에 적합한 노력 통계
 - 47.2.5 조업위치, 조업일시 및 조업활동에 관한 기타통계
 - 47.3 전재가 허용된 경우 전재보고 및 다른 조건
 - 47.4 옹저버의 수행사항
 - 47.5 조업 및 관련일지의 유지
 - 47.6 경계 및 제한수역과 관련한 이행을 보장할 항해장비
 - 47.7 해사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차원에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또는 규정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과 국내법규를 이행

- 47.8 marking of its fishing vesse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such as the FAO Standard Specification and Guidelines for the Marking and Identification of Fishing Vessels. Vessels fishing gear should similarly be mark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standards;
- 47.9 where appropriate, compliance with other aspects of fisheries arrangements applicable to the flag State; and
- 47.10 the vessel having a unique, internationally recognized identification number, wherever possible, that enables it to be identified regardless of changes in registration or name over time.

48. Flag States should ensure that their fishing, transport and support vessels do not support or engage in IUU fishing. To this end, flag States should ensure that none of their vessels re-supply fishing vessels engaged in such activities or transship fish to or from these vessels. This paragraph is without prejudice to the taking of appropriate action, as necessary, for humanitarian purposes, including the safety of crew members.

49. Flag States should ensure tha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ll of their fishing, transport and support vessels involved in transshipment at sea have a prior authorization to transship issued by the flag State, and report to the national fisheries administration or other designated institution:

- 49.1 the date and location of all of their transshipments of fish at sea;
- 49.2 the weight by species and catch area of the catch transshipped;
- 49.3 the name, registration, flag and other information related to the identification of the vessels involved in the transshipment; and
- 49.4 the port of landing of the transshipped catch.

50. Flag States should make information from catch and transshipment reports available, aggregated according to areas and species, in a full, timely and regular manner and, as appropriate, to relevant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FAO, taking into account applicable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 47.8 어선의 표시 및 확인을 위한 「FAO 표준상세 및 지침」을 포함한 국제적 표준에 따라서 어선 표시. 어구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표시되어야 함.
- 47.9 적절한 경우 기국에 적용되는 어업약정을 이행
- 47.10 국제적으로 확인가능한 고유 확인번호를 가진 선박. 그러한 확인번호는 추후 등록이나 이름의 변경에 관계없이 확인되어질 수 있어야 함.
48. 기국은 자국의 조업, 운송, 지원선이 IUU어업을 지원하거나 IUU어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기국은 자국의 어떠한 선박도 그러한 활동에 종사하는 어선에 재공급하거나 이들 선박들에 또는 이들 선박들로부터 전채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승선원의 안전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다.
49. 기국은 최대한 가능한 정도까지 해상 전채와 관련된 모든 자국의 조업, 운반, 지원선이 기국에 의해 발급된 전채를 위한 사전 허가장을 소지하고 국가수산기관 또는 기타 지정된 기관에 다음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49.1 해상에서 모든 어류전채의 일자 및 위치
- 49.2 전채된 어획물의 어종별, 포획수역별 중량
- 49.3 선명, 선박의 등록, 국적 및 전채와 관련된 선박들의 확인과 연관된 기타 정보
- 49.4 전채된 어획물의 양육항
50. 기국은 어획 및 전채보고들로부터의 정보를 수역과 어종별로 누적하여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적용가능한 보안성 요건을 고려하여 관련 국가, 지역, 국제기구가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COASTAL STATE MEASURES

51. In the exercise of the sovereign rights of coastal States for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living marine resources under their jurisdiction, in conformity with the 1982 UN Convention and international law, each coastal State should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mong the measures which the coastal State should consider,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 law, and to the extent practicable and appropriate, are:

- 51.1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and surveillance of fishing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 51.2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with other States, where appropriate, including neighbouring coastal States and with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 51.3 to ensure that no vessel undertakes fishing activities within its waters without a valid authorization to fish issued by that coastal State;
- 51.4 to ensure that an authorization to fish is issued only if the vessel concerned is entered on a record of vessels;
- 51.5 to ensure that each vessel fishing in its waters maintains a logbook recording its fishing activities where appropriate;
- 51.6 to ensure that at-sea transshipment and processing of fish and fish products in coastal State waters are authorized by that coastal State, or conducted in conformity with appropriate management regulations;
- 51.7 regulation of fishing access to its waters in a manner which will help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 51.8 avoiding licensing a vessel to fish in its waters if that particular vessel has a history of IUU fishing,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6.

PORT STATE MEASURES

52. States should us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port State control of fishing vessels in order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Such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연안국 조치

51. 연안국이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과 일치하여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각 연안국은 EEZ에서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연안국이 국내법규 및 국제법과 일치하게 검토하여야 할 조치중에는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정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51.1 EEZ에서 어업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MCS
 - 51.2 적절한 경우 인접 연안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정보의 교환 및 협력
 - 51.3 어떠한 선박도 연안국에 의해 발급된 유효한 어업허가장 없이 자국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
 - 51.4 해당선박이 선박의 기록사항을 기입한 경우에 한해 어업허가장을 발급할 것을 보장
 - 51.5 자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적절한 경우 어업활동을 기록하는 조업일지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
 - 51.6 연안국수역에서 어류 또는 어류제품을 전채 및 가공이 연안국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적절한 관리규정과 일치하여 행해짐을 보장
 - 51.7 IUU어업을 예방, 방지 및 근절하는 방향으로 자국수역의 입어를 규정
 - 51.8 특정한 선박이 IUU어업의 기록을 가졌다면, 제36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자국수역에 어업허가를 주는 것을 회피

항만국 조치

52. 국가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조치를 사용해야 한다. 항만국 조치는 국제법에 따라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53. When used in paragraphs 52 to 64, port access means admission for foreign fishing vessels to ports or offshore terminals for the purpose of, *inter alia*, refuelling, re-supplying, transshipping and landing, without prejudice to the sovereignty of a coastal State in accordance with its national law and article 25.2 of the 1982 UN Convention and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law.

54. Notwithstanding paragraphs 52, 53 and 55; a vessel should be provided port acces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for reasons of *force majeure* or distress or for rendering assistance to persons, ships or aircraft in danger or distress.

55. Prior to allowing a vessel port access, States should require fishing vessels and vessels involved in fishing related activities seeking permission to enter their ports to provide reasonable advance notice of their entry into port, a copy of their authorization to fish, details of their fishing trip and quantities of fish on board, with due regard to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the vessel may have engaged in, or supported, IUU fishing.

56. Where a port State has clear evidence that a vessel having been granted access to its ports has engaged in IUU fishing activity, the port State should not allow the vessel to land or transship fish in its ports, and should report the matter to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57. States should publicize ports to which foreign flagged vessels may be permitted admission and should ensure that these ports have the capacity to conduct inspections.

58.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 to inspect fishing vessels, port States should collect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remit it to the flag State and, where appropriate, the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58.1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and identification details;
- 58.2 name, nationality, and qualifications of the master and the fishing master;
- 58.3 fishing gear;
- 58.4 catch on board, including origin, species, form, and quantity;
- 58.5 where appropriate, other information required by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 58.6 total landed and transshipped catch.

53. 제44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 항구접근이라 함은 자국의 법률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 제25조 제2항, 다른 관련 국제법에 따라서 연안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재급유, 재공급, 전채 및 양육의 목적으로 외국어선이 항구 또는 연안에서 떨어진 부두로 입항함을 의미한다.
54. 제52조, 제53조 및 제55조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원인, 위험 또는 위기에 처한 사람, 선박 또는 항공기에 원조를 주기 위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선박의 항구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55. 선박의 항구접근을 허용하기에 앞서 국가는 항구로 입항하기를 원하는 어선 및 어업관련활동에 관련된 선박에게 보안성 유지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그들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했거나 지원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장의 사본, 조업일정의 상세내용 및 선상 어획량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56. 자국의 항구입항을 허용하였던 어느 선박이 IUU어업활동에 종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항만국은 그 선박이 자국의 항구에서 양육 또는 전채를 하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7. 국가는 외국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구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항구들은 검사를 행할 능력을 갖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58. 어선을 검색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항만국은 다음정보를 수집하여 기국에,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에 송부하여야 한다.
 - 58.1 어선의 기국 및 확인 상세내용
 - 58.2 선장 및 어로장의 이름, 국적 및 자격증
 - 58.3 어구
 - 58.4 원산지, 어종, 가공형태 및 어획량을 포함한 선상 어획량
 - 58.5 적절한 경우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 또는 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요구된 기타 정보
 - 58.6 총양륙 및 전채량

59. If, in the course of an inspection, it is found that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at the vessel has engaged in or supported IUU fishing in areas beyond the jurisdiction of the port State, the port State should, in addition to any other actions it may tak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immediately report the matter to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and, where appropriate, the relevant coastal States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port State may take other action with the consent of, or upon the request of, the flag State.

60. In applying paragraphs 58 and 59, States should safeguard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61. States should establish and publicize a national strategy and procedures for port State control of vessels involved in fishing and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training, technical suppor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general operating guidelines for port State control officers. States should also consider capacity-building need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is strategy.

62. States should cooperate, as appropriate, bilaterally, multilaterally and within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develop compatible measures for port State control of fishing vessels. Such measures should deal with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by port States, procedures f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measures for dealing with suspected infringements by the vessel of measures adopted under these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systems.

63. States should consider developing within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port State measures building on the presumption that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the flag of States not parties to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which have not agreed to cooperate with tha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which are identified as being engaged in fishing activities in the area of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may be engaging in IUU fishing. Such port State measures may prohibit landings and transshipment of catch unless the identified vessel can establish that the catch was taken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o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The identification of the vessels by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greed procedures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64. States should enhance cooperation, including by the flow of relevant information, among and between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States on port State controls.

59. 만일 검색도중에 그 선박이 항만국의 관할을 넘은 수역에서 IUU어업에 종사했다는 것을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항만국은 국제법에 일치하는 여타의 조치에 추가하여 즉각 그 문제를 그 선박의 기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연안국과 지역수산기구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항만국은 기국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0. 제58조 및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안성을 지켜야 한다.
61. 국가는 항만국 통제관의 훈련, 기술적 지원, 자격요건과 일반운영지침을 포함하여 어업 및 관련활동에 연관된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위하여 국가적인 전략과 절차를 수립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62. 국가들은 적절한 경우 양자간, 다자간 그리고 관련 지역수산기구에서 어선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위한 일관성있는 조치를 개발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항만국에 의해 수집되어질 정보, 정보수집 절차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 또는 국제적 체계하에 채택된 조치들의 선박에 의한 침해혐의를 다루기 위한 조치들을 다루어야 한다.
63. 국가들은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 체제내에서 지역수산기구의 비당사국이면서 그 지역수산기구에 협력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부여받고 그 특정기구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선은 그 기구의 보존관리 및 집행조치를 침해한다는 가정하에 항만국 조치의 개발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항만국 조치는 그 확인된 선박의 어획량이 그러한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하는 방법으로 어획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어획물의 양육과 전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한 선박의 확인은 공정, 투명, 비차별적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4. 국가는 관련정보의 유통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관련지역수산기구 및 국가들간의 항만국 통제에 관하여 협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INTERNATIONALLY AGREED MARKETRELATED MEASURES

65. The measures in paragraphs 66 to 76 are to be implemented in a manner which recognizes the right of States to trade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harvested in a sustainable manner and should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ights and obligations established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and implemen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66. States should take all steps necessar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fish caught by vessels identified by the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o have been engaged in IUU fishing being traded or imported into their territories. The identification of the vessels by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should be made through agreed procedures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Trade-related measures should be adopted and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rinciples, rights and obligations established in WTO Agreements, and implemen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Trade-related measures should only be used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where other measures have proven unsuccessful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nd only after prior consultation with interested States. Unilateral trade-related measures should be avoided.

67. States should ensure that measures on international trade in fish and fishery products are transparent,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where applicable, and ar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agreed rules.

68. States should cooperate, including through relevant global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adopt appropriate multilaterally agreed trade-related measures, consistent with the WTO, that may be necessary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for specific fish stocks or species. Multilateral trade-related measures envisaged in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may be used to support cooperative efforts to ensure that trade in specific fish and fish products does not in any way encourage IUU fishing or otherwise undermine the effectivenes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which are consistent with the 1982 UN Convention.

69. Trade-related measures to reduce or eliminate trade in fish and fish products derived from IUU fishing could include the adoption of multilateral catch documentation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as well as other appropriate multilaterally-agreed measures such as import and export controls or prohibitions. Such measures should be adopted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When such measures are adopted, States should support their consisten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국제적으로 합의된 시장관련조치

65. 제66조부터 제76조까지의 조치는 지속적 방법으로 어획된 어류 또는 어류 제품을 교역하기 위한 국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WTO에 의해 확립된 원칙, 권리 및 의무와 일치하여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 투명, 무차별적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66. 국가는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의하여 IUU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 어선에 의해 어획된 어류가 자국의 영토안에서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역수산물기구에 의한 그들 어선의 확인은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역관련조치는 WTO 협정에서 정한 원칙 및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따라서 채택되고 이행되어야 하며 공정, 투명, 비차별적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교역관련조치는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증명되고, 관련 국가와 사전협의를 한 후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일방적 교역관련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67. 국가는 어류 및 수산제품의 국제교역에 관한 조치가 적절한 경우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투명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일치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68. 국가들은 세계적, 지역적 수산물관리기구 등을 통하여 특정 어족 및 어종에 대한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WTO 규정에 부합하는 적절한 다자적으로 합의된 무역관련조치를 채택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기구의 다자간 무역관련조치는 특정 어류 및 어류제품의 유통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IUU어업을 장려하지 않고 또는 그렇지 않다면 1982 유엔해양법협약과 일치한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도록 협력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어 질 수 있다.
69. IUU어업으로부터의 어류 및 어류제품의 교역을 감소시키거나 근절하기 위한 교역관련조치는 수출입 금지와 통제와 이외에도 다자간 어획기록 및 증명제도의 채택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한 다자간 조치가 채택될 때 각 국가는 일관되고 효과적인 이행을 지지해야 한다.

70. Stock or species-specific trade-related measures may be necessary to reduce or eliminate the economic incentive for vessels to engage in IUU fishing.

71. States should take step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ir markets to allow the traceability of fish or fish products.

72. States, when requested by an interested State, should assist any State in deterring trade in fish and fish products illegally harvested in its jurisdiction. Assistance should be given in accordance with terms agreed by both States and fully respecting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requesting assistance.

73. States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importers, transshippers, buyers, consumers, equipment suppliers, bankers, insurers, other services suppliers and the public are aware of the detrimental effects of doing business with vessels identified as engaged in IUU fishing, whether by the State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vessel is operating or by the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 accordance with its agreed procedures, and should consider measures to deter such busines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national law, legislation that makes it a violation to conduct such business or to trade in fish or fish products derived from IUU fishing. All identifications of vessels engaged in IUU fishing should be made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74. States should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their fishers are aware of the detrimental effects of doing business with importers, transshippers, buyers, consumers, equipment suppliers, bankers, insurers and other services suppliers identified as doing business with vessels identified as engaged in IUU fishing, whether by the State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vessel is operating or by the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n accordance with its agreed procedures, and should consider measures to deter such busines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under national law, legislation that makes it a violation to conduct such business or to trade in fish or fish products derived from IUU fishing. All identifications of vessels engaged in IUU fishing should be made in a fair, transparent and non-discriminatory manner.

70. 특정 어족 또는 어종에 대한 교역관련조치는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동기를 줄이거나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71. 국가는 어류 및 어류제품의 추적을 허용하기 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2. 국가는 관련 국가에 의해 요청을 받은 때, 어느 국가의 관할에서 불법적으로 어획된 어류 및 어류제품의 교역을 막는데 있어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국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원은 양국에 의해 합의된 조건에 따라서 주어져야 하며, 지원을 요구하는 국가의 관할권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한다.
73. 국가는 선박이 운영되는 관할하에 있는 국가에 의하든지 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든지 수입자, 전채자, 구매자, 소비자, 장비공급자, 은행가, 보험가, 다른 서비스 공급자 및 일반 대중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거래하는 것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국내법상 가능한 정도까지 그러한 사업을 행하고 IUU어업으로부터 유출된 어류 및 어류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드는 법규를 포함할 수 있다.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확인은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4. 국가는 선박이 운영되는 관할하에 있는 국가에 의하든지 또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관련지역수산기구에 의하든지 자국의 어민이 IUU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과 사업을 행하는 수입자, 전채자, 구매자, 소비자, 장비공급자, 은행가, 보험가 및 다른 서비스 공급자와 사업을 행하는 부정적 영향을 알도록 보장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러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조치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IUU어업으로부터 유출된 어류 및 어류제품을 교역하는 것을 위법으로 만드는 법규를 포함할 수 있다.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확인은 공정, 투명,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5. States should work towards using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for fish and fisheries products in order to help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the IPOA.

76. Certification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should be standardized to the extent feasible, and electronic schemes developed where possible, to ensure their effectiveness, reduce opportunities for fraud, and avoid unnecessary burdens on trade.

RESEARCH

77. States should encourage scientific research on methods of identifying fish species from samples of processed products. FAO should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of databases of genetic and other markers used to identify fish species from processed product, including the ability to identify the stock of origin where possibl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78. States should ensure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policies and measures having a bearing on IUU fishing which are adopted by any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by which they are bound. States should cooperate in the establishment of such organizations in regions where none currently exist.

79. As the cooperation of all relevant States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measures taken by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States which are not members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are not discharged from their obligation to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with tha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o that end, States should give effect to their duty to cooperate by agreeing to apply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established by tha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or by adopting measures consistent with tho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and should ensure that vessels entitled to fly their flag do not undermine such measures.

75. 국가는 IPOA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HS(Harmonis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제도를 사용할 작업을 하여야 한다.
76. 증명 및 기록등 필요사항들은 최대한 표준화되어야 하며,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기만의 기회를 줄이고 아울러 교역에 관한 불필요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련 전자장치가 최대한 개발되어야 한다.

연구

77. 국가는 가공된 제품의 샘플로부터 어종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하여 과학적 조사를 장려하여야 한다. FAO는 가능한한 어종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능력을 포함하여 가공제품으로부터 어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유전적 그리고 다른 표시의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망 설립을 촉진하여야 한다.

지역수산관리기구

78. 국가는 어느 관련수산관리기구에 의하여 채택되고 자국이 구속되는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 및 조치의 이행 및 집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79.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지역수산관리기구가 취한 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관련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련 지역수산기구의 비회원인 국가들은 그들의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서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협력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한 목적으로 국가는 그 지역수산관리기구에 의하여 설정된 보존관리조치를 적용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또는 그들 보존관리조치와 일치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협력할 그들의 의무에 완전한 효력을 주어야 하며, 자국 국적의 선박들이 그러한 조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80. States, acting through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take action to strengthen and develop innovative way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cluding the following measures:

- 80.1 institutional strengthening, as appropriate, of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with a view to enhancing their capacity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 80.2 development of compliance measures in conformity with international law;
- 80.3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arrangements for mandatory reporting;
- 80.4 establishment of and cooperation i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vessels engaged in or supporting IUU fishing;
- 80.5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records of vessels fishing in the area of competence of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including both those authorized to fish and those engaged in or supporting IUU fishing;
- 80.6 development of methods of compiling and using trade information to monitor IUU fishing;
- 80.7 development of MCS, including promoting for implementation by its member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an international agreement, real time catch and vessel monitoring systems, other new technologies, monitoring of landings, port control, and inspections and regulation of transshipment, as appropriate;
- 80.8 development within a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where appropriate, of boarding and inspection regimes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recogniz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masters and inspection officers;
- 80.9 development of observer programmes;
- 80.10 where appropriate, market-related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IPOA;
- 80.11 definition of circumstances in which vessels will be presumed to have engaged in or to have supported IUU fishing;
- 80.12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programmes;
- 80.13 development of action plans; and
- 80.14 where agreed by their members, examination of chartering arrangements, if there is concern that these may result in IUU fishing.

80. 국가는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하여 국제법과 일치한 혁신적인 방법을 강화하고 개발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음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80.1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능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관련지역 수산물관리기구를 적절히 제도적으로 강화
 - 80.2 국제법과 일치한 이행조치 개발
 - 80.3 의무적 보고를 위한 포괄적인 약정의 개발 및 이행
 - 80.4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선박에 관한 정보의 교환체제를 확립하고 협력
 - 80.5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자를 포함하여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의 기록사항을 개발 및 유지
 - 80.6 IUU어업을 감시하기 위한 교역정보를 추적하고 이용할 방법을 개발
 - 80.7 적절한 경우, 만일 국제협정에서 안된다고 규정되어있지 않다면 그들 각각의 관할수역에서 회원국에 의한 이행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MCS의 개발, 실시간 어획 및 선박감시체계, 다른 새로운 기술, 양육의 감시, 항구 통제, 그리고 전재의 검사 및 규정의 개발
 - 80.8 지역수산물관리기구내에서 선장과 검색관의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면서 국제법과 일치하여 적절한 경우 승선 및 검색체제를 개발
 - 80.9 읍저버 프로그램의 개발
 - 80.10 적절한 경우 IPOA에 따른 시장관련조치
 - 80.11 선박이 IUU어업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의 정의
 - 80.12 교육 및 일반대중 의식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 80.13 행동계획들의 개발
 - 80.14 회원국에 의해 합의된 경우 용선약정이 IUU어업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면 그 약정의 검사

81. States, acting through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compile and make available on a timely basis, and at least on an annual basis, to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to FAO, information relevant to the prevention, deterrence and elimination of IUU fishing, including:

- 81.1 estimates of the extent, magnitude and character of IUU activities in the area of competence of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 81.2 details of measures taken to deter, prevent and eliminate IUU fishing;
- 81.3 records of vessels authorized to fish, as appropriate; and
- 81.4 records of vessels engaged in IUU fishing.

82. Objectives of institutional and policy strengthening in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IUU fishing should include enabling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to:

- 82.1 determine policy objectives regarding IUU fishing, both for internal purposes and co-ordination with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 82.2 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as appropriate, including mandate, functions, finance, decision making, reporting or information requirements and enforcement schemes, for the optimum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 relation to IUU fishing;
- 82.3 regularize coordination with institutional mechanisms of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s far as possible in relation to IUU fishing, in particular information, enforcement and trade aspects; and
- 82.4 ensure timely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measures internally, and in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relevant reg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83. States, acting through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encourage non-contracting parties with a real interest in the fishery concerned to join those organizations and to participate fully in their work. Where this is not possible, the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non-contracting part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sheries resources and i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adopted by the relevant organizations.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address the issue of access to the resource in order to foster cooperation and enhance sustainability in the fisher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tates, acting through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also assist, as necessary, non-contracting parties i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s 78 and 79 of the IPOA.

81. 국가는,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면서, 다음을 포함하여 IUU 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적기에, 적어도 매년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및 FAO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1.1 지역수산물기구의 관할수역에 있어서 IUU어업 활동의 정도, 범위 및 특징에 대한 평가
 - 81.2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의 상세내용
 - 81.3 적절한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의 기록
 - 81.4 IUU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기록

82. IUU어업과 관련하여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에 있어 제도적, 정책적 강화의 목표들은 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 82.1 내부적 목적과 그리고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의 조정을 위하여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결정
 - 82.2 IUU어업과 관련한 정책의 최적 이행을 위하여 의무규정, 기능, 재원, 정책 결정, 보고 또는 정보의 필요사항 및 집행을 포함한 제도적인 체제를 강화
 - 82.3 IUU어업과 관련하여 특히 정보, 집행 및 교역측면에서 가능한 한 정도까지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의 제도적인 체제와의 조정을 정례화
 - 82.4 내부적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수산물관리기구와 관련 지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정책 및 조치의 적시 및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

83. 국가는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해당 수산업에 진정한 이해를 가진 비협력국이 이들 기구에 가입하여 그 기구의 작업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관련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기구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 국제협정과 국제법에 따라 비협력국의 참가와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시켜야 한다.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국제법에 따라 수산업에 있어서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관련 지역수산물관리기구를 통하여 행동하는 국가는 IPOA의 제78조 및 제79조의 이행에 있어 필요시 비당사국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84. When a State fails to ensure that fishing vessels entitled to fly its flag, or,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ts nationals, do not engage in IUU fishing activities that affect the fish stocks covered by a relevant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the member States, acting through the organization, should draw the problem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If the problem is not rectified, members of the organization may agree to adopt appropriate measures, through agreed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85. States, with the support of FAO and releva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where appropriate, should cooperate to support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 and consider providing financial, technical and other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in particular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m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so that they can more fully meet their commitments under the IPOA an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ir duties as flag States and port States. Such assistance should be directed in particular to help such States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plans of ac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5.

86. States, with the support of FAO and releva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mechanisms, where appropriate, should cooperate to enable:

- 86.1 review and revision of national legislation and regional regulatory frameworks;
- 86.2 the improvement and harmonization of fisheries and related data collection;
- 86.3 the strengthening of regional institutions; and
- 86.4 the strengthening and enhancement of integrated MCS systems, including satellite monitoring systems.

REPORTING

87. States and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should report to FAO on progress with the elabo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ir plan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as part of their biennial reporting to FAO on the Code of Conduct. These reports should be published by FAO in a timely manner.

84. 어느 국가가 자국적 어선 또는 가능한 최대한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관련지역수산물관리기구가 관할하는 어족자원에 영향을 주는 IUU어업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할 때, 그 기구를 통하여 활동하는 국가들은 그 문제에 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만일 그 문제가 교정되지 않는다면 그 기구의 회원들은 합의된 절차를 통하여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개발 도상국의 특별 필요사항

85. 국가는, FAO 및 관련 국제재정제도 및 체계의 지원과 함께 적절한 경우 특히 최저 개발도상국과 그리고 소규모 도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그들이 IPOA상의 그들의 약속과 기국 또는 항만국으로서의 그들의 의무를 포함하여 국제법상의 의무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과 능력향상을 위해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그리고 다른 지원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원은 특히 국가가 제25조에 따라서 국별행동계획의 개발 및 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86. 국가는 FAO 및 관련 국제재정제도 및 체계의 지원과 함께 적절한 경우 다음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86.1 국가의 법률 및 지역적 법규체계의 검토 및 개정
 - 86.2 수산업 및 관련자료수집의 개선 및 조화
 - 86.3 지역적 체도의 강화
 - 86.4 특히 위성감시체계를 포함하여 통합된 MCS 체계의 강화

VI. 보고

87. 국가 및 지역수산물관리기구는 책임있는 수산업에 관한 행동규범에 관하여 FAO에 2년단위 보고의 일부분으로서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계획들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진전사항을 FAO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들은 적기에 FAO에 의하여 출판된다.

ROLE OF FAO

88. FAO will, as and to the extent directed by its Conference, collect all relevant information and data that might serve as a basis for further analysis aimed at identifying factors and causes contributing to IUU fishing such as, *inter alia*, a lack of input and output management controls, unsustainable fishery management methods and subsidies that contribute to IUU fishing.

89. FAO will, as and to the extent directed by its Conference, suppor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regional plans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through specific, in-country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with Regular Programme funds and through the use of extra-budgetary funds made available to the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90. FAO should, in collaboration with other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articular IMO, further investigate the issue of IUU fishing.

91. FAO should convene an Expert Consult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aragraph 76 of the IPOA.

92. FAO should investigate the benefits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regional and global databa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nformation as provided for in Article VI of the 1993 FAO Compliance Agreement.

93. The FAO Committee on Fisheries will, based on a detailed analysis by the Secretariat, biennially evaluate the progress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IPOA.

FAO의 역할

88. FAO는 총회에 의해 지시받은 대로 또는 지시받은 정도까지 무엇보다도 투입 및 산출관리통제의 결핍, 비지속적 수산업 관리방법 및 IUU어업에 기여하는 보조금과 같은 IUU어업에 기여하는 요소 및 원인들을 확인할 목적으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한 기초로서 사용되질 모든 관련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89. FAO는 총회에 의해 지시받은 대로 또는 지시받은 정도까지 IUU어업을 예방, 방지,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정규 프로그램기금(Regular Programme Funds)이나, 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FAO에서 이용 가능한 특별기금의 사용을 통하여 구체적인 현장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90. FAO는 다른 국제수산기구, 특히 IMO와 협력하여 IUU어업 문제를 더 조사하여야 한다.
91. FAO는 이 IPOA의 제76조의 이행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92. FAO는 1993 FAO 이행협정 제6부에 규정된 정보를 포함하는 지역적, 세계적 데이터베이스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따르는 장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93. FAO 수산위원회는 사무국에 의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IPOA의 이행을 위한 진전사항을 2년마다 평가할 것이다.

부록 3 : 원양 및 연근해어업의 IUU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

1. 원양어업 : IUU어업 중 불법어업(Illegal)관련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어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30조 제45조 제51조	경고	취소	-	-	-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제98조)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한 때	제30조 제45조 제51조	경고	취소	-	-	-	-	
원양어업의 개시기한에 위반 한 때	제31조 제45조 제51조	경고	경고	취소	-	-	-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원양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제32조 제45조 제51조	경고	취소	-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계류중인 원양어선이 행정처분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이탈한 때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정지 30일 추가	취소	-	정지 30일 추가	취소	-	1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	제45조 제47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외국의 영해 또는 어업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받은 때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제35조 제45조 제51조	취소	-	-	-	-	-	-
원양어선이 허가된 조업구역 외의 다른 원양어업구역에서 조업한 때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취소	정지 30일	정지 45일	취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 벌금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외의 어업을 한 때	제41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연근해에서 조업하거나 연근해에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한 때	제41조 제46조	정지 60일	취소	-	정지 60일	취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백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때	제41조 제46조	-	-	-	정지 90일	취소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청이 있는 때 ○ 정지요청이 있는 때 ○ 취소요청이 있는 때	제45조 제47조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 벌금
어장·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설치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제59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백만원 이하 벌금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62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나. 수산업법시행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 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수산업자 등이 행정관청이 행한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2조	경고	정지 20일	정지 30일	견책	정지 20일	정지 30일	-
외국으로부터 해외수역에서의 입어허가를 받고자 하는 어업자에 대한 행정관청의 조정·지도에 위반한 때	제52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	-	-	-

다.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 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의 3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00만원이하의 벌금
원양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23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견책	정지 20일	정지 30일	500백만원이하의 벌금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27조	경고	정지 20일	정지 30일	견책	정지 20일	정지 30일	

라.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원양어선의 규모 또는 어구의 종류·규모 등의 기준에 위반한 때	제3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한 때	제14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때	제1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	-	-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어업의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35조	경고	취소	-	-	-	-	-

2. 원양어업 : IUU어업 중 비보고(Unreported) 어업관련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

가. 수산업법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어업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77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500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수산업법시행령

위반행위	관련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제52조	경고	정지 20일	정지 30일	견책	정지 20일	정지 30일	-

3. 연근해어업 : IUU어업 중 불법어업(Illegal)관련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

가. 수산업법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형벌 및 벌금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하거나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30조 제45조 제51조	경고	취소	-	-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계속하여 2년이상 휴업한 때	제30조 제45조 제51조	경고	취소	-	-	-	-	
3.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개시기한에 위반한 때	제31조 제45조 제51조	경고	경고	취소	-	-	-	
4.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당해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때	제32조 제45조 제51조	경고	취소	-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5. 계류중인 어선이 행정처분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항구로부터 이탈한 때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정지 30일 추가	취소	-	정지 30일 추가	취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6.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제7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7. 외국의 영해 또는 어업전관수역을 침범하여 조업을 함으로써 당해 국가로부터 처벌받은 때	제34조 제45조 제4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때	제35조 제45조 제51조	취소	-	-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9.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어선의 어획물을 운반한 때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10.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한 때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1.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외에 다음 각목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개정 2000. 5. 29> 가. 대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근해트롤어업을 한 때 나. 기타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제41조 제46조	취소	-	-	취소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2.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당해 어업외의 어업을 하거나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제41조 제46조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3.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하여 다른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당해 어업을 한 때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4.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 어업외의 어업을 한 때	제41조	경고	경고	취소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5. 해상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구역외의 수면에 종묘시설을 한 때	제41조	경고	취소	-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6.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을 벗어나 어구를 부설한 때	제41조	경고	정지 30일	정지 45일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7.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구역외의 수역에서 조업을 한 때	제4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8. 신고어업을 하는 자가 신고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44조	정지 10일	정지 20일	신고 필증 회수	-	-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19.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관세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관세청장으로부터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청이 있는 때 ○ 정지요청이 있는 때 ○ 취소요청이 있는 때	제45조 제47조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40일 취소	정지 60일 -	취소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0.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제4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1. 이 법에 의한 어업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제57조	취소	-	-	취소	-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
22. 어장·연근해어선 또는 어구의 표지 설치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이전·손괴·변조 또는 은폐한 때	제59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23. 어선표지판이 풍랑등에 의하여 훼손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다시 부착하여 봉인을 요청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0·5·29>	제59조 제60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9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90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4. 어업감독공무원의 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6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5. 범칙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에 위반하거나 범칙어획물의 방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5조 제7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26. 어업자원의 조사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제77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10일	정지 15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수산업법시행령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어선 및 어구에 관한 표지의 규격 및 형태와 그 설치방법에 위반한 때 <개정 2000·5·29>	제51조 제3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외국과의 어업협정 또는 어업조정상 필요한 표지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때	제51조 제2항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3. 수산업자 등이 행정관청이 행한 필요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제52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4. 정선 또는 회항명령에 위반한 때	제53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다. 수산자원보호령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 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대형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트롤어업 및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근해선망어업에 한한다)	제4조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500백만원 이하 벌금
2. 특정어업의 금지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 특정어구의 사용금지·어망목 및 어구규모의 제한에 위반한 때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4.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목적으로 특정어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사용한 때	제6조의3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대형기선저인망어업·대형트롤어업·중형기선저인망어업·동해구트롤어업 및 불빛을 이용한 선망어업에 한한다)	제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6. 어구사용금지구역과 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7.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기간 또는 채장에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때	제8조 제9조 제10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금지구역/기간위반> :500만원이하 벌금 <포획채장위반> : 300만원이하 벌금
8. 대게의 암컷 또는 붉은 대게의 암컷을 포획한 때	제1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300백만원 이하 벌금
9. 수중에 방란된 어란을 채취하거나 치어 및 치패의 포획과 수출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11조의 2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00백만원 이하 벌금
10.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멸종위기 에 처한 수산동물을 포획한 후 방류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의 3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정지 40일	정지 60일	취소	
11. 어도차단의 금지에 위반한 때	제12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300백만원 이하 벌금
12. 조업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대 형기선저인망어업·중형기선저인망 어업·동해구트롤어업 및 대형선망 어업에 한한다)	제17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00백만원 이하 벌금
13. 조업구역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제 1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4. 포획·채취물의 제한에 위반한 때	제18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5. 위생관리를 위한 어업의 제한이나 금지에 위반한 때	제18조의 2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16. 연근해어선·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2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17. 연근해어선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당해 어선의 사용이 허용된 어업 외의 다른 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어선을 사용한 때 나.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	제23조 의2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500백만원 이하 벌금
18.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설비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때	제24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
19.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위반한 때	제26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300백만원 이하 벌금
20. 어업협정 등의 시행을 위한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	제27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500백만원 이하 벌금
21.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때	제27조 의3 제3항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22.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제27조 의3 제5항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
23. 범칙행위로 인하여 포획·채취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소지·운반, 처리·가공 또는 판매한 때	제29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라. 선박안전조업규칙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출입항신고 또는 출입항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개정 2000·5·29>	제13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2. 출어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한 때	제14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3. 어선단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조업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어선단에서 이탈한 때	제15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4. 어선단에서의 어선이탈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선단장의 어선에 한한다)	제15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5. 지정된 안전항로 경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항해한 때	제16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6. 어로 또는 항해가 금지되는 구역또는 시간에 위반한 때	제17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7. 동·서해 어로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월선하여 조업하거나 항해한 때가. 피랍된 때 나. 그 밖의 경우	제18조	취소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취소	취소 정지 90일	- 취소	- -	-
8. 어로한계선 이북의 도서지역 어선이 어로한계선 바깥쪽에 설정한 조업 구역을 이탈한 때	제1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9. 서해특정해역안에서의 어업별 조업 구역 및 조업기간에 위반하여 조업한 때	제19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10. 동·서해특정해역안에서 10톤미만의 어선이 동해에 있어서는 동경 131도 이동의 해역, 서해에 있어서는 동경 125도 이서의 해역에 출어한 때(울릉도를 기지로 하여 조업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울릉도 주위로부터 60마일밖의 해역에서 조업한 때)	제19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11. 특정해역의 출어선이 어업무선국에 교신가입을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
12. 출어한 연근해어선이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13.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때(대리자 및 의뢰자를 포함한다)	제21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취소	-
14. 연근해어선식별신호기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식별신호를 행하지 아니한 때	제22조	정지 10일	정지 15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15. 통신기가 설치된 연근해어선이 긴급사태경보에 관한 청취를 하지 아니한 때	제24조	-	-	-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16. 경비함정 또는 어업지도선으로 부터 위험 및 대피신호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제25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17. 간부선원이 해상조업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출어한 때	제27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견책	정지 30일	정지 45일	-

마.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연근해어선의 규모 또는 어구의 종류·규모 등의 기준에 위반한 때	제3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
2. 해상종묘생산어업의 시설규모·시설 기준 등에 위반한 때	제3조	경고	경고	취소	-	-	-	-
3.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한 때	제14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4.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조업한 때	제18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	-	-	-
5.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21조	경고	정지 10일	정지 15일	-	-	-	-
6. 어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의 폐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35조	경고	취소	-	-	-	-	-

바. 어획물운반업등록에관한규칙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운반을 의뢰받을 수 없는 어업의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한 때	제4조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 벌금
2. 어획물운반업등록의 제한 및 조건에 위반한 때	제6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3. 어획물운반업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어획물운반업을 한 때	제8조	정지 20일	정지 30일	정지 40일	-	-	-	-

사.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특정금지구역에서의 어업활동	제4조	-	-	-	-	-	-	1억원 이하의 벌금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 어업	제5조	-	-	-	-	-	-	
3. 어업허가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제10조	-	-	-	-	-	-	
4. 어획물 전척 금지규정 위반	제11조	-	-	-	-	-	-	
5. 어업활동의 정지명령 위반	제13조	-	-	-	-	-	-	
6.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 금지규정 위반	제14조	-	-	-	-	-	-	
7. 어획물 직접양륙의 금지규정의 위반	제12조	-	-	-	-	-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 승인없이 시험·연구 등의 제한 또는 조건의 위반	제8조	-	-	-	-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9. 시험·연구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제10조	-	-	-	-	-	-	
10. 시험·연구 등의 정지명령 불이행	제13조	-	-	-	-	-	-	
11. 표지 미설치 및 허가장 미소지	제5조	-	-	-	-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4. 연근해어업 : IUU어업 중 미보고(Unreported) 어업관련 행정처분 및 형벌/벌금등의 기준

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위 반 행 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벌금 및 형벌등의 기준
		허가 또는 신고어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보고	제28조	-	-	-	-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